

연구 자료
연구 96-27-35

R108
00036
29-35



KOICA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자료

1996. 9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조사부

< 일러 두기 >

본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조사부 연구원들에 의해
작성된 "KOICA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자료"로서 협력단
내부업무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발간하였음을 일러드립니다

목 차

I. 사업 분야	1
1. 프로젝트 / 이해균 차장	2
2. 기자재 공여 / 박종옥 차장	20
3. 개발조사 / 이영식 과장	29
4. 연수생 초청 / 김종록 부장	39
5. 전문가 파견 / 진준민 부장	72
6. 봉사단 파견 / 김병관 과장	88
7. 협력의사 파견 / 김광영 차장	104
8. 국제협력요원 파견 / 이재웅 과장	116
II. 조직 분야	136
1. 조직 정비 / 김 홍 차장	137
2. 인력 운영 / 신덕순 차장	159
III. 기타 분야	170
1. JICA 사업 / 김학서 과장	171
2. 케냐 협력사업 / 신명석 과장	181

I . 사 업 분 야

프 로젝 트

이 해 군 차 장

목 차

1. 프로젝트형 사업추진 현황	4
○ 총 관	
○ 현황 분석	
2. 문제점 검토	4
3. 제반 개선방안 검토	5
가. 프로젝트 사업의 기본기준 설정	
1) 프로젝트 용어의 개념 정립	
2) 프로젝트 사업 대상분류 범위설정	
나. 프로젝트 사업의 수행절차 정립	
1) 사업수행 절차 및 단계	
2) 사업의 선정절차 강화	
3) 사업의 사전조사 및 평가기능 강화	
다. 프로젝트 사업의 관리체계 구축	
1) 조직 운영상의 종합관리 기능강화	
2) 사업의 대체.폐지의 과감한 실시	
라. 프로젝트 사업의 단계적 발전방향 모색	
1) 사업규모의 대형화	
2) 특정국가에의 시범적 대형사업 실시	
3) 건축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마. 프로젝트 사업추진의 효율화 노력	
1) 사업의 기본모형 제시	
2) 사업구성 형태의 변화고려	
4. 향후 추진과제	10
5. 주요문제 사항의 대안검토	10

1.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

○ 총괄(사업구성형태수 기준)

계	1 개 사업	2 개 사업	3 개 사업	4 개 사업	5 개 사업
59 건	3	17	26	12	1

○ 현황분석

- 2개사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 및 건축사업은 프로젝트로 분류
- 구성 대상사업은 7가지 형태로 구분됨
 - . 건축(개보수포함),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 봉사단, 의사, 인력교류 등
- 가장 기본적 프로젝트 형태
 - . 기자재 + 연수생 + 전문가 18건 (30.5%)
 - . 건축 + 기자재 7건 (11.8%)
 - . 기자재 + 전문가 5건 (8.5%)
 - . 건축 + 기자재 + 연수생 + 전문가 4건 (6.8%)
 - . 건축 3건 (5.1%)

2. 문제점 검토

○ 프로젝트 사업의 개념 및 범위 미설정

- 현재는 2개사업 이상으로 사업구성시 프로젝트로 분류
- 일반적 원조관련 용어로서의 프로젝트 개념과의 괴리

○ 프로젝트 사업관련 세부 시행지침 미제정

- 사업선정, 추진, 대체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미비
 - # 현재 기획부에서 외무부에 승인요청중

○ 전문적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 부족

- 건축사업에 대한 건축,계약,설계,감리등에 대한 전문인력 및 경험 미흡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총괄 및 종합조정 관리기능 미약

- 각 지역부서별로 사업의 독자적 추진 및 관리
- 공통적 사항이나 사업발전을 위한 기준설정, 행정개선등을 위한 기능미약

- 프로젝트사업의 관리 및 사후평가기능 부재
 - 프로젝트의 발굴, 사업형성, 분석, 실시, 평가, 사후관리등 추진절차 정립미비
-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등 추진용이 사업에 치중
 - 사업예산의 소규모, 관리기능 미약등으로 사업선정이 다소 임의적

3. 제반 개선방안 검토

가. 프로젝트사업의 기본기준의 설정

1)프로젝트 용어의 개념정립

- 협력단은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 사업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용어로 사용
- 원조관련 용어로서의 프로젝트가 갖는 일반적 의미와는 상이하게 사용
 - 원조공여 방식으로서의 프로젝트는 자금의 용도가 지정되는 방식을 뜻함
 - 사업형태로서는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주어진 예산과 기한내에서 이루어 지는 상호연관된 사업활동을 의미함.
- 사업발굴, 사업형성, 분석, 실시, 평가등의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필요
- 따라서 우리의 프로젝트 용어는 일반적 개념보다는 일본의 프로젝트형 기술 협력사업(Project-type Technical Cooperation)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파악됨
- 앞으로 프로젝트 용어의 개념정의와 함께 프로젝트(형)사업의 구성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 프로젝트와 프로젝트(형) 사업용어의 구분사용 필요(현재 협력단에서는 혼용)

2)프로젝트형 사업대상 분류범위 설정

- 현재 협력단사업은 사업내용 구성형태에 있어서 21종류로 다양
 - 건축,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 봉사단, 의료단, 인력교류등의 7개사업형태가 1개사업내지 5개사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음

- 단순히 2개사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은 거의 모두 프로젝트로 분류
 - 구성사업의 성격이나 사업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고려미흡
- 상기 사업구성 내역중 기자재공여에 따른 단순설치 전문가 파견사업으로 구성되는 사업들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분류가 곤란
 - 현재 5개사업이 해당됨

나. 프로젝트사업의 수행절차

1)사업수행 절차 및 단계

- 현재 협력단의 프로젝트형 사업은 사업선정, 요청서접수, 계획수립, 조사단 파견, 실시등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발굴, 사업성검토, 평가등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과정에 소홀 경향
 - 이과정은 원조사업수행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한 원조효과제고에도 필요
- 상기절차도 내규화되어있지 않고 일반문서로 설명되어 있음
- 협력단도 프로젝트 수행절차의 정립 및 내규화필요
 - 이러한 절차의 이행을 프로젝트형 사업 구성의 조건화고려
 - 사업발굴, 선정에서 부터 사후평가까지
 - 보고서 등 관련문서, 서식들의 정형화 병행

2)사업의 선정절차 강화

- 현재의 사업선정은 사업내역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반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대부분 수요조사시 제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성검토, 사업추진 가능성등에 대한 사전검토 논의절차 미약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
 - 위원회 구성은 사업규모에 따라 소규모일 경우 협력단 내부인사로 구성
 - 일정규모 초과시에는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여고려
 - 특히 건축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심의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관계전문가의 참여 바람직(또는 의견수렴이나 자문과정 필요)
- 사업의 중도폐지, 타사업으로의 대체결정 과정에도 심의위원회 활용

3)사업의 사전조사 및 평가기능강화

- 현재는 사전조사기능이 수요요청 또는 공판에의 의존경향이 심함.
 - 사업성이나 사업시행 가능성 파악에 한계
- 현지 사전조사의 실시로 사업실행 가능성 확인후 사업선정
 - 특히 건축과 같은 사업에는 절대 필요
- 아울러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 완료사업에 대한 평가로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자료 확보
 - 완료사업의 성과 지속화를 위한 일정한 관심부여

다. 프로젝트사업의 관리체계구축

1)조직 운영상의 종합관리 기능강화

- 현재는 지역과별로 독자적 개별적으로 사업실시 관리
 - 사업수행상의 공통적 사항의 관리나 문제점 개선등의 기능미약
- 사업의 종합관리 기능의 강화필요
 - 사업지침의 제개정, 행정사항 개선, 사업이행 실태관리 실시
 - 공통사항(문제점등)에 대한 기준의 상정 및 대안제시

2)사업의 대체,폐지의 과감한 실시

- 현재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대한 시행노력
 - 개도국의 사정상 사업추진에 많은 장애요인 수시발생
 - 기선정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타사업으로의 대체기회 상실 및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 발생
- 선정된 사업의 추진지체 또는 어려움 예상시 과감한 폐지 및 대체
 - 수원국이 기존 사업계속 요구시 익년도 사업 또는 하반기중 불용액으로 추진하면 가능

라. 프로젝트사업의 단계적 발전방향모색

1)사업규모의 대형화

- 현재는 소규모 및 기자재중심의 사업실시
 - 사업효과 제고 및 원조의 상징성 등 결여
- 규모의 대형화 도모
 - 각국별로 상징성있는 사업의 실시고려
- 규모확대에 맞춰 대형건축 프로젝트추진
 - 우리나라 협력의 상징성 확보 및 원조효과 영속화를 위해 적극 검토
 - 아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
 - 사업추진의 용이성 확보에 유리 (업체이익에도 기여예상)
 - 분야도 학교, 병원에서 문화시설 등으로 확대

2)특정국가에의 시범적 대형사업실시

- 중점협력국가중 1국에 상징성있는 대형사업실시
 - 향후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대비 시범적 실시
 - 우선적으로 사업실시 여건을 고려(아국건설업체 진출여부)
 - 사업분야로는 병원, 학교, 문화회관, 복지시설, 직업훈련원등 고려
- 대형프로젝트실시시 동국가에 대한 여타사업은 대폭 축소
- 연차적으로 실시국가를 확대

3)건축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확보

가)건축프로젝트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 건축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문성 부족
 - 설계, 계약, 전기, 토목관련 전문지식 부재
 - 건축관행이나 계약등에 대한 행정경험 미비
- 현재 규모 및 건수의 미미로 큰문제제기는 없으나 향후 규모의 대형화 및 건수확대에 대비 필요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건축, 토목, 전기분야 전문인력 확보추진
 - 설계, 건축, 계약등에 대한 기본적 검토, 판단능력의 확보필요

나) 건축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정보의 관리

- 건축관련 설계, 시공, 계약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용
 - 설계, 시공관련 용어설명, 계약서 기본형식 등
 - 각단계마다의 고려사항등(설계범위, 전기, 수도, 가스공급방식, 계약이행 보증방식, 불가상승요인등)
 - 현지 건축관행에 대한 정보수집 필요(상시)
 - 전자재 조달가능성, 건축업자의 계약이행관행, 건축단가수준
 - 현지진출 아국 및 외국건설업체 현황 등
- # 당분간은 건축프로젝트의 신중한 추진필요
- . 아국업체 진출국가에 한해 추진고려

마. 프로젝트사업추진의 효율화노력

1)사업의 기본모형제시

- 현재 협력단 실시완료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리부재
 - 사업성공 또는 실패요인의 도출, 신규 사업에의 활용미비
 - 사업발굴시 요청주의를 탈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모형정립 필요
 - 우리가 경험있고 사업추진 노하우가 확실한 사업의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도 유리
 - 협력단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정형화 활용(5-6개사업)
 - 페루 보건소, 도미니카 학교등 성공적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고려
 - 사업발굴부터 실시, 완료시까지의 전과정을 기본포맷화
 - 사업수행 과정상의 문서도 기본형식화하여 포함
- . 예산규모, 기본계획안, R/D, E/N, 설계도면, 설계, 시공계약서 등

2)사업구성형태의 변화고려

- 현재는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 위주로 사업을 구성
 - 봉사단원 및 의료인력과 연계구성 확대
 - 전문가의 활용보다 예산이나 효과면에서 월등유리(파견기간 장기)
- . 보건소 - 의사, 간호사
- . 학교 - 교사요원 등

4. 향후 추진과제

가. 프로젝트사업 세부시행지침의 조기 제정

- 사업개념, 사업수행절차, 사업선정 기준등을 규정
 - 단계별 수행절차, 외교적 합의, 설계.시공.현금공여등에 대한 기준등 명확히 언급 필요
- 정책 및 기본원칙적 사항외의 사항은 내부지침에 위임하여 제정
 -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의 구체적 구성요건, 수행절차별 이행사항 등

나. 조직운영상의 사업관리체계구축

- 기획부의 사업검토, 선정, 관리기능 강화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수행단계별 이행사항 심사.점검, 평가
 - 부진사업의 대체.폐지결정 등
 -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
 - 사업지침의 제개정, 공통사항 및 행정 개선사항 처리
 - 기본모형 제시, 사업절차 및 문서등의 정형화 등
- # 향후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제도적인 반영필요(타사업 공통)

다. 사업 장기발전 방안의 단계적 실시

- 97년도에 시범적 대형사업의 1 - 2 개국실시 적극 검토
- 사업구성 내역의 질적 변화 추진
 - 기자재공여 및 관련 설치전문가 파견사업의 프로젝트 분류재고
 - 봉사단원 및 의사파견 연계사업의 확대고려

5. 주요문제사항의 대안검토

가. 프로젝트 용어사용의 문제

- 현재는 프로젝트, 프로젝트사업, 프로젝트형 사업, 프로젝트 원조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

- 프로젝트 용어는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이나, 원조방식 관련 용어로 사용
 - 단위 사업으로서의 프로젝트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정기간내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조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완성후 계속적으로 이익(편익)을 산출해내는 활동(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 개발조사,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등도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음
 - 원조방식으로서의 프로젝트 원조는 공여국이 수원국으로 하여금 특정한 목적에만 원조자금을 쓸수 있도록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임
 - . 특정부문이나 항목에 대한 지출지원으로 이 지출항목이나 부문을 프로젝트라함.
 - 협력단의 프로젝트(형)사업은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등 2개 이상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을 통칭(건축사업 포함)
 - 엄밀히는 사업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업구성 조건으로 정의함
 - 따라서 협력단의 사업용어로서는 프로젝트사업으로 쓰되 프로젝트, 프로젝트원조 표현과는 구별하여 사용
 - 특히 영어표현에 대한 검토 필요
 - . 현재는 project - aid로 표현
- # 일본의 경우 project - type technical cooperation으로 표현

나. 프로젝트사업의 수행절차

- 현행 절차별 개선사항 검토

단 계	현 행 내 용	개 선 검 토 사 항
사업발굴	. 수요조사실시	. 사업발굴팀 파견고려 . 정부 각부처, KOTRA등 유관기관활용 정보수집 . 사업제시도 고려
사업선정	. 연간 사업계획수립시 선정 및 외무부승인(금액배정)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전 사업성 검토 강화 -기대효과, 현지사정(여건) . 1차 심의선정 의미부여 #심의자료양식 정형화

단 계	현 행 내 용	개 선 점 토 사 항
사업요청 접 수	· 수원국으로부터 지정서식에 맞춰 접수	· 사업선정전에 접수(수요조사후)
사업계획 수 립	· 요청서에 근거, 기본계획수립	
조 사 단 파 견	· 담당직원 및 전문가 파견 · 현지조사 및 합의의사록 체결	· 사업실시여건 조사강화
사업계획 확 정	· 조사결과 및 합의결과 반영 · 공판에 확정통보	· 사업선정 위원회에서 최종확정 (조사결과심의) - 사업의 대체, 폐지도 검토 (조사단 조사결과불량, 사업 진행지체시 등)
구 상 서 교 환	· 공판과 수원국간 체결	
사업실시	· 설계, 시공, 조달계약 및 이행 · 연수실시, 전문가파견 등	· 설계, 시공등에 관한 정보 자료, 계약서등 기본형 제시
사업평가	· 사업완성후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제출(일정양식), 평가회의 개최 등 · 문제점, 현지정보 등 제시
사후관리	· A/S등	

“1995 국제협력사업수행지침” 책자 참조

[첨부자료]

- 프로젝트사업의 실시내역
- 프로젝트사업의 구성실태
- 프로젝트사업의 개념검토
- 프로젝트수행절차 검토

프로젝트형 사업 실시내역

국 가	사 업 명	건 축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	봉사단	의료단
중 국	할빈전산센터		0	0	0		
	농업통계지원		0	0	0		
	동양의학센터		0				
	한국어센터	0	0	0	#	0	
	한중훈련센터		0	0	#		
	대기분진연구		0	0	0		
	모자보건센터	0					
	조선사범학교	0			#		
몽 골	식품검사연구		0	0	#		
	국회영상기기		0		#		
카자흐스탄	외교연수원		0	0			
우크라이나	"		0	0	0		
위 지	라키라키병원	0	0				
루마니아	류리절보건소	0	0				
베 트 남	취논기술학교		0	0	0		
	경제개발연구		0	0	0		
	하노이 직훈		0	0	0		
	한국 보건소		0	0		0	0
	열대병 센터		0	0	#		
	박빈지역병원	0	0	0			
	흥케지역병원	0	0	0			
	네안성 학교	0	0				
	빈단성 학교	0	0				
	증권시장개설		0	0	0		
	사회과학원		0		#	0	
라 오 스	외무부현대화		0	0	0		

국 가	사 업 명	건 축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	봉사단	의료단
엘살바돌	식수공급시설		0		#		
도미니카	초등학교건축	0	0				
파 나 마	보건소 건립	0				0	
	기술학교지원		0	0	0		
파라과이	국립농업연구소		0	0	0		
에쿠아돌	외무부행정망		0		#		
볼리비아	의료센타건립	0	0			0	0
페 루	의료센타건립	0	0			0	0
우루과이	외무부행정망		0	0	0		
인도네시아	화산회시멘트	0	0	0	0		
필 리 핀	학교교육시설	0	0				
	공항도로표지		0		#		
	소규모보건소	0	0	0	#		
태 국	벽지학생복지	0	0	0		0	
	한국어 센타1		0	0		0	
	농경지개발	0					
	한국어센타2		0	0		0	
미 얀 마	대학시설개선	0					
	결핵진료소	0	0				
모 로 코	학교전산교육		0	0	0		
수 단	양잠사업	0	0		0		
	직업훈련원	0	0	0	0		
이 집 트	자동차정비	0	0	0	0		
방글라데시	우정병원건립	0	0	0			0
네 팔	잠업센타지원	0	0		#		
	보건대학건립	0	0			0	
스리랑카	직업훈련원		0	0	0	0	

국 가	사 업 명	건 축	기자재	연수생	전문가	봉사단	의료단
스리랑카	어선항법장치		0	0	0		
	자동차실습실		0	0	0		
파키스탄	초등학교건립	0			#		
코트디부와르	외무부현대화		0	0	#		
이디오피아	식수개발사업		0		#		
케냐	공대현대화		0	0	0		

(총 59 개)

주 : * 건물개보수 및 건축관련 현금지원은 건축사업으로 분류

* 중국 농업통계지원 및 베트남 증권시장개설은 조사단 파견임.

* 중국 동양의학센터는 인력교류임.

프로젝트사업의 개념검토

◦ 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수행 지침(안)

- 제2조(정의) 제1항 프로젝트 사업이라 함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개량, 기자재공여, 연수생초청, 전문가, 해외봉사단 파견등의 협력형태들이 복합된 사업으로서 계획수립, 실시, 평가까지를 일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설물의 건축 또는 개량의 경우 단독으로도 사업을 형성할 수 있다.

◦ JICA의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사업'

- 전문가 파견, 연수생초청, 기자재공여 등의 3가지 사업형태를 하나의 사업계획(프로젝트)으로서 유기적으로 통합, 사업계획의 입안부터 실시, 평가 과정을 일관되게 계획적, 종합적으로 운영, 실시하는 협력형태
- 개도국측이 토지, 건물, 운영비등을 부담토록하나 일본측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음.

◦ KOICA(지용기 저)의 '한국의 개도국 원조정책' 책자

- 각종 협력수단인 물적(기자재공여), 인적(전문가, 연수생)요소를 패키지화 하여 상호간의 적절한 조합으로 실시되는 사업
- 특히 이들 요소들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통합하여 프로젝트의 발굴에서 계획입안, 실시를 거쳐 종료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계획적이며 종합적으로 운영실시하는 형태

◦ Baum W. C. and Tolbert S.M. "Investing in Development - Lesson of World Bank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1985)

- 프로젝트란 일정기간내 특정한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투자, 정책수단, 조직, 그외의 조치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영국의 Crown Agent 자료에서 인용)

◦ 원조 공여방식 으로서의 프로젝트 개념

- 공여국이 수원국이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는것
 - 이 자금은 특정기업, 특정부문 또는 경제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을 지원하는데 이용되고
 - 이러한 지출항목을 프로젝트라하고 이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프로젝트원조'라함
- #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정책방향 (한양대, 이선환, 손정식 저)에서 인용

○ John W. Cusworth and Tom r. Franks "Managing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 프로젝트란 생산적 결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한정된 시간내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자본의 투자이다.
 - . 자본은 인적, 물적자원을 의미
 - . 결과는 인적, 제도적 또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
 - . 투자는 정상적인 정례적 지출이나 노력의 범주외의 것으로서 특정기간에 걸쳐 일련의 명확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임
- 프로젝트는 제한된 기간에 걸쳐 비용부담을 통한 자본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완성 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이익(편익)을 산출해내는 결과(자산), 제도, 계획 또는 기구등을 만들어냄

○ CIDA의 프로젝트개념 - "Standards for Bilateral Project Evaluations"

- 프로젝트란 주어진 예산과 기한내에서 특정목표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상호 밀접히 연관된 활동(사업)이다.
- <IDRC - 사업예시>
 - . Postharvest economics advisor(아시아) - 지역과학자 및 경제학자들의 사회경제 연구능력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지역기구에의 서비스공여 (\$222,940 - 24개월)
 - . Sesame(케냐) - 가내 소비 및 판매를 위해 에게르튼대학이 참깨경작자들의 생산 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함 (\$49,280 - 24개월)
 - . Agroforestry(가봉) - 열대환경연구소가 현지 토착과수나무를 재배하여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 및 다원화 시키게 할 수 있도록 함 (\$10,400 - 24개월)
 - . Horizontal resistance in beans(멕시코, 캐나다) - 멕시코대학과 온타리오 켈프 대학이 멕시코에서의 중대한 콩병충해에 대한 지지선개발타당성조사지원 (\$185,910 - 36개월)
 - . Impact of television advertising on the values, attitudes, and aspirations of children(인도) - 인도 과학통신 연구소가 TV광고가 인도 어린이에게 미치는 관해서 그주제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또 광고를 보다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영향에 동원할 목적으로 TV광고를 평가하도록 지원함(\$22,570 - 12개월)
 - .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Scholarships -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가 개도국의 젊은 국제법 학자들을 여러 국제법 분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지원 토록함 (\$30,000 - 12개월)
 - . Majid Rahnema (Pearson scholar) - Rahnema 박사가 14개월동안 IDRC본부 및 지역 사무소에서 빈곤 및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를 행하는것을 지원(\$116,100 - 24개월)

프로젝트 사업의 구성실태

0 총괄

1개사업	2개사업	3개사업	4개사업	5개사업	계
3	17	26	12	1	59

○ 사업구성 내역

- 1개사업구성 : 총 3 개 사업 건축 3
- 2개사업구성 : 총 17 개 사업 건축 + 기자재 7
 - 기자재 + 전문가 5
 - 건축 + 전문가 2
 - 기자재 + 연수생 1
 - 건축 + 봉사단 1
 - 기자재 + 인력교류(조사단등) 1
- 3개사업구성 : 총 26 개 사업 기자재 + 연수생 + 전문가 18
 - 건축 + 기자재 + 연수생 2
 - 기자재 + 연수생 + 봉사단 2
 - 건축 + 기자재 + 전문가 2
 - 기자재 + 전문가 + 봉사단 1
 - 건축 + 기자재 + 봉사단 1
- 4개사업구성 : 총 12 개 사업 건축 + 기자재 + 연수생 + 전문가 4
 - 기자재 + 연수생 + 전문가 + 인력교류 2
 - 건축 + 기자재 + 봉사단 + 의사 2
 - 기자재 + 연수생 + 봉사단 + 의사 1
 - 건축 + 기자재 + 연수생 + 봉사단 1
 - 건축 + 기자재 + 연수생 + 의사 1
 - 기자재 + 연수생 + 전문가 + 봉사단 1
- 5개사업구성 : 총 1 개 사업 건축 + 기자재 + 연수생 + 전문가 + 봉사단 1

○ OECD의 프로젝트절차

- Project Identification and Launch
 . Launch는 발굴프로젝트에 대한 협의시작 방침결정
- The Feasibility Study
- The Budget and The Negotiation of The Project
-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 Technical Assistance and Project Design
- Supervis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ECD발간 'PROJECT AID - LIMITATION AND ALTERNATIVES'

○ 영국ODA의 절차

- IDENTIFICATION
 - DESIGN
 - APPRAISAL
 - DISCUSSION
 - APPROVAL
 - IMPLEMENTATION
 - COMPLETION
 - OPERATION
 - EVALUATION
- 
 MONITORING

ODA의 'GUIDE TO AID PROCEDURE'

○ John W. Cusworth and Tom R. Franks

- Identification
- Formulation - Outline Design, Appraisal, Detailed Design
- Implementation
- Commissioning
- Operation
- Evaluation

'MANAGING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 일본 JICA의 절차

- 기초조사
- 사전조사
- 실시협의
- 실시설계
- 계획협의
- 순회지도
- 기재수리
- 효과측정 (평가검토)
- 사후조사
- 사후관리

JICA발간 '국제협력사업단 개요'

기 자 재 공 여

박 종 욱 차 장

목 차

1. 기자재 공여사업 현황	22
가. 관련 규정	
나. 운영 현황	
2. 중장기 추진방향 및 발전계획	25
가. 기본 원칙	
나. 추진방향	
다. 발전 계획	
3. 요약 및 결론	28

1. 기자재 공여사업 현황

가. 근거규정

- 1)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1-바 " 특정협력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 2)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수행지침 "제5장 대외무상원조(제26조-35조)"
- 3) 대외무상원조사업 세부 시행지침 ('91.6.19 제정)

나. 운영현황

- 1) 용어의 혼용 : 무상원조의 총칭으로 사용
 - 기자재 공여
 - 프로젝트형 사업 (세부시행지침 "제4조 장기성 무상원조사업")
 - 개발조사
 - 현금공여
 - 재난구호
- 2) 공여형태에 의한 제약 (수행지침 제30조)
 - 국산품 공여 원칙
 - 3만불 이상 현금 공여는 외무장관의 승인득
- 3) 장기성 무상원조사업의 독립적인 법체계 미비
 - 프로젝트형 사업
 - 개발조사
- 4) 사후관리 및 평가제도 미비 (수행지침 제34-35조)
 - 사후관리 업무
 - 조달과의 독립으로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 사후 관리를 위한 A/S팀의 정기적인 해외출장 미실시
 - 평가제도 전무
 - 평가기준, 전담부서, 외부평가 등 미활용

5) 지역별 실적 비교

(단위: 천불)

구분	'91	'92	'93	'94	'95	'96 계획
계	11,446 85국4기구	10,995 101국6기구	8,502 95국6기구	10,038 105국6기구	10,239 114국9기구	10,554 89국9기구
아시아 태평양	3,538 30.9%, 21국	2,128 19.4%, 22국	1,247 14.7%, 18국	1,316 13.1%, 20국	1,437 14 %, 27국	1,077 10.2%, 16국
중동	626 5.5%, 5국	1,052 9.6%, 7국	697 8.2%, 7국	466 4.6%, 6국	576 5.6%, 7국	985 9.3%, 9국
아프리카	3,171 27.7%, 30국	4,205 38.2%, 35국	3,544 41.7%, 39국	3,709 36.9%, 38국	3,475 33.9%, 40국	3,085 29.2%, 36국
중남미	2,913 25.4%, 24국	2,274 20.7%, 26국	1,574 18.5%, 21국	2,079 20.7%, 25국	1,854 18.1%, 23국	1,355 12.8%, 16국
동구	525 4.6%, 5국	779 7.1%, 11국	754 8.9%, 10국	1,304 13 %, 16국	1,327 13 %, 17국	1,686 16 %, 12국
국제 기구	673 5.9%, 4기구	550 5.0%, 6기구	659 7.7%, 6기구	1,163 11.6%, 6기구	1,570 15.3%, 9기구	1,123 10.65, 9기구

6) 공여 물품의 종류

○ 95년도 공여물품 : 191 품목

공 여 물 품	품 목 수	공 여 물 품	품 목 수
승 용 차	16	의료장비	44
화물트럭	5	의약품	15
버 스	8	가전제품	10
이륜 차	2	인쇄기계	3
특수차량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
건설장비	7	사무용기기	12
운반하역장비	4	문구류	5
농기계류	13	운동용품	8
펌프 및 동력기계	3	통신기기	6
잡업 기자재	7	직훈장비	4

3. 중장기 추진방향 및 발전계획

가. 사업개요

- 1) 수원국의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하거나 인간기본욕구(BHN: Basic Human Needs)의 충족에 필요한 기자재 또는 구호물자 등을 공여
- 2) 개도국의 경제, 사회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상환의무를 부과하지않는 증여의 형태로 물자 또는 현금 공여형태로 지원
- 3) 개도국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대부분 선진 공여국의 주요 협력수단
- 4) 천재지변, 질병 및 전쟁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개도국에 구호금등을 공여하는 긴급 재난구호나 개도국에 파견된 해외봉사단원, 국제협력요원, 의료단원들이 현지 활동과정에서 기획하여 수행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지원 등을 포함

나. 추진방향

- 1) 공여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급적으로 일과성, 소모적 성격의 공여방식 보다는 장기적으로 공여 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을 우선지원
- 2) 수원국 요구에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력 방식을 추진
- 3) 인도주의 고려에 의한 최빈국(LLDC) 우선 지원
- 4) 정부 차원의 약속사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추진
- 5) 가급적 공여품목을 축소지원
 - 소량다품목 공여에서 다량 소품목으로 발전
- 6) 관련 법규와 지침의 정비
- 7) 사후관리 및 평가제도의 도입

다. 중장기 기자재공여사업 발전계획

1) 관련 법규 및 지침 정비

◦ 개념의 재정립

- 기자재 공여 사업은 현행 기자재공여, 재난구호 사업에 국한
- 프로젝트형사업, 개발조사사업의 세부지침을 보완 제정

◦ 공여형태에 의한 제약을 협력단에 위임

- 국산품 공여(Tied 원조)
- 3만불이상 현금 공여시 외무부장관 승인을 협력단총재로 권한위임

2) 사후관리 및 평가제도의 도입

○ 외국의 평가제도

- DAC의 지침제시 및 선진 원조기관들의 평가에 대한 중요성 강조
- 평가 전담부서설치 및 운영
- 정교한 평가기준 운영
-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개별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측정
- 사업 내용을 의회와 국민에게 제공
- 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자체평가외에 상부감독기관 평가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외국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A/S팀의 정기적인 해외출장실시

○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관리는 전무하고 사후관리업무도 취약함

○ 사후관리 및 평가제도의 도입

- 원조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후평가기법의 연구와 도입이 필수적임
- 원조규모의 증대에 맞추어 원조집행에 대한 외부기관의 효과적인 평가가 요구됨
- 사후관리체제의 강화 : 조사단의 파견으로 공여기자재의 활용 실태 점검

3) 기자재 공여 집행업무의 개선

○ 현황

- 컴퓨터, 차량등 빈번한 공여품목에 대해서도 각 국가 담당과가 개별적으로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바, 이에따른 시간상, 행정 절차상 비효율성이 노정됨.
- 최초 가격조사와 조달계약후 가격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 증량 또는 추가품목 재집행재가로 기자재 공여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 개선방안

- 요청품목 수시등록, 일괄 가격조사

- 각 수원국으로부터 요청품목이 접수되는 즉시 조달과 통보, 조달과는 공통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일괄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 일소.

- 일부 품목 지명경쟁 입찰제 실시

- 컴퓨터, 복사기 등 각 수원국으로부터 자주 요청되는 품목은 우수 공급업체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우수품목이 지원되도록 조치, 이를 위해서는 물량확보가 필요한 바, 각국별계약을 지양하고 일괄계약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요약 및 결론

- 1) 재외공관 및 지역사무소가 상대국 정부와 협력사업과 관련한 정책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결정토록 하고, 현지에서의 1차 평가와 조사기능을 강화
- 2) 기자재 요청과 관련, 재외공관은 주재국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요청주의방식에서 협의주의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외공관의 1차적 평가와 조사기능을 강화하되 공여목적과 수혜기관을 확실히 하고,
- 3) 기자재 공여는 당해년도 1/4분기 이내에 요청토록하고 국당 지원금액이 소규모인점을 감안하여 요청품목수를 줄이고 1회에 일괄요청토록 하여 공여물품의 적기공급이 가능토록 해야하며, 지원권장 품목 및 사양품목 리스트를 제공하여 상대국 정부와 협의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함

제공하여 상대국 정부와 협의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

- 4) 상대국 정부와 협의시, 상대국의 실질적인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 5) 또한, 원조규모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후관리의 철저와 사후평가가 필히 실시 되어야 함.

개 발 조 사

이 영 식 과 장

목 차

1. 개발조사 사업개요	31
가. 목적과 효과	
나. 사업실시분야	
다. 사업실시절차	
라. 사업실적	
2. 문제점 분석	35
가. 사업발굴과 선정문제	
나. 사업자선정과 관리의 한계	
다. 사후평가제도와 FEED BACK기능의 결여	
라. 사업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미흡	
3. 중장기 효율성 제고방향	36
가. 적극적인 우량사업발굴	
나. 사업선정의 합리성 추구	
다. 컨설팅기업 관리기능강화	
라. 사업평가제도의 도입	
마. 사업결과의 활용도제고	
바. 사업적용확대와 탄력적 운용	
사. 공동사업의 추진	

1. 개발조사사업 개요

가. 목적과 효과

- 개발조사는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위해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준비 등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임
- 효과로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역할을 수행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함

<수원국에 주는 효과>

- 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조사 및 사업우선순위 등 사업추진정보 제공
- 선진국이나 국제금융기관 등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필요한 자료제공
- 개발조사과정에서 상대국 기술자와의 공동작업으로 개발조사에 관련된 기술을 이전

<공여국에 주는 효과>

-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개도국 진출기회 확대 및 국내업체 관련사업 참여가능성 제고
- 관련사업 및 국가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축적
- 국내업체의 해외기술용역 경험축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 및 차관제공결정에 유리한 자료제공

나. 사업실시분야

- 개발계획 : 지역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환경보전계획, 경제개발계획
- 건설 : 항만, 공항, 도로, 철도, 교량, 상하수도, 하천, 제방, 수자원, 공업단지
- 측량 및 토질조사 : 항공측량, 해양측량, 일반측량, 지하수개발, 시추
- 건축 : 주택, 교육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통신방송시설, 생산유통시설
- 운수, 교통 : 육운, 해운, 항공, 선박, 철도

- 방송, 통신 : 방송, 통신, 전신, 전화, 우편
-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 농업토목, 양봉, 농산물가공, 수산양식
- 광공업 : 중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광물개발
- 에너지 : 전력, 석유, 가스, 원자력
- 기타 : 의료, 가족계획, 행정, 통계, 교육문화, 인구, 금융

다. 사업실시절차

- 수요조사 실시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재외공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수원국 정부로부터 사업요청서 접수
- 후보사업의 구체화 및 지원사업 선정
 - 수요조사결과 후보사업 취합 및 검토
 - 세부 사업내용 파악
 - 연간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 외무부로부터 연간 지원대상사업 승인
- 사전조사단 파견
 - 협력단,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구성
 -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현지답사 및 TOR 협의
- 개별사업 승인신청, 승인 및 통보
 - 외무부에 출장결과 보고 및 사업실시 승인신청
 - 외무부의 사업승인
 - 수원국에 사업실시 확정통보 및 TOR제출요청
- TOR 접수
 - 상대국 정부로부터 세부사업 요청내용, 작업범위 등을 접수
- 사업자 선정
 - 예정가격작성, 경쟁입찰 등을 통한 사업자 선정

○ MOU체결

-사업시행에 필요한 상대국 정부의 조치사항 등에 관해 정부간 합의서 체결

○ 사업실시계약 체결

-예정가격과 견적가격을 조정하여 당해사업 사업비 확정

-계약서작성 및 용역계약체결

○ 사업실시

-계약에 의해 용역기관이 수원국에 조사사업착수

-사업착수후 1 - 2개월이내 상대국에 착수보고서 제출

-분기별 진도보고서제출 및 집행실적보고

-사업종료 1 - 2개월전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 종합평가

-개발조사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TOR비교검토한후 상대국 정부에 제출하여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 최종보고서작성

-국영문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대국 정부에 제공

○ 사업완료보고 및 사후관리

-사업종료후 1개월내 사업비정산

-사업완료보고회 개최

-관계부처 및 기관에 자료송부

라. 사업실적

○ 연도별실적

(단위: 백만원, 만불)

구분	'91	'92	'93	'94	'95	'96
합계	34.8 (4.6) 2국2건	989.4 (125.5) 5국7건	2088.9 (258.5) 7국12건	2911.9 (362.3) 6국16건	2420.0 (318.8) 6국12건	1898.0 (250.4) 9국13건
아시아 태평양	34.8 (4.6) 2국2건	989.4 (125.5) 5국7건	2088.9 (258.5) 7국12건	2566.3 (319.3) 4국14건	1676.5 (271.4) 4국10건	1239.7 (165.3) 5국9건
중동	-	-	-	219.2 (27.3) 1국1건	527.2 (68.4) 1국1건	519.0 (69.2) 3국3건
중남미	-	-	-	126.4 (15.7) 1국1건	216.3 (28.1) 1국1건	119.3 (15.9) 1국1건

○ 96년도계획

(단위: 백만원, 만불)

국가명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9개국 13건	1878.0(250.4)	
베트남	○ 자원개발협력조사사업(92-96)	113.3(15.1)	자 원
중 국	○ 복건성 광물자원개발조사(94-97) ○ 산서성 분화댐건설타당성조사(94-96) ○ 신강성 광물자원개발조사(93-96) ○ Mishan-Dangbi간철도타당성조사(96-97)	99.7(13.3) 99.7(13.3) 112.5(15.0) 112.5(15.0)	자 원 지 역개 발 자 원 지 역개 발
인도네시아	○ 석탄성형개발조사(94-96) ○ 롬복섬도로망개발타당성조사(94-96)	105.0(14.0) 300.0(40.0)	자 원 지 역개 발
스리랑카	○ 트린코말리지역 개발조사(96)	150.0(20.0)	지 역개 발
라 오 스	○ 타드살렌 소수력발전소건설조사(96)	147.0(19.6)	전 력
요 르 단	○ 페수처리확장 타당성조사(95-96)	69.0(9.2)	환 경
이 집 트	○ 시나이반도 기술단지타당성조사(96-98)	300.0(40.0)	지 역개 발
튀 니 지	○ 직업훈련소 타당성조사(96)	150.0(20.0)	직업훈련
과테말라	○ 광물탐사사업(94-97)	119.3(15.9)	자 원

2. 문제점 분석

가. 사업발굴과 선정문제

- 수요조사를 통한 수동적 요청주의방식은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움
 - 수요조사의 부실, 수요조사표의 기술상 어려움으로 사업명만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내용 파악조차 용이하지 아니함
 - 상대국이 요청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여국과의 중복가능성, 정치적인 전시사업 및 사업우선순위가 낮은 잔여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선정의 비합리성으로 사업효율성 저하
 - 국별 원조전략, 개별사업의 사업성분석, 추진가능성 점검없이 후보사업 선택
 - 지역부서의 나열식 사업신청과 기획부서의 예산만을 감안한 비합리적 사업선택이 현실임
 -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지식, 충분한 검토, 합리적 기준설정이 필요함
- 사업세부내용파악, 사업추진계획수립 등 선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됨

나. 사업자선정과 관리의 한계

- 우리나라는 개발조사의 컨설팅사업이 낙후되어 체계화된 컨설팅기업이 부족
 - 통상 2 - 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며 일부는 단일업체에 의한 수의계약
- 사업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전문가관리제도가 낙후
 - 분야별 전문인력정보가 마련되지않아 인력확보가 어려움
 - 형식적인 사전조사 및 부실한 기술평가 우려
- 사업추진에서 완료까지 컨설팅기업의 감독기능 미약
 - 담당업무 지속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컨설팅기업의 감시 감독기능이 거의 없는 실정임
 - 계약사항 충실히행여부, 자금 및 인력사용의 적정성점검 등 중간 모니터링기능이 부실함

다. 사후평가제도와 Feed Back기능의 결여

- 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원조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여 차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야 함
- 현재 사업중간은 물론 사업종료후에도 객관적인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수없음

라. 사업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미흡

- 보고회 개최 및 유관기관 자료배포로 사업이 최종 종료되므로 사후관리, 활용도제고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일부 EDCF에 자료를 발송하여 유상원조 참고자료로 활용
- 최종보고서에는 재원확보대책, 후속사업 연계방안및 활용 등 제시되지 않아 수원국에서 사업종료후 본사업 시행이 용이하지 아니함
- 사업결과가 사장될 가능성이 많음

3. 중장기 효율성제고 방향

가. 적극적인 우량사업발굴

- 정부부처, 공공기관, 단체 및 민간기업의 사업발굴 추천제도 도입
- 사업수요요청을 내국인에게도 확대하여 다수 후보사업군에서 우수사업발굴
- 정기적으로 사업선정안내서를 발송 또는 신문게재하고 사업선정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수원국과의 정책대화 정례화
- 1차적으로 중점협력국과의대화를 1 - 2년단위로 정례화
- 협력단 실무자 또는 책임자를 참석토록하여 해당국의 원조실무를 논의토록 함
- 수요조사 요청사업을 3년까지 유효화하여 집단 평가제도를 통한 우량사업 선정

나. 사업선정의 합리성추구

- 국별사업전략에 따른 합목적성 사업선정 추진
- 상위개념의 국별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선정

○ 후보사업의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선정

-사업별 기술성, 경제성, 효과, 사업추진가능성 등을 체크리스트화하여 분석

-심사기준으로 기술적심사, 경제적심사, 사회적심사, 환경적심사, 재무적심사, 관리적심사 등에 초점을 둠

다. 컨설팅기업 관리기능강화

○ 감리 평가를 위해 개별전문가 1 - 2명 선정하여 사업종료시까지 자문받음

-분기별 사업진척보고서 검토

-사업중 모니터링임무부여

-사업종료직전 현장출장점검 및 사업이행결과평가

라. 사업평가제도의 도입

○ 평가제도는 사업을 조직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자생능력, 합목적성, 성취정도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

-평가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영향, 지속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내부수익율분석 등이 있음

○ 평가유형으로는 사업발굴후 최초평가, 사전심사평가, 사업진행중평가, 사업종료평가, 사후평가, 부문별평가, 프로젝트별평가 등이 있음

○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정부부처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실시가 바람직함

○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정부, 국회 및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 원조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

마. 사업결과의 활용도제고

○ EDCF, NGO, 민간기업 등과 사업연계를 고려하여 사업선정

-우리나라는 조사와 실시를 구분하는 구분실시형을 채택하여 사업결과가 사장되는 사례가 많음

○ 컨설턴트기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시 본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방안을 제출토록 제도화

○ 사업종료후 사업결과요약을 공표 또는 유관기관에 발송하여 사후활용도제고

-정부부처, 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건설협회, 무역협회 등에 보고서발송 및 자료지원

- 무역협회지, 건설협회지 등 유관정보기관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 투자, 공사수주 및 연계사업전개 유도

바. 사업적용확대와 탄력적응용

- 개발조사사업은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사업 또는 프로그램사업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므로 대형사업에는 사업시행전 컨설턴트의 자문이 필요
- 규모에따라 개인 또는 기업컨설턴트를 투입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의 전문성도입
- 특히 대규모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컨설턴트기업과의 사업전개가 바람직
- 사업진행중 특정사안에한해 사업규모조정과 예산의 탄력적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장치 마련
- 사업조기완료에 따른 예산낭비요인 제거
- 사업목표에 맞춰 일정범위내에서 사업규모의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하도록 사업수행조건 명시

사. 공동사업의 추진

-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제고
- 각국 또는 국제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인력, 풍부한 경험, 광범위한 정보 및 정치적 중립성을 이용
- 2국간 곤란한 사업, 예산제약 및 인력부족 등 극복가능
- 형태로는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이 있음
- EDCF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본사업 실현성제고
- 민간기업, 연구소, 민간기구와의 협력으로 사업시행상 문제점해소 및 활용도제고
- 아국기업 해외진출확대 유도 및 우선수주가능성 제고
- 상업차관, NGO 등 비ODA부문의 확대

연 수 생 초 청

김 종 록 부 장

本 資料는 日本 "國際開發 저널"社에서 發行하는 "國際開發 저널"誌 '94年 5月號에 掲載된 "技術協力 支援機關으로서 飛躍하는 JICE (財團法人 日本國際協力센터)" 題下の 特輯記事 內容(日語版)을 翻譯한 것입니다. JICE 는 昭和 52年 ('77年度) 3月 "財團法人 國際協力 서비스 센터"로서 設立되었으며, 現在의 名稱으로 바뀐 것은 平成 5年 ('93년) 2月임. 設立의 主要 目的은 첫째, 國際協力の 實施에 關한 協力이며, 두번째는 國際協力에 關한 知識의 普及, 세번째는 國際協力 關係者에 對한 福利增進임. 具體的으로는 "弘報事業"과 "國際協力 支援事業"을 비롯하여 "福利厚生事業" 및 "其他 關聯事業"등을 展開하고 있음.

KOICA 가 推進하고 있는 研修生 招請事業의 바람직한 發展 方向을 摸索하기 爲해서는 優先 우리보다 技術協力 經驗이 豊富한 日本 JICA 의 研修生 招請事業 現況을 把握하는 것도 좋은 方便이 될 수 있다고 보고 本 特輯內容을 全文 翻譯하기로 하였습니다. (JICA 研修事業部 組織表 등 관련내용은 國際開發 저널誌 '96년 8월호 參照함)

이와 아울러, 向後에도 繼續하여 日本 國際協力團 年報 및 日 外務省 發行 ODA 白書를 비롯하여 JICA 發行 研修關聯 資料등을 檢討하여 日本의 研修員 招請事業을 比較.分析하여 KOICA 研修生 招請事業의 改善方向을 摸索하는데 參考로 삼고자 하며, 美國, 英國, 캐나다, 濠州등을 비롯한 餘他 先進國의 技術協力 推進現況 등도 綿密히 比較.分析하여 研修生招請事業의 效果的인 推進 方案을 樹立하기 爲한 體系的 研究를 持續하여 關聯資料를 作成.報告하고자 합니다.

***** 目 次 *****

--- 머릿말 ---	40
I. 技術協力 支援機關으로서 飛躍하는 JICE	42
II. JICE 誕生의 背景과 그 活動 評價	45
III. JICE 第 2 發展段階를 向한 抱負	47
IV. JICA 와의 業務分擔에 留意	51
V. 分室의 機能 強化에 沒頭하는 JICE	53
VI. JICE 現場報告 座談會	57
[別添]	
1. JICA 研修 關聯部署	69
2. JICE 組織圖	71

技術協力支援機關으로서 飛躍하는

I.

JICE (財團法人 日本國際協力센터)

出處 : 國際開發 저널 ('94年 5月號)
(日語版)

研修員 受入業務를 主로하고 새로운 分野에도 果敢히 挑戰

[研修事業의 實施面을 擔當함]

人力協力の 效果는 사람과 사람을 接觸해 가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없던 것이 새로 생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研修事業이 갖고 있는 特異性이다.
그래서 研修事業이 어려운 事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4年度 JICA 가 받아들이는 研修員은 7,100 餘名. 開發途上國의 開發需要,
또는 地域的으로 넓은 점 때문에 研修內容도 多樣化의 方向을 追求하고 있으며
日本의 人力協力(사람만들기 事業)에 거는 内外의 期待는 한층더 높아지고 있는
狀況이다.

이러한 期待를 背景으로 점점 더 活躍이 注目되는 것은 研修事業의 實施面을
中心으로 擔當하고 있는 JIC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이다.
JICE (財團法人 日本國際協力센터)는 昭和 52年('77)에 設立된 이후, 研修事業의
最前線에 서서 研修監理員의 確保를 爲해 努力하고 各級 研修機關과의 連帶, 調整
을 圖謀해 가면서 研修實施業務를 一貫的으로 推進해 오고 있으며, 事業을 效率的
效果의으로 實施하여 質的 向上을 다한 그 機能은 크게 評價 받을 수 있을 것임.

[強化되는 JICE 地方支所]

研修事業에 對한 開發途上國의 要請은 해마다 多樣化되고 있는 狀況이며, 民間 레벨의 技術이 要求되는 局面도 나날이 增大되고 있는 實情임. 또, "地方의 國際化"라는 움직임과도 連動되는 形態로서 JICA 研修事業은 地方展開의 方向을 強化해 하고 있으며, 이미 2-3 年前 부터 集團 研修코스의 地方 研修센터로의 移管, 個別研修에 關해서도 94年度 부터 順次的으로 地方으로의 移管이 進行되고 있다. 이 때문에 JICE 도 全國 10個所에 設置된 支所의 機能을 強化하여, 擴充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研修監理業務, 日本語研修, 브리핑 및 오리엔테이션 등 地方레벨에서 活性化되고 있는 狀況임.

支所機能의 強化에 依해, "JICE 의 얼굴"이 地方에 浸透하여 本部의 國際化路線과도 連帶를 해 가면서 國民에게 親密한 機關으로 成長해 갈 것이 期待되고 있음.

[새로운分野에 발을 내디딘 JICE]

專門性을 活用한 JICE 의 活躍의 場은 日本國內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JICE 의 存在를 海外에 나타내는 劃期的인 프로젝트가 된 "캄보디아 難民 再定住 農村開發 프로젝트"와 '91년도 부터 實施되어 온 "러시아 聯邦 등에 대한 技術的 支援 計劃"이다. 前者는 캄보디아 歸還 難民의 再定住를 促進하기 爲한 農村開發 / 敎育 訓練計劃에 對해서 日本政府가 UNHCR(國際聯合 難民高等辦務官 事務所)에 資金을 出資한 것을 JICE 가 契約하여 受注했음.

"콘폰스프-", "다케오" 兩縣에 걸쳐있는 3個 郡을 對象 地域으로 日本과 ASEAN (東南亞國家聯合)의 專門家가 連帶했음. 所謂 "三角協力"에 依해 綜合農村開發을 爲한 技術指導 등이 展開되고 있음. ('94년도는 UNDP 와의 契約에 의해 繼續). 지금까지의 援助의 틀을 넘어서 이러한 三角協力等の 推進은 今後, 케이스별로 增大될 것이 充分히 豫想되지만, 그 先驅的인 役割을 JICE 가 擔當해 가고 있는 點은 크게 注目되는 點일 것이다.

한편, 러시아 聯邦等에 대한 技術支援計劃은 '91년 4월,當時 고르바초프大統領의 來日時에 締結된 "對蘇 技術的 支援協定"에 根據하여 實施된 것으로서 外務省이 '91年度부터 '93年度에 걸쳐서 市場經濟 移行을 爲한 研修員을 받아들임에 있어, 具體的인 研修實施에 關係되는 運營,管理業務를 JICE 에 委託한 것임.

'93年 까지의 研修實績,受入實績은 農業,鐵道,流通,財政金融 分野를 中心으로 하여 311名에 達함.

'94년 4월부터는 새로운 案에 依해, 支援이 繼續되고 있는 方向에 있음.

러시아 聯邦은 ODA 對象國이 아니기 때문에 그 實施 財源은 非 ODA 豫算임.

이러한 새로운 支援이 可能하게 된 背景에는 關係 各省,廳의 全面的인 協力 外에도, "研修 노하우를 充分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彈力的으로 움직이는 JICE"라는 民間組職의 存在가 極히 컸었던 것 같다"고 政府側 關係者가 言及함.

研修員 受入業務를 커다란 軸으로 하면서도 專門性을 充分히 活用하여 새로운 分野를 밟아가고 있는 JICE. 國境을 超越하여 그 存在感은 더 한층 強化되고 있는 느낌임.

II. JICE 誕生의 背景과 그 活動 評價

岩元 克 JICA 理事 (國際開發 저널 '94年 5月號)

JICA 는 94年 8月 1日 로 設立 20周年을 맞이한다.

JICE 가 設立된 昭和 52年('77年) 當時는 日本의 國際的 地位가 해마다 높아가고 있는 傾向이 있는 가운데, 國際的 責務의 一環으로서 經濟協力을 擴大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時期였음. 그 中에서 JICA의 豫算은 倍增이 되는 街道에 있었지만, 問題는 그 實施를 效果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해서는 官民一體의 協力體制를 構築하는 것이 急先務였다.

優先, 主要한 것은 國民的 合意의 形成을 向해서 國際協力에 關한 知識을 普及하기 爲해 蓄積된 JICA의 開途國 및 援助에 關한 데이터, 情報를 有用하게 活用하는 것이었음.

다만, 그것을 JICA 自身이 行한다는 것은 本來의 業務에 바뻐던 JICA 로서는 無理였음.

거기에서, 이러한 役割을 擔當한 財團法人 國際協力 서비스 센터 (現在의 日本 國際協力 센터) 가 設立되었음. 따라서, 當初의 JICE 의 活動은 JICA 圖書資料의 整理, 年報出版, 國內要員의 JICA 에의 派遣業務, 弘報事業으로서의 講演會의 開催, 國際協力에 縱事하는 사람들에 對한 福利厚生, 保險業務 등이 中心이 되었음.

그후, 飛躍的으로 伸長한 JICA 豫算은 限定된 JICA 職員으로서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直面했지만, 그 中에서도 사람의 손이 가는 研修監理業務를 中心으로 財團에 業務를 委託하는 方向으로 始作되었음.

이것은 JICA 가 해야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論議도 있었지만, 專門職으로서 外國語가 可能한 語學集團을 만들 必要가 있다는 結論에 到達함.

JICA의研修은周知하는바와같이國際語인英語및스페인語等の通譯을通해서實施하고있다.그境遇의通譯은單純한通譯이아니고,研修生の日本에서의生活面도包含해서보살펴주는것이다.

JICA는이러한業務를研修監理業務라고부르고있다.

JICA에서는이러한業務를財團으로 옮겨서,專門的集團에依해서敎育을 받도록하는便이 좋지 않을까하는쪽으로생각하게되었음.

財團의歷史中에昭和55年の研修業務의移管은計劃的인일이었다고생각됨.이것에의해,財團의JICA에對한直接的인支援體制가整備되었음.

現在는研修支援뿐만아니라,靑年招請事業및컨설팅서비스,技術프로젝트支援,緊急援助支援등의業務가擴大되고있으며,名實共히JICA業務에不可缺한支援財團에까지成長해가고있음.

最近에는研修用語에關해서도,英語,스페인語,프랑스語,中國語는勿論이고,러시아語,東歐諸國의言語까지範圍를넓혀꽤많은人材를모으고있다.財團은國內各地域에있는支所를通해서,JICA研修센터의事業도支援해가면서,各地의公共團體와의連帶를鞏固하게하고各地의國際化에적지않은도움을주고있다.

그러나,長期的인眼目에서보면,同財團은組織적으로脆弱한데가있어서이것으로부터조직의強靱性を높이고자한다.더구나,일을進行해나가는中에迅速性이要求되어진다.JICA의Family로서의支援財團의成長에의해서,日本の國際協力이보다質 높은것으로되어지고있다는것을確信하고있다.

III. JICE 第 2 發展 段階를 向한 抱負

遠藤 英夫 JICE 理事長
(國際開發 저널 94年 5月號)

오는 94年 8月 1日 字로 設立 20周年을 맞이하는 JICA(日本國際協力事業團)를 支援하는 財團으로서 發足한 JICE (現 日本國際協力 센타)는 94年 設立된 지 18년째 접어든다. ODA 擴大와 더불어 着實히 成長해 온 JICE는 冷戰時代 以後에 있어서 새로운 援助時代에서 第 2의 發展段階를 向하고 있다.

결코 順風에 돛을 단것으로만 볼 수 없는 흐름속에서, 第 2代 理事長인 遠藤 英夫 氏는 배의 노를 잡는 큰 期待를 하고 있음.

遠藤 씨는 93년 理事長에 就任하기 까지 本來 JICA 理事였지만, 그때까지는 派遣事業部長, 인도네시아 事務所長, (當時의) 無償資金協力 第 1部長(調査), 人事部長등의 포스트를 밟아온 人物임.

[國際協力支援 事業의 발자취로 부터]

----- 設立 18년째 접어드는 JICE 이지만, 우선 ODA의 變遷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事業展開를 어떻게 回顧하십니까 ?

遠藤 : 設立 當時부터 보아 나가면, 事務局 職員 2名, 基本財産 1,000萬엔 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規模로 JICE 는 스타트 했음.

78年에 實質的인 事業이 始作되었지만, 數年間은 嚴格한 資金事情과 脆弱한 組織 體系가 繼續되었음.

78年 부터의 4次에 걸친 ODA 中期目標에 따라서, ODA 豫算이 飛躍的으로 伸長함과 더불어, JICA 를 통한 事業도 擴張되고 體制도 어느程度 整備되어 왔음.

또, 冷戰體制 崩壞後에는 새로운 地域이 援助의 對象으로 되어, 業務內容도 多樣化 하고 있음.

----- 當初부터의 JICA 研修事業에 對한 支援이 JICE 事業의 主였었지요 ?

遠藤 : JICA 의 研修豫算이 擴大되는 한편, 人員은 固定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支援하는 것이 큰 目的이었음.

研修生에 對한 通譯 業務 및 連絡調整을 行하는 研修監理員을 配置하는 것으로부터 始作하여 지금은 教材作成 및 研修 프로그램의 一部도 實施하고 있음.

研修監理員의 現在의 人員數는 常勤 72 名 (94年 5月 現在), 또한 研修生을 받아 들이는 것 뿐만아니라, 靑年招請事業에도 研修監理員을 配置하고 있다.

이들 業務로는 英語, 佛語, 서반아語 등 傳統的인 國際語에 限定하지 않고, 中國語 및 러시아語, 거기에다 蒙古語, 캄보디아語 등 特殊語에 對한 需要도 增大하고 있음.

全體的으로는 現在 JICE 職員은 133名, 또 거의 同數인 研修監理員, 日本語指導員 및 農業, 水産, 視聽覺 등 分野의 技術專門囑託이 있고, 그 周邊에 거의 1,000 名의 非常勤 스태프가 있다.

非常勤 스태프도 研修監理員, 日本語指導員, 調查研究員이라고 하는 專門職으로 構成되고 있음. 研修支援事業은 지금도 事業의 半 以上을 占有하고 있음.

[新時代의 需要에 어떻게 對應할까]

----- ODA 事業과 對象地域의 多樣化라고 하는 말과 關聯해서, 새로운 JICE 의 覺悟를 말씀해 주십시오.

遠藤 : 새로운 地域으로서는 東歐, 몽골, 中央아시아, 印度支那 3國이 있음. 또, 事業의 多樣化라고 하는 側面에 있어서는 3年前에 外務省의 委託를 받아 始作한 對-러시아 技術支援事業으로서 每年 100名 程度의 專門家を 招請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難民 再定住 센터"의 建立, 運營과 같은 JICE 設立 當初에는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ODA의 範疇에 들어가고 있음. 이것도 外務省이 斡旋하여 UNHCR(유엔高等難民辦務官室)과의 契約에 根據하여 JICE 가 實施하고 있음.

今後, 캄보디아에서는 UNDP 와의 契約에 依해, 泰國,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4個國으로부터 技術者를 招請하여 日本으로부터는 JICA 專門家 및 協力隊員이 派遣되며, 所謂 "南南協力", "3角協力"의 形態로서, 難民에 對해 技術을 移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JICE는 그래서 프로젝트의 管理業務를 行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部門은 JICE 의 組織中에서 어떤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가?

遠藤 : 러시아로부터의 專門家 招請은 "國際交流事業", 難民支援은 "技術協力事業 프로젝트等 支援事業"으로서 實施하고 있음.

國際協力이 이것만 多樣化해 간다면, 法制度上 JICA 가 擔當하지 않는 일도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NGO 의 組織力으로서는 이들을 消化시키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分野를 JICE 가 떠 맡고 있음.

또, JICA 가 行하는 國際協力の 質的인 改善이라는 點에 있어서도, JICE 가 JICA 의 業務量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도 相當한 功獻을 하고 있는 部分이 있음.

예를 들면, JICA의 國別 어프로치가 必要한 國別情報 파일의 編輯等임. 이것도 JICA와의 緊密한 連帶를 前提로 進行되고 있음.

이와 같이 되돌아 보면, JICA 의 指導와 外務省의 支援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需要에 應해 온 17年間の 歷史中에서 JICE 는 조금씩 조금씩 持續적으로 認識이 되어진다고 보여진다.

[自治體와의 連帶로서 地方弘報도 展開함.]

----- 그런데, 國際協力の 地方展開라고 하는 課題를 向해서, JICA 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連帶를 爲해 JICE 가 해야만 하는 役割이 크지 않아요?

遠藤 : 地方自治團體로 부터 JICA 研修센터 設置를 하려는 要望이 많이 있지만, JICA 와 自治團體와의 連帶의 方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關해서는 JICA 의 依賴를 받아 "今後의 研修施設의 方案"에 關한 調査를 傳達하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일이 있음.

또, 各地의 JICA 研修센터에 JICE 의 分室을 設置하고 있지만, 最近에는 權限과 責任을 強化하고 分室로 부터 支所로 昇格시켰음.

支所에는 職員. 研修監理員, 日本語指導員 등이 配置되고 있으며 文字대로 全國 네트워크가 可能함.

----- JICA 의 研修生 招請 實績은 ?

遠藤 : 여러가지 累計에서 10萬名 가까이 됩니다.

또, JICA 는 歸國研修生の 研修成果等에 關해서 把握하기 위해 Follow-Up 팀을 派遣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 팀에는 JICE 의 멤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個人的인 見解로서는 自費參加라도 좋으니까, 꼭, JICE 로 부터도 들어갈 욕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職員으로서도 研修監理員으로서도 自身이 研修를 擔當한 研修生들의 實績을 自身の 눈으로 確認하는 것은 極히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 地方展開를推進하는外에도 JICE의事業의 더 重要한 기능의 하나인 國際協力 弘報活動이 重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遠藤 : 이것도, JICA 및 外務省에서 充分한 손이 없다면, 業務를 넘겨 달라고 하고 쉽습니다. 또, 昨年 한때 부터 釧路市 및 宮崎縣 等の 自治團體와 連帶해서 地方弘報도 展開해 가고 있음.

더우기, 中高等學生을 對象으로 한 開發教育을 弘報속에서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成長의 신드롬에 빠져들어서는 아니 되겠다.]

----- 지금, 日本의 ODA가 目標로 하고 있는 細密한 援助를 達成하기 爲해서는 사람과 時間의 코스트가 들어간다. 사람을 形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典型이 아닐까?

遠藤 : 말씀하신바와 같이 점점 여기에 合致하는 體制를 形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必要한 것은 迅速性和 效率性이겠지요.

그러기 爲해서는 人材의 育成이 緊要함.

또, 事業 受託에 있어서는 人員 및 코스트의 擴大를 嚴格하게 생각하여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ODA 豫算도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Global Issue 等에 對한 對應이 점점 요구되는 時點에 있어서 JICE 에는 JICE 나름대로의 "思想" 이 必要함

JICE가 지금까지 서서히 評價를 받아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關係方面의 支援과 指導가 있었기 때문임.

그래서 "JICE의 事業規模가 꽤 크게 된다는 치더라도 결코 成長의 신드롬에 빠져들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임.

最近, 堺沃太一 氏의 "組織의 成衰"를 읽어 보았지만, 좋은 組織의 3가지 조건으로서 "크기", "堅固함", "強함" 이 있다고 함.

JICE의 경우, 17年間の 歷史로 보아서 노하우의 蓄積 및 專門技術 Stock의 側面에서 이미 充分한 크기가 있어도 된다는 點이 있지만 아직 不充分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構成도 職員이 있고 專門 囑託이 있고 그 周邊에 또 非常勤 스태프가 있다고 하는 3重, 4重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堅固함"은 組織으로서의 一體感 (Identity) 이 不充分함.

마지막으로 "強함"이지만, 이것은 目的達成을 위해 強化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JICE에 對해 말하자면 迅速하고도 效率的으로 이것만의 일을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組織으로서의 強함을 堅持하지 않으면 안됨.

오는 JICE의 20周年을 向해서 이와 같이 보다 크게, 보다 堅固하게, 보다 강한 組織을 目標로 發展시켜 가고자 함.

IV. JICA 와의 業務分擔에도 留意

國際開發 저널 94年 5月號

(日 外務省 國際協力局
技術協力課 首席
高橋禮一郎氏)

[研修事業의 推進에 多大한 功獻]

JICA 研修事業의 實施面을 中心으로 財團法人 "日本國際協力센터"(JIC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는 지금까지 커다란 功獻을 다해 왔음.

研修는 極히 細密한 配慮가 要求되는 協力事業으로서 單純히 資金을 提供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事業은 아니다.

研修生 個個人이 기분 좋게 日本에 滯留하면서 日本의 文化를 接觸하고 친구도 만들면서 무엇보다도 現場에서의 研修를 보다 充實하고 效果的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重要的 포인트가 되는 셈임.

JICE 에 賦課된 最大의 責務는 바로 이러한 點에 있으며, 研修生에 대한 보다 細密한 現場에서 責任을 갖고 行하는 研修監理員의 圓滑한 確保를 爲해 努力함과 同時에 各地로 부터 받아들인 研修機關과의 連絡.調整을 圖謀하는 등 研修事業의 效率的.效果的 實施에 그 機能이 有感없이 發揮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JICA 의 定員은 當然히 어려운 狀況에 있다는 點을 考慮한다면, 지금까지 蓄積한 Know-How가 생겨나서 柔軟한 對應이 可能的한 JICE 의 機能에 한층 期待가 된다.

[擴大되는 JICE 의 業務 範圍]

그런데 日本 ODA 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環境은 急激히 變化하고 있으며, 縱來의 Scheme, 즉 援助形態로서는 對應할 수 없는 課題도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보다彈力的으로活動할 수 있는民間支援機關 JICE가 다할 수 없는役割을 할可能性도 크게擴大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難民 再定住·農村開發 프로젝트"와 "對 러시아 聯邦 技術的 支援計劃"에는機動性이 充分히發揮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캄보디아의 프로젝트는 UNHCR(유엔高等難民 辦務官室)와 外務省이 協議해서歸還難民의 再定住를 目的으로 日本이 UNHCR 에 資金을 提供하여 그 實施面을 JICE가 契約, 受注한 것으로서 日本과 ASEAN의 專門家가 共同으로 技術協力 프로젝트를 實施하는 最初의 試驗臺로서 所謂 "三角協力"으로서 새로운 接近이 實現된 셈이다.

또한 對-러시아 技術支援은 外交的으로 非常한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러시아는 ODA 對象이 되지 않기 때문에 JICA를 통한 技術協力の 形態로는 推進하지 않는 가운데 豊富한 研修 노하우를 갖고 있는 JICE의 存在가 없다면, 圓滑하게 實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試圖은 今後에도 増加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JICE가 活躍해 나갈 分野는 着實하게 擴大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必要한 業務範圍의 整理·整頓]

한편, JICE가 沒頭하는 새로운 事業이 増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능"은 研修生 招請事業에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 研修는 規模的으로도 또는 內容的으로도 多様な 一面을 갖고 있으며 JICE가 活躍하는 餘地와 함께 그 責任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임.

다만, JICE에 研修事業을 委託하는 境遇에 對해서는 無原則하게 進行시키지 않고, 技術協力の 實施 機關으로서 그 自體가 프로集團임에 틀림없는 JICA와 民間財團 法人으로서 多様な 意味로 柔軟한 對應이 可能的한 JICE라고 하는 이런 關係에 立脚해서 業務를 分擔해 가야 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不斷한 改善을 통해, 慎重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側面도 있다고 생각됨.

國際開發 저널 誌 ('94.5월호)

[研修의 地方展開에 積極 對應]

JICE는 今年度(94年) 機能 強化를 爲한 重点事項의 하나로 全國 10個所에 設置되고 있는 地方分室의 機能 強化에 沒頭하고 있음.

말할 것도 없이 94年은 東京, 오오사카, 나고야 등 5個 分室에 對해 權限을 大幅 移讓하는 趨勢에 있음. 그 背景에 對해 알아 보기로 한다.

[地方 移管을 推進하고 있는 JICA 研修 事業]

現在 設置되고 있는 JICE 地方支所는 東京, 八王子, 筑波(農業支所도 併設), 나고야, 오오사카, 兵庫, 九州, 오키나와等 10個所. 지금까지는 각 JICA 國際센터와 JICE 본부를 連絡하는 所謂 連絡事務所 格이었지만, 94年 8月부터 事業實施의 效率化를 圖謀하기 爲해 그 機能을 大幅的으로 強化하여 名稱도 分室로 부터 支所로 改稱했다.

分室 機能을 強化할 必要性的 背景은 JICA 研修事業의 實施가 最近, 數年間 本부로 부터 各 國際센터에 急히 移管되고 있으며, 이에 隨伴하여 業務의 中心的 支援機關인 JICE 의 地方實施 體制, 卽 支所の 強化. 擴大가 必要함.

JICA 研修事業에 對해서는 이미 2,3 年前으로 부터 集團 코스의 全面的인 地方 移轉이 進展되고 있으며, 個別研修의 實施에 關해서도 94年度 부터 順次的으로 國際센터로 移管해 가고 있는 方針을 갖고 있음. 卽, 94年度에는 集團 研修 코스가 304個, 個別 招請實績이 2,500 名임.

分室의 擴大. 強化에 이르러면 優先, 初年度에 東京, 나고야, 오오사카, 큐우슈우, 오키나와 等 5個所에 重點이 주어지고 있으며, 次年度 부터 順次的으로 나머지 5 個所에 對한 機能을 強化해 나갈 方針임. 以下 그 內容에 對해 살펴 보자.

[代表者에 管理職을 配置]

지금까지 全國 10個 分室의 責任者의 一部는 本部로부터 管理職이 配置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主任급이다.

그 때문에 連絡事務所의 인 機能 밖에 發揮할 수 밖에 없었다는 側面이 大端히 強했음. 決濟事項에 對해서도 모두 그때마다 必要한 書類를 本部에 보내 決濟를 받는 本部 主導形態의 일을 해 왔음.

今番 分室機能의 強化에 있어서는 優先 이러한, 連絡業務 및 事務節次의 繁雜性 및 非效率性을 改善하고 더구나, 業務를 監理하고 있는 JICA 에 迅速하게 對應할 수 있는 體制를 整備하는데 最大의 重點이 주어지고 있음.

具體的으로는 責任者(支所長)에 經驗이 豊富한 管理職을 配置하여 本部權限을 支所에 大幅 移讓하여 그 權限을 強化하고 있음.

"바로 責任者는 管理職을 配置하여 權限을 移讓하지 않는다면, 受託先에 對해의 確한 對應 및 豫算의 支出 等 事務處理에 있어서도 的確, 迅速한 判斷, 處理는 어렵게 된다. 優先 94年度에 強化할 對象이 되는 5個支所에 經驗이 豊富한 管理職을 配置하여 各各의 權限, 機能을 向上시켜 간다"고 하는 사람은 JICE 事務局長인 廈本正義 씨이다. 各 支所에 委讓되는 權限은 業務의 實施面 및 出勤簿 管理, 福利, 厚生 關係의 申請 等 總務 關聯事項을 비롯하여 豫算見積 및 請求書 處理 等を 中心으로 한 經理 關係 등의 決濟 權限, 契約 締結後의 支拂 關聯도 一部 移讓되어 가고 있음.

이에 對해서, 契約書 締結等を 中心으로 한 契約行爲에 關해서는 東京本部의 專管範圍가 된다. 豫算 支出은 各 支所가 4 半期에 걸쳐 豫算을 提出하여 本部가 金額面에서의 妥當性을 檢討하여 이에 根據하여 作成된 支出計劃에 따라 支所가 支出하는 形態를 取함. 支所에 配置된 JICA 職員의 陳容을 보면, 東京에 4名, 八王子 2名, 筑波 1名, 나고야 1名, 오오사카 3名, 兵庫 1名, 九洲 3名, 오키나와 3名 等 計 18名임.

오피스는 JICA 國際센터 中에 設置되는 것이 中心이 되어 있지만, 나고야와 오오사카 2個所는 센타 近處에 獨自的으로 事務室을 確保하고 있음. 研修事業의 增大化와 더불어, 各 JICA 國際센터 스페이스도 極히 좁은 實情이어서 앞서의 厦本 事務局長은 센타內의 空間이 滿足스럽지 않다는 見解를 表明함. 早晚間, JICE 로서는 獨自的인 스페이스를 確保해 가는 것이 必要할 것이라고 言及함.

[研修事業의 效果的인 運營에 期待]

그런데, 分室 機能의 大幅的인 強化는 連絡業務. 事務手續 等の 合理化라고 하는 觀點으로 부터는 물론, JICA 研修事業의 效率的. 效果的인 實施라고 하는 點도 期待되는 셈이다. JICE의 研修支援業務는 監理業務, 브리핑. 오리엔테이션, 日本語研修, 旅行 手續業務 等 에 폭넓은 편이다. JICA 와의 契約에 依해, 例를 들면 集團 研修 코스의 경우, 研修生 到着時의 브리핑과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研修終了後 歸國할 때까지 一貫되게 受託하는 것으로부터, 브리핑. 오리엔테이션 및 日本語 研修等 一部の 業務實施를 委託하는 形態로 나뉘어지고 있음.

[所謂 " 請負形態와 一部委託이 混在하고 있음 " (河本 事務局長 說明)]

JICA 와 JICE는 日常的으로 緊密한 連帶를 갖고 있으면서 研修事業을 推進해가고 있지만, 境遇에 따라서는 基本的으로 兩者의 業務區分이 不分明한 채 研修生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指摘도 있음.

" 研修의 基本設計를 JICA 가 만들며, 그에 基礎하여 詳細設計와 實施面을 JICE 가 擔當한다 "고 하는 業務區分이 되고 있음.

따라서, 基本的인 部分이 不分明한 點이 있으면 그 影響은 最後의 순간까지 미치게 된다. 契約段階로 부터 雙方間의 連繫를 密接하게 하여 明確한 方向의 設定하에 事業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고 說明하는 사람은 JICE 研修 監理部의 伊藤勳 部長이다.

研修의 始作 部分부터 보다 合理的인 形態의 事業을 展開해 가기 爲해서는
各 JICA 國際센터와 JICE 支所 및 支部와의 連繫가 不可缺하며, 國際센터의
事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問題는 없는 것인가 하는 點을 各 支所로부터
JICE 本部에 Feed Back 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今番 JICE 分室의 機能強化에 依해, JICE 事業 全體의 分業體制가 改革되어
國際센터의 狀況에 對해서는 支所長에게 들어 보아야 만이 把握이 될 것이고,
問題가 있으면, 可能的 限 支所側의 判斷으로 解消가 可能하다고 말하고 싶다."
河本 事務局長은 期待에 찬 發言을 하고 있음.

그 外, 技術協力の 最前線에 서있는 研修監理員의 選拔에 對해서도 各 支所
에 選拔權이 移讓되는 趨勢에 있으며, 各 國際센터의 特徵을 活潑한 形態의
監理員을 確保하는데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JICE 分室機能의 強化에 따라, JICA 研修事業이 한층 더 充實하게 되며, 效果
적인 運轉이 可能해 질 것이란 點에 對해 期待를 하고 싶은 心情임.

VI.

JICE 現場報告 座談會

國際開發 저널 (94年 5月號)

研修支援으로 부터 國際化 컨설팅 서비스 까지 폭넓은 協力體制의
整備를 향해서

參席者 :

庵原宏義 國際協力事業團 研修事業部長
金子節志 國際協力事業團 總務部 廣報課長
鏡 武 國際協力事業團 企劃部長
中村昌彦 (財) 日本國際協力센타 廣報部長
和田欽次郎 (財) 日本國際協力센타 開發部長
中村俊介 (財) 日本國際協力센타 開發計劃課長
山野杏子 (財) 日本國際協力센타 研修監理部 次長
平野 偉 (財) 日本國際協力센타 國際交流部 次長
荒木光弧 國際開發 저널誌 編輯長 (司會)

"緻密하고 細密한 援助"는 ODA 白書에 있는 重要的 key Word 임.
그러나, 그 때문에 在野에 專門家 集團이 생겨나서 政府로서는 援助
實施 機關을 常時 支援할 必要가 있음.

本 特輯에서의 JICE는 무엇보다도 그것에 該當하는 ODA 支援 專門家
集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座談會에서는 JICE 가 JICA 의 어느 部分을 支援하고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는가가 焦點에 該當한다. (司會者 論評)

["研修監理員"이라고 하는 JICE 의 오리지널리티]

本誌 : 優先, JICA 側으로 부터 JICE 事業의 評價, 期待 및 課題를, 그에 비해 JICE 는 지금까지를 回顧한 뒤에 今後에는 어떠한 事業을 展開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優先 JICE 事業의 거의 1/2 을 차지하고 있는 研修事業의 支援에 關해서 JICA 의 評價를 듣고싶음.

庵原 : 現在 JICE 事業의 7割 程度가 研修生 招請事業과 青年招請事業에 對한 支援임. JICE 는 研修監理業務등 研修의 實際面에서 研修生과 實際的으로 接觸하고 講義의 通譯을 하는등 生活面에 있어서의 支援을 하며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등 日本의 技術과 經驗, 그래서 社會全般을 研修生들에게 알려 주는 일을 하는 등 대단히 重要な 일을 하고 있음. 그래서, 그것을 擔當하고 있는 研修監理員(코디네이터)은 實際로 日本이 技術協力等を 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的 窓口의 하나가 된다.

研修監理員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經驗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今後에는 그 노하우를 JICE 가 組織으로서 蓄積하여 研修監理員 全般에 걸쳐 한층 더 質的인 向上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됨. 예를 들면, 日本의 技術 및 經驗을 講義로서 設明하는 경우, 途上國의 社會 및 技術의 現象으로 부터 研修生이 理解하는가 類推가 可能的인 形態로 通譯해 오고 있는가. 研修監理業務의 어려움 및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꼭 이러한 점에서 向上을 하고 싶다.

山野 : 研修監理員은 現在 登錄人數가 約 1,000名 이며 그 中에서 75 %는 東京 地域에서 일하고 있음.

研修關係者の 業務 範圍가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JICA 의 研修事業에 參加하고 있는 便도 增加해 오고 있음.

JICA 研修 코스에 關해서, 研修의 充足度 및 進展狀況에 關해서 JICA에 報告하는 등 節次를 包含한 JICA 의 業務를 熟知하는 것도 대단히 主要한 業務이다.

研修生은 技術을 배우는 途中, 結果的으로 日本을 理解하게 되는 셈이지만, 우리들은 JICA 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行함과 同時에 研修生과 直接 얼굴을 맞대는 研修監理員과 日本語 講師는 可能的인 限 細密하고 沈着한 業務를 處理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研修監理員 個人이 蓄積해 온 專門性을 今後에는 組織으로서, Back-Up 可能的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努力하고 있음.

庵原 : 實은 지금, JICA 에서는 研修事業의 地方展開와 國際센터에의 業務移讓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음. 今後의 課題로서, JICE 에는 이에 對應할 수 있는 體制의 構築을 目標로 하고 싶다.

山野 : JICA 의 地方展開에 關해서는 JICE 의 支所를 中心으로 研修監理員을 確保하여 育成하고 있음과 더불어 지금까지 JICE와 JICA 가 길러왔던 東京地域의 研修監理員의 經驗 및 노하우를 積極的으로 地方에 移讓해 주고 싶다고 생각함.

[JICA 의 地方展開에 關鍵이 되는 JICE 의 노하우]

鏡 : JICA와 JICE 의 關係에 關係해 考察해 보면, 하나의 생각은 相互間에 補完關係에 있다는 점임.

그 좋은 例가 研修가 아닌가 한다. JICA 로서는 지금, 地方의 事業展開에 重点을 두고 있음. 그것을 進展시키는 가운데 經驗이 日淺한 地方自治團體 등을 JICE가 積極支援해서 地方에 있어서 JICA 의 研修活動을 積極支援하고 있음. 이것은 JICE 에 依한 것이 대단히 크다고 보임.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JICE 가 行하고 있는 業務는 單純한 通譯 및 翻譯의 일이 아니고, 附加價値가 높은 일이라는 것임.

15年 以上の 歷史를 갖고 있으며, 多様な 分野의 技術協力의 研修에 關聯하여 蓄積된 노하우가 커다란 價値를 擧고 있다. 바로 이러한 다른 데서는 찾아 볼 수 없는 特徵을 갖고 있음.

本誌 : 研修監理員은 새로운 Key Concept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JICE 만이 갖고 있는 制度는 JICE 의 存在意識을 確實히 表示하고 있음. 이는 매우 象徵的인 말이다.

庵原 : 그와 같이 더구나,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이 國際交流로 부터 國際協力에로 進一步하고 있는 가운데, JICE 의 活動이 한층 重視되고 있다고 생각함.

요전대, 日本은 섬 나라로서 日本語의 社會이기 때문에 國際化가 進展되고 있기 때문에 外國人과의 接觸은 慣習的인 것은 아니었으며, 當分間 지금 까지 培養해 온 經驗이 생기게 한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 役割을 JICE 가 擔當하면, 地方의 國際化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

鏡 : 저는 地方自治團體가 主催하는 交流를 爲한 檢討委員會에 出席하는 境遇가 많지만, 거기에서 늘 地方에서의 國際協力에 대한 꿈은 커다란 感覺. 그러나, 問題는 그들이 어떻게 實際로 進展시키는가 하는 것이 理解되지 않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熱意와 方法論을 가진 役割을 JICE 가 擔當하고 있다고 생각함.

中村(昌) : 지금의 이야기와 合致하는 것이지만, 昨年, 우리들은 釧路市와 提携해서 이벤트를 했음.

그때, JICE, JICA 支部와 地方이 一體化가 되어 實施함. 地方에 交流의 새싹이 움터고 있는 지금, JICA 의 地方展開와 합쳐서 JICE 가 今後 地方에서 活動하고 있는 中에 研修監理業務만이 아니고, 地方의 國際協力에 關係되는 問題를 經驗이 있는 JICE 事務所가 積極的으로 움직여 나가 寄與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을까 생각함.

本誌 : 그것은 國際交流部の 일입니다..

平野 : 國際交流部는 主로 JICA 의 青年招請事業과 舊 蘇聯邦에 對한 市場經濟化 移行을 爲한 支援事業을 하고 있음.

靑年招請事業은 年間 招請 人員이 1,410名이나 된다. 全體 프로그램中에 地方에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地方의 國際交流團體가 이에 該當한다.

實施段階에 있어서도 地方과의 交流가 있지만, 그들은 研修計劃의 企劃, 運營方法등에 덧붙여서 研修監理員의 役割에 대단한 興味를 갖고 있다고 느껴진다.

또, 舊 蘇聯邦 支援事業은 外務省의 委託을 받아서 1991年에 開始되어 現在까지 311名の 研修生을 받아 들였다.

日本과 全體 社會體制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研修를 잘 받도록 할 것인가 各省·廳의 協力을 받아서 프로그램의 策定에 該當되지만, 이 經驗을 통해서, 大藏省 및 郵政省 主催의 세미나 및 研修事業도 受託하는 것이 可能함.

요컨대, JICA 事業을 통해서 길러진 노하우가 생겨서 그것 以外의 研修事業을 沒頭하는 것이 可能한 셈임.

다른 環境과의 關係로 부터 얻어진 것을 이번에는 JICA 에 Feed Back 시키는 것이 可能할 것으로 생각함.

새로운 事業을 始作할 때, 研修監理員의 經驗과 能力이 그 結果에 크게 反映되었다.

各省·廳의 事業 뿐만 아니라, 地方의 事業도 各 研修監理員에 依해서 높은 水準의 일을 目標로 하는 프로意識이 今後의 JICE 의 새로운 展開에는 不足함이 없을 것이다.

本誌 : 지금, 地方都市의 國際交流에 合致하는 地方展開의 方法으로서는 地方自治團體에의 國際交流 콘설턴트라고 할까 一種의 컨설팅 서비스가 可能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다.

和田 : 昨年(93년), 우리들은 히로시마縣 보다 JICA 에 限定하지 않은 폭 넓은 海外 研修生の 招請에 關한 可能性 調査를 委託받아, 國家機關, 自治團體, 民間에 걸쳐서 JICE 의 노하우를 活用하면서 調査를 했음.

今年 同縣에는 JICA 의 國際센터가 設置될 豫定이지만, 바탕에는 이 調査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山野 : 이것은 廣報部가 推進하고 있는 것이지만, 島根縣의 松江市 로 부터 同時의 國際交流 計劃 作成을 依賴 받은 것을 契機로, " 松江市民을 爲한 國際交流 핸드북 " 과 " 外國人을 爲한 生活 가이드라인 " 을 作成하고 있는 것 以外에 여러가지 國際會議 資料의 翻譯도 依賴받고 있음.

또, 北九州市에서는 市가 主催하는 環境을 中心으로 하는 國際會議場에서의 通譯, 翻譯등을 하고 있음.

이것은 JICA 事業의 實績으로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研修監理員이 評價를 받았기 때문임.

[毎日 弘報時代の 地方展開는]

本誌 : JICA 에 있어서 弘報業務도 全國的으로 展開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國內支部, 國際센터, 그리고 JICA 라고 흐름속에서 戰略的으로 하기 쉬운 것은 없는 것인가 ?

金子 : ODA 에 關한 輿論調査를 보면, "援助의 알맹이가 잘 理解되지 않는다"는 意見이 많다. 援助理解 促進의 觀點에서 봤을 때, 毎日 業務內容을 國民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必要함.

例를 들면, 招請靑年들과의 交流의 모임을 갖는 경우, 恒常 接觸하는 地方自治團體 및 市民團體의 人들을 弘報의 對象으로 삼아 援助에 對한 理解를 깊게 하려는 努力을 하는 것이 重要함.

이를 爲해서도, JICA, JICE라고 하는 範圍를 넘어서 國際協力에 關係되는 한사람 한사람이 弘報의 意識을 갖고 業務에 臨하는 姿勢가 必要함.

本誌 : 地方自治團體 컨설팅 서비스 等에서는 縣의 最上級 부터 末端 까지, 交流事業이 國際協力事業團의 活動中에 理解되어 가는 것이 最大의 弘報라고 생각함.

鏡 : 弘報에 關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政府關係 機關의 弘報豫算은 정말 伸長되지 않고, JICA 弘報豫算도 아주 늘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豫算의 割當도 比較的 彈力的일 수 있는 JICE와 같은 團體에 그 弘報活動의 一翼을 擔當하도록 하고 싶다.

庵原 : 우리들 事業의 하나로 靑年招請事業이 있다. 이것은 中央에 있는 14個의 實施協力團體와 42個 道府縣의 여러가지 團體와 連帶해서 靑年을 招請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參加, 協力해 주는 쪽은 合宿 세미나에 參加하는 日本靑年 및 홈 스테이 家庭 等を 더하면, 每年 1萬名을 超過할 것으로 생각됨.

이것은 國民參加形 協力の 典型的인 것으로서 一種의 弘報와 開發教育의 效果도 있다고 思料됨. 參加한 쪽으로부터 "國際協力 交流가 이렇게 즐겁고 親近한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는 感謝便紙도 매우 많이 받는다. 國際協力 그것을 親近하게 맞보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임.

金子 : 우리들에게 要求되고 있는 것은 現場弘報임. 專門家, 協力隊員의 派遣 및 研修員의 招請等 人力協力を 中心으로 한 事業이 JICA의 特徵이며, 一般國民들에게 親近感을 갖도록 하기 爲해서도 "人"에 視點을 둔 紹介가 必要하다고 생각함.

특히 JICE 職員은 研修監理業務를 통해서, 研修員의 사람됨(爲人)을 가장 잘 아는 立場에 있어서 여러가지 機會를 잡아서 現場의 모습을 傳達해 주고 싶다. 다만, 效果的으로 傳達해 주기 爲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戰略이 必要하게 되어 있지만, ...

中村(昌) : 例를 들면, 靑年招請事業의 地方프로그램을 取及하는 經驗으로 비추어 본다면, 最初에는 外國人과 接觸하는 것이 拒否感이 있음.그것이 2,3 泊의 Home Stay 로 부터 最後에는 눈물의 離別이 된다. 그러한 體驗은 永久的으로 잊혀지지 않는다.地方行事を 하는 途中에 안것은 이로부터 弘報와는 돈을 關係하는 것이 아니고, 地方과의 接點,찬스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重要함.

本誌 : 今後,지금의 實施體制가 繼續해 나가는 가운데 ODA 弘報를 어디에서 擔當할 것인가 하는 話題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그 素材로서는 JICA 의 Human Story 가 有望視되고 있음.
그것을 展開함에 있어서,풀뿌리 外交의 立場으로부터 地方으로부터의 廣闊性 및 Feed Back이 있는 意味로서 必要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됨.

鏡 : JICA 事業의 地方展開에는 2가지 側面이 있음.하나는 JICA 事業의 水準 向上이며,地方의 人材.施設을 活用하여 事業全體의 基盤을 두텁게 함. 또,하나는 지금 이야기와 같이 ODA 에 對한 國民的 支援을 널리 強化해 가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連帶해 가면서 極히 자연스러운 形態로 弘報 戰略을 樹立해 갈 必要가 있다.

[南南協力과 JICE 의 役割]

本誌 : 優先, 지금까지는 研修와 弘報에 關係 들어 봤지만, 그것 以外에 例를 들면, 研修의 Follow-Up 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가 ?

庵原 : JICA 에서는 Follow-Up과 After-Care를 중시 하고 있으며,歸國研修員의 同窓會는 58個國 64個所에서 이미 組織化되고 있다. 同窓會는 JICA의 支援을 받아 活發한 活動을 하고 있음. 歸國 研修員에게는 Follow-Up 으로서 "Kenshu-in" 誌(研修員 發音을 英語로 表記) 및 "Look-Japan" 등 5가지 誌를 各各 分野의 사람들에게 配布하고 있음.

또, Follow-Up 調査團은 各 分野의 集團코스 等에서는 5년에 한번 程度로 나누어서 派遣되어 있음. 講師 및 JICE 의 Staff가 必要에 따라 팀을 構成해서 途上國을 巡廻指導하고 있음. 日本에서 習得한 技術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調査하고, 研修員이 現在 안고 있는 懸案問題에 對해 助言을 해준다. 때로는 세미나도 開催하고 있음.

또, 歸國한 研修員 및 카운트 파트가 JICA 의 第 3國研修 및 第 2國研修에서 講師로서 活躍하고 있는 것도 반가운 消息中の 하나임.

本誌 : 그것은 三角協力이라고 생각되지만, 日本의 技術協力에서 ASEAN 諸國의 人材를 使用할 때는 日本에서 研修를 받은 바 있는 研修員을 登録해 주는 등 可能性은 높다. 이러한 南南協力에서의 JICE 의 役割이란 무엇인가.

鏡 : 歸國研修員의 派遣에 對해서는 이미 第 3國研修에 있어서 日本에서 研修를 받아 專門家가 된 사람을 派遣하는 등 이미 實施하고 있다.

또, JICE 의 役割이지만, 그 典型的인 例는 캄보디아의 三角協力일 것이다. 이것은 ASEAN 의 專門家가 캄보디아의 復興에 協力하는 셈이기 때문에 一種의 南南協力이다. JICE 는 커다란 役割을 다하는 셈이지만 꼭, 海外展開의 큰 프로젝트를 成果裡에 進行시킬 必要가 있다.

本誌 : 그 周邊에 對해 弱干 說明을 듣고 싶다.

和田 : JOCV 10名은 JICA가 直接 關聯하지만, ASEAN 諸國 즉 泰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부터 캄보디아에 10名씩의 專門家を 各各 派遣받고 있다. 그 手續의 Flow는 JICE가 하고 있다.

同時에 三角協力の 施設部門과 豫算의 管理를 事務局으로서 UNHCR 或은 UNDP와 契約, 實施하고 있음. ASEAN 各國에 있어서는 專門家 派遣事業은 처음 經驗하는 것이며, JICE의 Know-How가 도움이 되고 있는 面도 있는 것 같다. 이와 關聯해서 今回의 經驗이 第 3國의 專門家 派遣등 새로운 事業을 살리게 될 것으로 생각함.

中村(俊) : 今後에 JICE가 도움이 되는 데에는 JICE 職員으로서 經驗이 있는 사람이 必要하지만, 아직 우리 開發部가 기껏해야 5年 밖에 經過하지 않았기 때문에 人的資源이 不足하다.

JICE 職員은 專門家이어야만 하는가, Generalist 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問題를 包含해서 우리 自身の 問題이지만, JICA 로 부터의 調査發注가 없으면, 獨自的으로 점점 海外經驗을 쌓아 갈수 없는 現象임. 그래서,今後 젊은 職員이 參加할 수 있는 案件을 JICA 에서 調整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育成에 連結되어 나갈 것으로 思料된다.

[JICE 를 編성한 研修事業의 深化]

本誌 : JICE 의 힘이 모자라진다면, 發注하는 側인 研修事業部는 企劃立案, 政策을 分明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그 成功 與否에 對한 짐작 (斟酌)은 어떠한 것인가.

庵原 : 지금까지 研修事業은 集團코스를 中心으로 國別割當을 해서 研修生을 받아들여 왔음. 그러나, 그것이 國別,分野別로 어떠한 影響(Impact)을 주고 있는가는 測定하기 어렵다.그런데,國別.地域別 Approach 를 重視하여 研修分野 및 研修內容을 吟味하여 어떠한 研修가 그 國家의 發展 및 새로운 Institution Building 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人材育成의 Plan 을 樹立하는 것을 擔當하는 것이 研修事業部の 큰 役割이 됨. 그것에 基礎하여, 集團 코스 및 個別的으로 받아들인 研修 커리큘럼을 委託先 등과 相議해 가면서 國際센터에서 만들며, 그후, 研修監理等の 實施하는 段階에서 JICE 가 關係하는 段階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또한 評價에도 JICE와 研修를 받아들이는 側(研修機關)에서 參加한다. Follow-Up 에도 JICE 研修監理員의 參加를 積極的으로 考慮해 왔다고 생각됨.

平 野 :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한 것은 研修活動의 改良이다.

JICE가 여러가지 經驗을 쌓아 가고 있는 가운데, 5年程度 前이었지만,

JICA 의 研修세미나를 一括해서 하도록 하고 싶다는 申請을 함.

그 때는 國際協力事業 紹介 세미나, 無償資金協力 세미나, 青年海外
協力隊事業 紹介 세미나 등 3 가지를 擔當해 왔지만, 그 經驗을 基礎
로 하여 지금은 30 餘個 코스의 세미나를 開催하고 있음.

Know How 를 蓄積한다는 點에서 大端히 좋다고 생각함.

[期待되는 커리큘럼 開發]

本 誌 : 研修에서 가장 重要的한 것은 移轉하는 側의 커리큘럼 開發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커리큘럼을 開發하는데에는 꽤 費用이 들지만, 日本은 커리큘럼에
關係되는 資金이 적다.

庵 原 : 視聽覺및 教材의 開發은 아직 初步 段階에 있음. 既存의 코스에 關係서는
評價에 立脚하여 커리큘럼 作成에 Feed Back 해가는 메카니즘을 만들고
있다. 이것에는 JICE 의 研修監理員 및 研修機關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機關)도 當然히 參加하고 있다. 今後, 新規 코스의 커리큘럼 開發에도
힘을 기울여 가고 싶다.

平 野 : 커리큘럼 開發에 관한 勉強會 (工夫하는 모임)는 잘 되었음. 研修事業部,
JICE, 國總研에서 周 3回, 各 3時間 程度씩 밤늦게 까지 研究한 記憶이
있음.

和 田 : 別다른 側面이지만, 開發部도 JICA 의 研修事業에 關與하고 있는 部分이
있음. 예를 들면, 오키나와 國際센타는 特色있는 技術研修를 하고 있지만
視聽覺 教育分野 코스의 Leader 와 Instructor 는 한데 모아서 우리들이
派遣하고 있음. 이것은 조금전에 말한 커리큘럼 開發, 指導實施 및 評價를
一貫해서 하고 있는 셈이다.

筑波 農業센타도 協力隊의 OB 를 中心으로 한 海外經驗과 語學力, 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사람들을 實習擔當 Instructor 로서 派遣하고 있음.

커리큘럼 作成부터 最終評價 까지 꽤 徹底하게 計劃에 參與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機能集團이 將來 強化, 擴充되어 分野別로 體系化 되어 간다면 JICA 의 研修事業에 對한 JICE 의 功獻은 보다더 機能的이고 質的으로도 높아지게 될 것임.

山 野 : 現在, 沖繩支所에는 JICE 所屬 7名의 視聽覺 專門家가 JICA 視聽覺研修의 Instructor 로서 配屬되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Know-How 를 組織적으로 教材開發 全體로 더 活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 意識을 갖고 있음.

[地方 國際化의 컨설턴트로서]

庵 原 : JICE 에는 教材開發과 함께 日本語教育에 對한 Know-How 도 있다.

主로 技術界의 사람이 日本에 와서 工夫하는 때에, 現場에서 通할 수 있는 技術用語도 包含해서 實用的이고도 理解하기 쉬운 Text를 作成하고 있음. 이것이 評判이 좋다. 라디오 短波로 利用되고 있는 外에도 韓國語로도 出版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 大學등의 留學生, 研修員의 日本語 공부에도 利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有感이다.

和 田 : 조금 補充 說明하면, JICE 의 日本語 Text 는 1 - 2周 程度의 所謂 Survival 日本語로 부터 日本語 講師를 目標로 하여 外國人을 爲한 700 時間 코스 까지 各 커리큘럼 Text 의 開發이 마무리되고 있음. 또, 比較的 初歩의 日本語 Text 는 英語만이 아니고 各國語 版이 作成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相當히 活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庵 原 : JICA 가 받아들이는 7,000 명의 研修員은 무슨 形態로든지 그 Text를 使用하고 있음. 그것을 그외의 곳에서도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또, JICE 日本語 講師가 來日 豫定인 인도네시아 機能者의 日本語 指導를 위해 팀으로 派遣되어 好評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重要的 實踐이 된다.

山 野 : 交流事業에 關해서는, 예를 들면 北九州市로 부터 美國의 펜실베니아 大學과의 學術交流 學生 및 研究者를 爲한 日本語 講座의 講師가 依頼된 것이 있다. 그러나, 現象은 시스템의으로도 JICA 研修員을 向한 日本語研修에 對應할 수 없다.
다만, 日本語教育의 需要는 높아서 모처럼 길러온 人材와 教材 등 조금씩 Shift (位置의 移動) 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임.

鏡 : 日本語 以外에도 또 하나, 오리엔테이션 및 브리핑도 있음. 青年 招請事業에서 倍加된 日本의 歷史, 社會, 요컨대 日本과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講議할 Soft 도 있다. 日本語, 日本社會의 오리엔테이션, 그로 부터 研修監理業務, 그것은 地域 國際化를 爲한 컨설팅의 Soft 로서 제법 有益한 것은 아닌가.

[地方을 向한 Know-How 의 發信]

本 誌 : 最後에, JICE 의 今後에 關한 課題等에 對해서 들어 보고 싶다

鏡 : JICE 의 3가지 課題를 들 수 있다. 하나는 JICE 의 活動을 JICA 와의 連帶에 限하지 않고, 먼저 이야기한 島根縣과의 關係 등, 多角的으로 프로젝트를 開發해서 組織을 크게 해 가는 것임.
또 하나는 人材開發. JICA 의 研修事業은 지금 JICE 에 의해 維持되고 있는 면이 크지만, JICE 自信이 保有하고 있는 人材의 開發訓練, 이것을 積極的으로 하고 싶다.

3번 제의 課題는 JICA 와의 基本的 關係의 問題이지만, 研修事業. 三角協力等 JICA 事業에 對한 支援業務 中에서 JICA 와의 業務 區分을 어떻게 할 것인가. 例를 들면, 三角協力等이지만 今後 新 豫算으로 JICA 로서도 第 3國의 專門家를 活用할 수 있도록 되며, 그렇게 하면 JICA 에 關係하지 않았던 일도 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음.

그 境遇, JICE 에 어느 部分을 委託할 것인가. 役割分擔. 調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最後이지만, 먼저 海外展開가 可能한 일을 JICA 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JICE 로서도 JICA 側에 對해서 積極적으로 Propose 해야만 한다. JICE에서도 강한 面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思料됨.

金子 : 最近, 國際協力에 對한 參加意慾을 갖고 있는 사람이 增加하고 있지만 情報 不足 및 構造上의 制約 때문에 參加할 機會가 限定되고 있음.

JICA 가 實施할 수 없는 Scheme 을 JICE 가 補完하는 것도 重要하며, 그 役割을 積極적으로 떠맡아 해보고 싶다.

中村(昌) : JICA 가 不可能한 部分을 JICE 가 協力해서 Back-Up 하는 體制는 好評을 얻고 있다. 同 2년간 JICA 와 共同으로 開催해 왔던 泰國 高校生 Essay Contest 도 今回부터는 JICE 主催, JICA 後援 形態로 되고 있음. 各 地方自治團體 等の 協力을 얻어 크게 弘報活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

本誌 : 그것은 一種의 開發教育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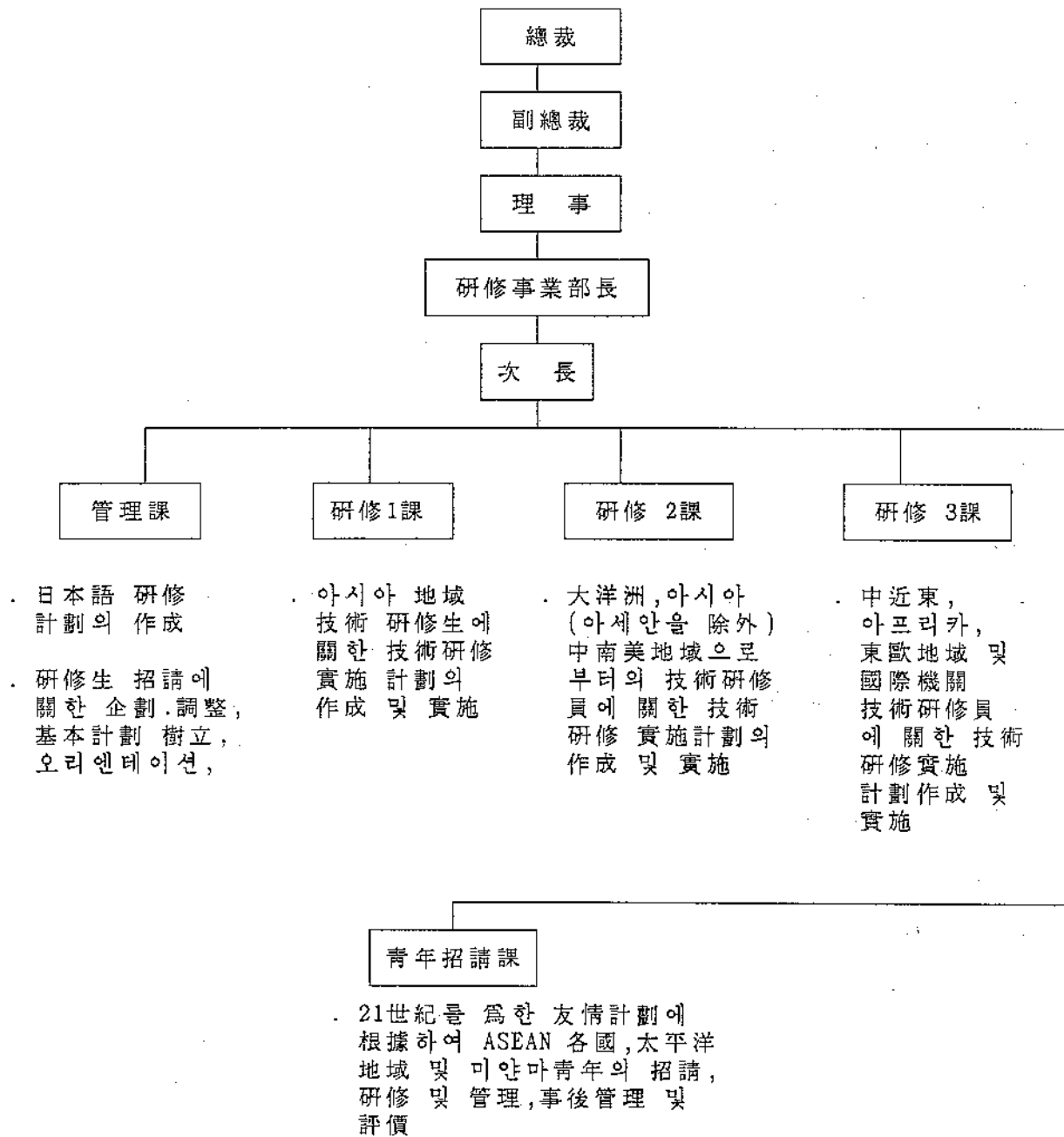
中村(昌) : 實은, 우리들은 昨年부터 開發教育을 事業에 包含시키고 있다.

JICA 支部에 關係되는 先生들도 參加를 하고 있다. 現場에서 指導 方法等を 研究하는 모임 "勉強會" 를 열고 있으며, 昨年は 宮崎市에서 開催, 今年度は 東北地方이 候補에 오르고 있음. 이에 對한 評價도 대단히 좋아서 이를 奇貨로 國內에서 JICE 事業의 核心이 되는 "開發教育을 생각하는 모임" 등을 進行시켜 보고 싶다.

End.

JICA 의 研修 關聯 部署

96.7.1 現在 (國際開發저널 '96.8월호)



JICA 附屬機關

96.7.1 現在 (國際開發저널 '96.8월호)

1. 東京 國際研修 센터
2. 八王子 國際研修센터
3. 大阪 國際센터
4. 名古屋 國際研修센터
5. 筑波 國際센터
6. 神奈川 國際水產研修센터
7. 兵庫 國際센터
8. 九州 國際센터
9. 沖繩 國際센터
10. 北海道 國際센터
11. 中國(쥬코쿠) 國際센터 [96.10.1 설치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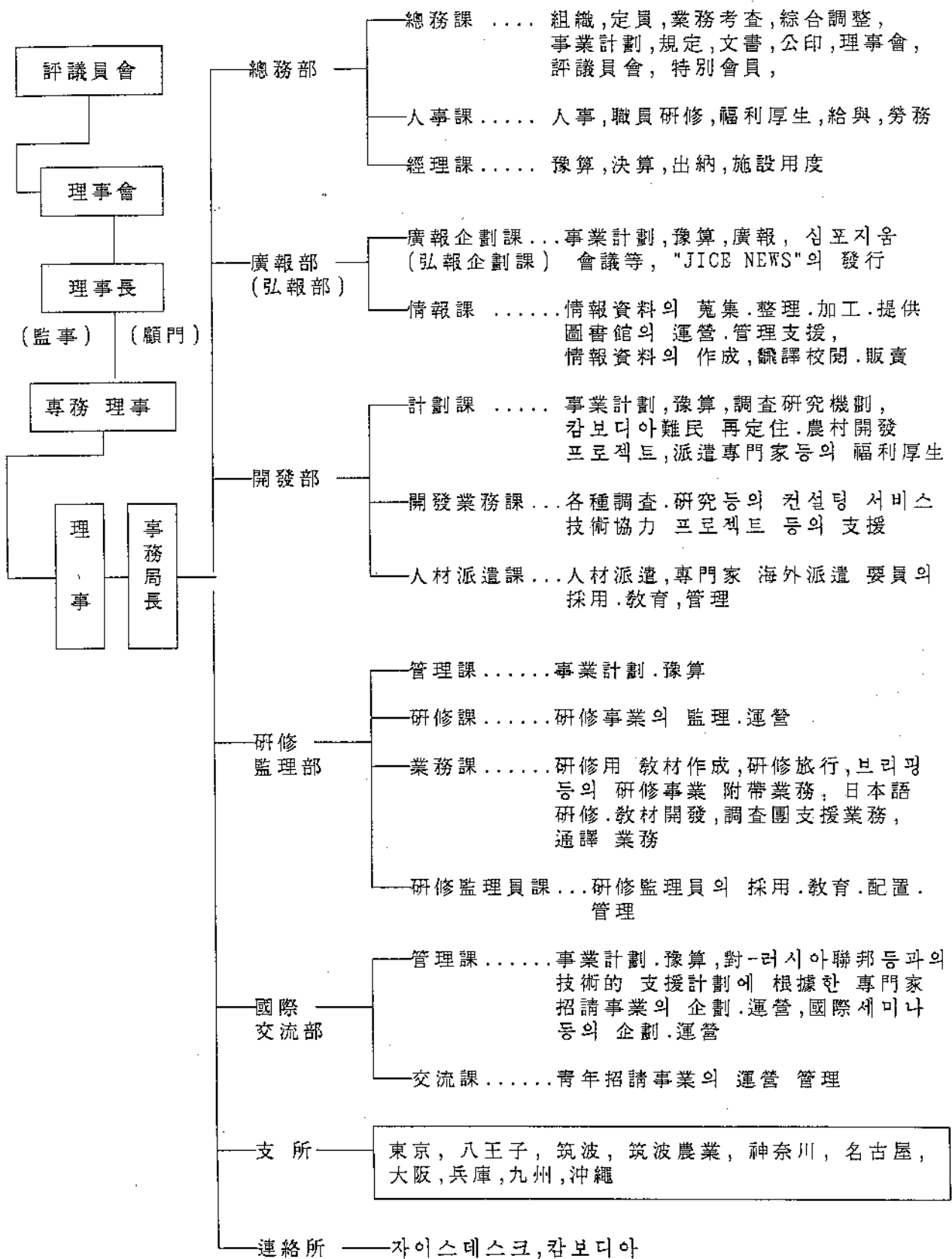
技術 研修生의 宿泊 및
研修에 관한 業務

[北海道, 筑波, 大阪, 中國,
九州, 沖繩의 6개 센터는
JICA 支部業務도 隨行함.]

JICA 國內支部

1. 東北支部
2. 關東支部
3. 東海支部
4. 北陸支部
5. 關西支部('96.10.1부 廢止 豫定)
6. 中國支部('96.10.1부 廢止 豫定)
7. 四國支部
8. 九州支部('96.10.1부 廢止 豫定)

JICA 事業에 關한 地方公共
團體와의 連絡 및 調整,
技術研修員의 研修實施,
海外教育의 推進, 協力隊員
募集, 民間援助 物資 輸送,
國內弘報 등 업무추진.



전 문 가 파 견

진 준 민 부 장

목 차

1. 국제협력과 전문가 파견	74
가. 국제협력의 개요와 필요성	
나. 파견전문가의 역할	
다. 파견전문가 사후관리의 필요성	
2. 전문가 파견 현황	76
가. 개요	
나. 지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라. 평가	
3. 파견전문가의 사후관리실태와 문제점	79
가. 사후관리의 의의	
나. 사후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4. 파견전문가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81
가. 전문가 파견사업의 사후관리	
나. 파견전문가의 사후관리	
5. 결어	87

1. 국제협력과 전문가 파견

가. 국제협력의 개요와 필요성

국제협력은 당초 서구의 민간단체가 기독교적 정신에 기초하여 식민국 또는 빈민 국가의 국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의류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제 2차 대전후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UN,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가 설립되고, 이 기구들은 1950 - 1960년대에 새로 독립한 구 신흥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발원조를 시작하게 되면서였다.

그러나 이 개발원조는 1960년대 초까지 미국과 소련이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세력확대 방안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군사적 원조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그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격차 심화(남북문제), 개도국간의 개발격차(남남협력문제)해소 노력으로 전환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동서간의 냉전종식으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지구의 환경보전, 인구증가 억제 등의 중점방향이 제시되어 이에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1960년까지 미국, UN 등으로 부터 약 30억\$(1961 - 1970 : 17억 7천만\$) 원조를 받았고 1) 1960년대 역시 공공차관 중심의 수원국이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중반대 이후 연수생 초청, 직업훈련사업 및 비동맹권에 대한 외교강화 목적에서 무상원조를 시작한이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 1987년 대외경제 협력기금 조성과 1989년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결성을 계기로 협력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1991년 국제협력사업의 중추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설립 되면서 대외협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정치, 외교적 목적, 경제적 목적에서도 필요하지만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의 국민을 돕는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실현하고 환경개선 및 자원보호에 의한 지구보전 등을 위해 국가간 상호 협력으로 바람직한 인류사회를 유지, 발전

1) 지용기, 한국의 개도국 원조정책, 한국국제협력단, 1993. P 36

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의 무한한 경쟁관계에 접하므로써 경제협력 중심의 외교가 필요함은 물론 GNP규모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위상에 부응하는 원조공여도 요구된다.

다시말해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시장의 다변화, 신시장 개척과 수입 원자재의 주요 공급원 제공수단이 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기아, 빈곤, 환경보전등 범지구차원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한편 과거 국제 사회로부터의 수원에 대해 보답해야할 의무에서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므로 "다함께 잘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KOICA의 모토를 구현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나. 파견전문가의 역할

KOICA의 무상협력 사업은 프로젝트, 기자재공여, 기술협력, NGO 지원사업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2)

전문가 파견사업은 이중 기술협력분야로 이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원대상국이 요청한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하여 현지 관계자들에 대한 지도, 자문 강의, 훈련,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의 기술과 개발경험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당해국의 경제, 사회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여 실질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주체가 파견전문가로서 그 성공 여부는 이에 달려있다 할것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 증가와 사업의 효율성 증대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파견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다. 파견전문가 사후관리의 필요성

프로젝트사업 또는 기자재공여 사업 등 다른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파견사업과 연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3)

2)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과제, 1995, P22

3) " 1994년 한국국제협력단 연보, 1995, P35, P69

그렇다면 전문가 파견사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히 지도, 조언, 교육 등을 통해 수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차원의 협력에서 프로젝트 사업 등 다른사업과 연관된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자연 이 사업은 그 규모나 양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가 확보, 사업실시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지식, 기술, 전수능력, 서비스 정신,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과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볼때 우수한 전문가의 모집도 중요하지만 파견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교양과 현지 적응방법, 수원국의 여건, 사업운영 관리능력 등 다양한 기술과 체험을 가진 귀국 전문가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간접적으로 활용한다면 장래의 파견사업 목적달성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2. 전문가 파견 현황

가. 개요

전문가 파견사업은 1963년에 시작한 연수생초청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협력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긴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67년 이디오피아 도시계획 전문가 파견사업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구체적인 실적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67 - 1981년 까지는 연평균 6.5명, 1982 -1990년은 41.7명이고 KOICA 설립 이후인 1991 - 1995년은 56.6명으로 증가하고 있고(표 1참조) 특히 1996년도에는 전년 77명 대비 39.0%가 증가된 107명의 파견을 계획하고있어 4) 동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예산면에서는 1995년 기준 KOICA의 총예산이 37,959백만원으로 관리부분 등을 제외하면 협력사업비가 28,269백만원인데 이중 전문가 파견사업비는 964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3.4%에 불과하나 5) 일본 JICA의 경우는 1990년 기준 총예산 133,113백만엔중 협력사업비가 114,196백만엔이고 이중 전문가 파견사업비는 11.9%에 해당

4) 한국국제협력단, 1996년도 협력사업계획, 1996, P7

5) " 1995년도 KOICA 협력실적통계 1996, P2

되는 15,860백만엔에 이르러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나. 지역별 현황

지역별 파견 실적은 1967 - 1995년까지 누계 756명이고 이중 46.3%인 350명이 아시아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중남미 지역에 23.4%, 아프리카 지역에 15.7%가 파견되어 아시아 지역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

한편 지역별 변동추이를 보면 1991년 이후에도 아시아, 중남미지역 집중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15.7%보다는 낮은 8.8%로 크게 줄었고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전에는 전혀 파견이 없었던 동구권이 15.9%, 국제기구 파견 등(표 1의 기타란)이 6.7%를 차지하여 각각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참조)

지역별 파견실적

<표 1>

(단위:명, %)

지역 \ 연도	계	'67 - '81	'82 - '90	'91 - '95
계 (연평균)	756 (100.0)	98 (6.5)	375 (41.7)	283 (56.6)
아시아	350 (46.3)	36	205	109 (38.5)
아프리카	119 (15.7)	38	56	25 (88)
중남미	177 (23.4)	17	102	58 (20.5)
동 구	45 (6.0)	-	-	45 (15.9)
중 동	39 (5.2)	7	5	27 (9.5)
기 타	26 (3.4)	-	7	19 (6.7)

자료: ① 지용기, 앞의책 P84

②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연보, (1993 - 1995)

6) 한국국제협력단, 일본전문가 파견사업소개, 1991

다.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동기간 누계 756명중 농림수산업 분야가 전체의 41.8%인 316명이 파견되었으며 과학, 교육훈련, 행정 등 분야에 33.3%, 광공업 분야에 17.4% 등으로 농림수산업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1년 이후에는 농림수산업 및 광공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과학, 교육훈련, 행정분야가 전기간 배포율 33.3%에서 44.5%로 크게 높아졌다. <표 2참조>

분야별 파견실적

<표 2>

(단위 : 명, %)

분야 \ 연도	계	'67 - '81	'82 - '90	'91 - '95
계	756 (100.0)	98	375	283 (100.0)
광공업	131 (17.4)	28	74	29 (10.3)
농림수산	316 (41.8)	58	162	96 (33.9)
과학, 교육 훈련, 행정	252 (33.3)	4	122	126 (44.5)
보건사회	25 (3.3)	4	2	19 (6.7)
기 타	32 (4.2)	4	15	13 (4.6)

자 료 : ① 지용기, 앞의책 p85
② 한국국제협력단, 앞의 연보

※ 주 : 1994년 이후 통계는 OECD(DAC)기준에 의거 분류되어 있어 동 기간의 상기 분류는 보고자가 적의 구분하여 작성했음.

라. 평가

KOICA가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전문가 파견사업은 수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에 기여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하였고 한편, 국제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평가된다.

파견사업 실적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매년 상당히 증가하여왔고 지역별로는 동구권

에 확대, 분야별로는 과학, 교육훈련, 행정분야에 중대로보다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문가 파견사업과 프로젝트, 기자재공여 사업과의 연계미흡, 파견사업의 사후관리 및 파견 경력자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3. 파견 전문가의 사후관리 실태와 문제점

가. 사후관리의 의의

하나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는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사업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업완료시는 반드시 효과분석을 통한 목적 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개발원조나 기술협력 사업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성을 지녀야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수있다.

전문가 파견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와 후속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 차원에서의 파견전문가 사후관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업자체의 평가와 사후관리는 사업실시 결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당초 사업의 목표를 얼마나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효과발생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조치 등 사후조치를 하는것을 의미하고, 파견 전문가의 사후관리는 전문가 파견사업에 참여하였던 귀국전문가 즉, 현지에서 체험한 경험과 지식, 기술을 익힌 전문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것으로 정의해본다. 전문가 파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해 전문가의 신규발굴 또는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하는 방법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예산 및 시간등의 여건상 한계가 있어 실제 산 지식을 가진 귀국 전문가를 필요시 재활용한다면 경비 및 시간의 절약은 물론 사업의 효과적 수행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나. 사후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사업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경우 그 방향과 기준 즉 목표의 명확한 규정과 평가요소 설정, 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어렵고 투입에 대한 산출의 양이 계량화 되지않을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척도는 보는 각도에 따라 효과성, 능률성, 영향성, 지속 발전성, 직·간접 효과성, 비용 수익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수 있겠지만 당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평가지표 또는 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할것이고 평가 기준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실시 시기도 계획단계(목표의 명확화, 실행가능성, 예상효과), 집행단계(수행조직, 집행단계별 점검, 여건변화에 따른 목표조정), 평가단계(목표 달성도, 비용수익 분석 등) 별로 지속적으로 행하고 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는 물론 사후관리도 수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KOICA도 매년 "한국국제협력단 연보"발간, "국제협력 정책방향 대토론회" 및 "각종 전문가 초청 평가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별 평가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고 또한 선진국의 원조동향 및 개도국 지역정보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월 정기적으로 "국제협력 정보지"를 발간하여 협력사업의 발전적 수행에 기여하게 하고있다. 특히 전문가 파견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매년 "해외전문가 파견 귀국 보고서"를 발간하여 파견 후보자 및 협력사업 관련기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귀국 전문가에 대한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파견활동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하며 귀국전문가의 지식, 체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분야별, 지역별로 정리하여 정보교환을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제협력 사업수행의 중추기관인 KOICA발족이 1991년으로 역사가 일천하고 또한 협력예산의 규모가 적어 아직은 프로젝트 사업 등 개발협력과 기술협력 등 제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사업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각 사업에 대한 완전한 평가제 도입과 실시 분야별 사업간의 연계, 완료사업의 지속적 관리, 파견사업의 지속적 협력과 파견기간의 적정화, 귀국 전문가의 일상적 활용 등 개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 깊은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본 보고서 제 4장 "개선방안" 항목 파견전문가의 실제의견(사례)에서 그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4. 파견 전문가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견전문가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 자체에 대한 것과 인력 관리 차원에서의 전문가 사후관리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사업효과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 파견사업에 있어서도 예외 일수는 없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견 사업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① 철저한 사후평가 실시 ② 다른 원조사업과의 연계 ③ 지속적 협력과 파견기간의 적정화 ④ 사후관리 체계의 확립등이 고려될수 있고, 전문가 사후관리 방안은 ① 귀국전문가 양성차원에서의 관리 ② 전문가와 정보의 집중관리 ③ 일상적, 정기적 정보 교환과 활용 등을 들수 있겠다.

가. 전문가 파견사업의 사후관리

첫째, 철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 실시함이 요구된다. 전문가 파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적의 사업계획과 적절하고 합목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정확히 평가, 분석하고 효과발생에 대한 저해요인을 해소시키는 등 사후관리 측면도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에도 이러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요소, 평가 기준, 평가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 객관화하여 일관된 계획하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즉 어떠한 단위사업을 입안할때 미리 평가 계획서도 같이 만들어 예상실적 및 효과 대비 실제결과 및 지속효과를 비교평가 할수있도록 한다면 바람직한 사후관리의 이행도 보장될수 있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이하에서의 사례는 "해외파견 전문가 귀국보고서"에서 파견 전문가가 파견사업의 문제점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시사점을 찾고자 이를 인용한다.

(사례 1은 당초 계획이 미흡한 경우로 사후평가나 관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사안임)

사 례 1

- 수원국의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부족과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 수산자원 연구시설 및 기기 등이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어 계속협력의 지속여부는 당분간 고려되어야 한다. ('92년 보고서 208쪽)
- 현지 관계자들의 언어소통 능력이 없기때문에 통역이 필요했는데 통역관이 이 분야에 전혀 능력이 없는 관계로 교육성과가 저조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92년 보고서 330쪽)
- 무상 원조품인 컴퓨터가 창고에서 낡잠을 자거나 못쓰게 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93년 보고서 303쪽)

둘째, 다른 원조사업과의 연계이다. 사업의 평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들어간 투입과 산출의 비율, 즉 생산성이 기준이 된다. 만약 투입량이 정해져 있다면 산출량을 크게해야 생산성이 높게된다. 국제협력 사업과 같이 사업분야별(예:기자재공여, 프로젝트, 전문가 파견사업 등), 목적사업별(예:수력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협력사업 등), 지역별(예:아시아, 동구권 지역 또는 국가별) 등 사업이 다양할경우, 각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야 효과(생산성)를 높일수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업분야간 어떻게 연계시켜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하느냐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문가 파견시 기자재공여 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프로젝트사업 연수생 초청사업 등에도 연계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 사전예측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각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고 특히 전문가 파견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완료된 전문가 파견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례 2는 원조사업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사안임)

사 례 2

- 석탄개발 및 활용가능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기자재(시추장비, 부속품, 석탄, 성형기 등)의 무상공여 필요성과 연계하여 사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92년 보고서 269쪽)
- 선진국들이 현지관리들을 초청하여 교육시켜 왔지만 효과가 없자, 직접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일을 시키면서 가르치고 있었다. ('93년 보고서 303쪽)
- 전문가의 지속적 파견과 아울러 청년 봉사단원을 원조시설의 운용에 투입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3년 보고서 18쪽)
- 전문가 파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하여 기업인 중심의 교류가 수반되어야 한다. ('92년 보고서 382쪽)

셋째, 지속적 협력과 파견 기간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하나의 파견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시키는데는 파견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협력환경의 변화, 예산상의 여건, 파견된자의 사정 등 제한이 따르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전문가 파견사업이 일회적이고 단기('95년도 총 77명중 5주 이내가 49명임 7))적 이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원국의 요청 등 당초의 협력환경에 변동이 없고 여건이 허용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간도 적정히 늘림으로서 보다 충분한 사후관리도 가능하여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기성, 소규모 사업은 연수생 초청사업으로 대체하고 파견사업은 장기성, 집단적 사업에 중점을 두는것도 바람직 하겠다.
(사례 3은 파견사업의 지속성과 기간의 적정화를 바라는 사안임)

7) '95 KOICA 협력실적 통계(1996.4)에서 보고자가 집계한 수치임

사 례 3

- 기후대가 다양한 『미얀마』의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1년 정도의 분야별 전문가 파견기간 확보를 기대한다.

('92년 보고서 77쪽)

- 누에사육 전문가 파견사업은 년3월씩 3년간 계속적인 기술지도가 요망된다

('92년 보고서 160쪽)

- 현재의 지역적, 단기적 자문.지도 방법으로는 협력 활동등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바,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협력(기술.경영.유통 등)에 임해야 할것이다.

('93년 보고서 282쪽)

- 전문가 파견계획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일회적인 아닌 연속성을 갖고 추진 되어야 한다.

('93년 보고서 282쪽)

넷째 사후관리 체제의 확립이다.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문제는 전문가파견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원조, 기자재 공여사업 등 협력사업 전반에 걸쳐 관련된 사안이므로 그 중요성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바, 이에 관한 확고한 체제가 구축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담당 부서의 자체 평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만들고, 명확한 임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할것이다. 담당조직은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담 기구를 두고 전문위원회나 평가팀을 구성, 운영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우리는 예산규모 등으로 보아 적절한 대안일 수 없고 현 시점에서는 이미 설치 되어있는 감사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담당 업무로서 사업 평가기준 및 방법설정, 「단위 사업별 평가 및 분야별 종합평가,」 「사업 시행과정 또는 사업완료후 나타난 문제점 발굴 및 시정조치와 「개선방안 마련등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을것이다. 물론, 앞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TASK FORCE TEAM 을 구성,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나. 파견 전문가의 사후관리

첫째 귀국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관리이다.

전문가 파견 사업은 특정 협력 대상국에 대하여 전문지식, 기술 및 우리의 경험을 사람을 통해 전수해주는 협력수단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는 바로 파견 전문가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전문가의 신규모집, 양성도 필요 하지만 경험있는 귀국 전문가를 양성 차원에서 육성하는 사후관리¹⁾는 그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는 전문기술능력, 기술이전능력(사업관리, 지도수법, 어학 등) 일반교양, 현지의 적응능력,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등을 들수있는바, 귀국 전문가에 대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능력별로 구분,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다 우수한 기술과 자질을 갖도록 육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사례 4는 파견전문가의 양성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안임)

사 례 4

-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에서 특정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의 계속적 활용이 요망되며 무경험자들이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 협력국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파견국의 이미지만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92년 보고서 427쪽)
- 분야별 연구 기능이 강화되어야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파견 대상자인 전문가 사전교육, 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가 완성될수 있다. ('93년 보고서 304쪽)
- 동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반복 파견되어 우리 전문가가 지역 전문가로 양성될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 ('93년 보고서 353쪽)

둘째, 전문가와 정보의 집중 관리이다.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전문가 파견사업은 협력의 주체가 사람이므로 협력활동에 직접 종사할 사람은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으로 원조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요소가 된다. 그리고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과 역사, 인종, 언어, 문명의 발달정도 등 그나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하는것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있다. 협력전문 인력과 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 KOICA도 다양 채널과 방법을 통해 우수 전문가를 등록받아 풀제로 운영하고 지역정보 역시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해 수집 관리하고 있으나, 수집된 정보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못한결과 효율적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까지에는 활용이 미흡하고 인력관리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8)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에 있어 지역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예:주요자료 컴퓨터에 입력 등) 제공하도록 하고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귀국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공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한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여 필요시 활용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것이다. 특히 지역전문가 양성이 건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특정지역에 특정한 (예;귀국전문가, 현지교포 등)을 지정, 예산을 지원하여 완벽한 전문가가 되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사례 5는 지역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강조하는 사안임)

사 례 5

- 파견국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전혀없어 당황하였고, 현지에 도착하여 현지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었다. ('93년 보고서 89쪽)
- 해외농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권역별, 국가별, 분야별로 정리되어 국가경영이나 각종 해외 정책에 입안, 민간부문의 투자진단이나 시장개척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93년 보고서 96쪽)
- 출발전 파견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좀더 조직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파견목적 달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93년 보고서 599쪽)

8) 조동성, 21세기를 향한 대개도국 국제협력 정책방향, 1996. P23 - P24

셋째, 일상적, 정기적 정보교환 및 활용이다.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이든 상호간 정보 교환에 관심이 적어지면 발전되지 못하고 퇴화되어 갈 것이다. 귀국 파견자는 본인이 담당했던 당해사업의 효과, 수원국의 호응도, 지속적 지원여부, 사후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적 위치에 있다 할수 있으므로 당해분야 및 유사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업무에 일상적, 정기적으로 참여(예;자문)시켜 그들의 지식과 체험을 활용한다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수 있어 사후관리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것이다.

한편 사업분야별 또는 지역별 그룹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발전적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개선에 반영함도 반드시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결 어

지금까지 전문가 파견사업과 파견전문가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가 파견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수단 제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사회주의권 국가, 저개발, 다자원 국가를 주 대상으로 성장, 발전을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파견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인적관계 형성을 통해 국내기업 진출 및 교역증대(시장개척, 원자재 확보 등)거점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전문가 파견사업의 확대, 발전화는 국익적, 인도적 차원에서의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문가 파견사업에 대한 보다 깊은 조사 연구와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봉 사 단 파 견

김 병 관 과 장

목 차

1. 사업확대 방안	90
가. 사업확대의 조건	
나. 추진방향	
다. 사업확대 계획(안)	
2. 세부사업 운영체계 개선과제	94
가. 사업목표 및 철학의 정립	
나. 조직운영	
다. 인원선발	
라. 훈 련	
마. 인원관리	
바. 의료 지원체계 및 신변안전	
사. 활동 지원	
아. 신규 파견국 결정	
자. 기 타	

1. 사업확대방안

가. 사업확대의 조건

1) 사업 운영능력 향상

-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
- 전담직원 확충 및 조직 확대
- 사업운영 지침 및 규정의 지속적인 보완과 정형화
- 사업 편람의 보완 및 간행을 통한 사업운영의 안정화 도모

2) 조직체계 개편

- 사업 전담조직으로의 확대 개편(독립성 강화)
- 지역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단위 관리 및 활동 지원(봉사단 전담직원 상시 배치)
- 사업량 확대에 대비한 조직의 적절한 기능 분화
- 단위 신변안전 및 보건 지원체계 보강

3) 파견전 조사 및 준비 철저

- 신규파견국 선정 원칙 설정
- 파견대상국(후보국가군) 설정
- 파견대상국 사전 조사 및 파견준비(파견협정 체결, 파견분야 및 인원 협의, 파견기관 및 지역 결정 등) 후 파견
- 파견국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및 파견국 선정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연구 병행
- 지역사무소 또는 봉사단 관리사무소 사전 설치(전담직원 파견)

4) 우수인력 확보 방안 및 파견분야 선정원칙 정립

- 파견확대에 부응한 우수인력 확보 방안 모색
- 국내 협력기관 및 협력기업 확보
- 파견분야의 특화와 더불어 단위 접수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 파견 추진
- 각국별 특성에 맞는 파견분야 선정

5) 사업 평가체계 정립

- 각국별, 분야별, 지역별로 단위활동의 효과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체계의 수립
- 이들 평가 결과를 사업확대 또는 보완(신규 파견, 인원증감, 분야결정 등) 등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각 단위별 활동평가를 통한 활동지도와 지원

6) 귀국자 종합관리 체계 정립

- 귀국자의 활동내용 기록 및 평가, 취업, 국내 체류상황 등 제반 사항의 종합 관리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 귀국단원 활동지역, 활동분야, 활동성과 등의 평가를 통한 후속단원 파견의 안정화
 - 귀국후 취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단위활동 분위기 조성 및 우수자원 확보
 - 귀국단원 중 재파견 가능자 및 사업 홍보요원 확보 등
- 현직파견 제도 운영에 동참하는 기업의 확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휴직파견제도 정립
- 단위별 관리기록부 유지(전산화 추진)

나. 추진방향

1) 사업운영능력에 적합한 사업 확대

- 사업예산, 관리인원, 사전조사와 준비 등 사항의 점검을 결여한 급격하고 무원칙한 신규 파견국 및 파견인원 확대 제한
- 상기 사항을 고려한 장기적인 신규 파견국 및 파견인원 증가율 목표치 설정
- 국별 적정 파견인원 유지

2) 사전조사 및 파견준비 선행

- 파견대상국(후보국가군) 사전 선정
- 파견국 선정의 예측 가능성 및 규칙성 부여
- 최소한 파견 1년 전 부터 사전조사와 준비 진행

3) 파견 대상지역 다변화

-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파견 점차 확대
-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으로 활동지 확대

4) 단원 활동지원 체계 강화

- 활동지원물품 지원 원칙 확립 및 지원규모의 점차적 확대
-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원칙 및 절차 재정립, 지원규모 확대, 사후 평가 철저
- 단원 활동상담 체계 정립 및 강화

5) 단원 신변안전 및 의료, 보건 지원체계 강화

- 단원 안전과 보건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 수립
- 고문 의사 도입 확대
- 긴급 후송체계 재정립
- 활동단원 통신체계 재정립
- 정기 건강검진 내실화

다. 사업확대 계획안

1) 확대원칙

- 1개국당 활동인원을 15 - 20명 선으로 유지
 - 단원활동 지원 및 관리상의 효율성 고려
 - 20명 초과시는 매 10명당 현지관리직원 1명 추가 배치
- 총 파견인원의 증가율은 향후 5년간 매년 20% 내외로 유지
 - 예산 증가율 및 관리직원 고려
 - 활동단원 증가에 따른 관리 및 지원능력 고려

- 신규 파견국은 총 파견인원 증가 및 1국가당 평균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증가
 - 신규 파견국의 최초 파견인원은 관리능력 및 경험 축적을 위해 기본 활동인원을 5명으로 하여 8명 이내로 유지

2) 파견국 및 파견인원 확대안(국제협력봉사요원 제외)

○ 기본 파견 추이 분석('90 - '96 간)

구분	년도	'90	'91	'92	'93	'94	'95	'96
파견자 (활동인원 기준)		44	81	133	144	173	188	226
증가율 (%)			84.1	64.2	8.3	20.1	8.7	20.2
파견국수		4	7	8	9	11	15	22
신규 파견국수			3	1	1	2	4	7
증가율 (%)			75	14.3	12.5	22.2	36.4	46.7
1국가당 평균 활동인원		11	11.6	16.6	16	15.7	12.5	10.3

○ 향후 확대안

구분	년도	'97	'98	'99	2000	2001
파견자 (활동인원 기준)		270	325	390	470	565
증가율(%)		19.5	20.4	20	20.5	20.2
파견국수		22	23	25	27	30
신규파견국		0	1	2	2	3
증가율(%)		0	4.5	8.7	8	11.1
1국가당 평균 활동인원		12.3	14.1	15.6	17.4	18.8

2. 세부 사업 운영체계 개선과제

가. 사업 목표 및 철학의 정립

1) 현재의 문제점

- 뚜렷한 사업 목표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방향성 혼란
 - 정신적 유대의 강화인지, 실제적인 유무형의 지원(원조) 인지에 대한 목표 혼재
 - 인류애의 실천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추구인지, 국가이익과 경제적 실리 추구하고 같은 현실적 가치의 추구인지에 대한 혼란
 -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의 정착과정이 생략된 채 단기적이고 대외 과시적인 사업운영
- 사업의 철학과 논리의 미정립으로 인한 사업주체들의 가치관 혼란
 - 사업의 순수성에 대한 확신 결여로 희생정신 퇴색
 - 단원 활동의 지원 및 지도에 있어서의 원칙 혼선
 - 사업의 철학 미정립에 기인한 대외적 명분 불분명
 - 사업전반의 운영 원칙 혼선

2) 개선방안

- 명목화된 사업목표의 현실적인 재정립과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적용
 - 재정립된 사업목표에 따라 단원 파견분야 및 국가, 활동지원 내용, 사업명칭, 관련 규정, 홍보 등 재검토
- 장기적 사업목표와 계획의 수립 및 실질적인 수행
 - 조속한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수립된 계획의 실행에 충실하여 사업의 안정화와 예측 가능성 제고

○ 사업의 철학에 대한 심화연구의 수행과 정립

- 내부 작업이 어려울 경우는 외부 용역이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한국 고유의 봉사사업 철학과 모형 정립
- 단원 교육이나 대외홍보, 사업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

나. 조직운영

1) 사업 담당조직 및 인력현황

년도 구분	'91	'92	'93	'94	'95	'96
인 원	8	12	14	10	7	11
조 직	1개과	1개과	2개과	2개과	1개과	1개과

*담당인원은 과장이하 기능직 직원까지 전직원을 포함함.

*'95-'96 1/4분기의 기간은 봉사사업국 봉사사업과가 단원 선발 및 훈련, 귀국자 사후관리 등만 담당하고, 여타 단원관리와 지원은 각 지역과에서 각국별로 분산하여 담당

*년도별 담당직원 인원은 중요한 조직개편 또는 보직 변경후 최대 숫자를 기준으로 함.

- 상기 표와 같이 파견국 및 파견인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94년 이후에는 사업 담당조직, 담당직원, 관할업무 등에서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보임.
- 직원 1인당 단원수도 '91년 10명, '92년 11명, '93년 10명 등으로 비교적 무리가 없었던데 반해, '94년에는 17명, '95년 27명, '96년 21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되어 효과적인 단원관리와 활동지원에 무리가 있음.
- 조직의 구조에 있어서도 단원선발, 훈련, 활동관리, 활동지원, 사후관리, 사업기획 등 업무분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 복합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발전과 업무개선,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업무수행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조직 개편의 방향

-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기능분화 도모
- 담당인력의 확충, 또는 단원관리 및 지원업무의 대폭적인 지역사무소로의 이양
- 여타 협력사업과는 성격이 상이한 사업형태임을 감안, 점차적으로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형태 및 기능 조정(장기적으로는 외부 민간단체에 사업자체를 이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다. 단원선발

1)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점

- 선발시기
 - 정례적인 선발시기가 없이 매년 선발시기가 변동되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나 단원 희망자를 위한 홍보, 적절한 파견시기 선택등 전반적인 사업수행에 애로 발생
 - 파견국별로 적절한 파견시기(또는 희망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가 곤란
- 선발절차
 - 규정상 정해진 선발절차가 생략되거나 순서의 변경이 잦아 선발시 마다 혼선 초래
 - 선발일정의 합리적인 배분이 미흡하여 무리한 선발의 위험 상존
 - 지원자의 잦은 소집과 장기간의 선발 소요 기간으로 지원자의 중도 포기 또는 과도한 개인적 희생을 초래
- 선발기준
 - 각 단계별 선발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매년 다른 기준이 적용됨.
 - 영어시험(필기 및 구술)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모든 분야 지원자에게 일관되게 큰 비중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나, 실제로 필요한 우수자원 탈락의 빌미가 되고 있음.
 - 면접시 기술면접 보다 일반면접의 비중이 더 큰 경향이 있으나,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는 바, 양 면접의 균형된 비중이 필요

○ 지원자 관리

- 상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지원자가 적고, 지원자 관리도 미흡
- 년 1회 선발 및 파견이라는 형식이 유지되는 한 상시 지원자의 장기 대기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지원자의 중도포기가 예상됨.
- 선발 탈락자 관리가 안되고 있어 잠재적인 파견자원이자 사업 홍보요원인 이들이 사장되고 있음.

2) 개선방안

- 파견인원 증가에 따른 연간 선발 횟수 증가(년 2-3회)
- 접수국측 사정에 따른 선발자의 수시 파견제 도입
- 전문적 연구에 의한 선발과정 및 기준 재검토와 규정화
- 파견분야 및 파견국에 따라 영어시험의 선택적 실시
- 모든 지원자의 자료 전산관리
- 각 선발단계의 소요시간을 고려한 적정 선발기간 설정
- 수시 사업홍보 방안 모색

라. 훈 련

1)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점

○ 국내훈련

- 전용 훈련시설의 미확보. 훈련장소나 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조속한 확보로 안정적인 훈련 운영이 시급
-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중 인원관리나 상담 등 단위 최종 선발과정으로서의 기능이 무시되고 단순한 훈련 운영만이 파견직원에게 의해 담당되고 있음.
- 또한 봉사자로서의 심성개발과 현지사정에 대한 정보, 기타 활동지도 등이 취약하고,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이 외부강사에 의한 정신교육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음.
- 규범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없이 매년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 잦아 훈련의 일관성과 효용성이 의문시됨.

○ 현지훈련

- 훈련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원들의 훈련을 현지어 교육기관에 위탁해 버리거나, 현지인 강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자칫 세심한 지도와 관찰이 필요한 단원들을 방치할 위험이 있음.
- 각국별로 전용 훈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를 알아 매년 훈련장소가 훈련의 목적보다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규범이 없고, 면밀한 준비도 없어 매년 현지어 교육 중심으로 단순히 유지되고 있음.
- 현지어 습득 및 조기 현지정착을 위해 현지훈련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훈련일정이 강의실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국내에서 훈련을 받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형편임.
- 훈련경비와 단원 숙식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각국별로 편차가 크고, 자칫 봉사활동의 본질 자체가 오도될 가능성까지 있음.

2) 개선방안

- 국내훈련 시설 장기 임차 및 자체 연수시설 조기 확보
- 훈련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자체 강사 포함)
- 국내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 현지훈련 운영 표준화(경비 및 프로그램 포함)
- 현지훈련 전담직원 양성 및 현지훈련시 파견
- 자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 각국별 현지어 교재 제작 및 각국 소개자료 개편(현지 실제 생활 및 활동위주)
- 각국별 현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작

마. 단원관리

1) 현 실태

- 단원관리를 각 지역사무소와 본부가 분담하고 있음.
 - 지역사무소의 단원관리 담당들의 사전교육이나 지침이 미흡하여 단원과의 갈등, 상호 불신, 관리미숙 등 표출
 - 단원을 신규로 파견하면서도 사전에 관리요원을 파견하지 않거나 관리요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단원관리와 활동지도, 제반 사고시 조치 등에 문제성을 내포
- 본부의 단원관리 방식도 정밀하고 체계적인 정리가 없이 지역사무소의 보고에 의존하여 단순히 단원들의 근태만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전반적으로 단원관리의 개념, 지침, 방법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단원관리 부재

2) 개선방안

- 단원관리 지침(단원관리의 개념, 방법, 규정해설 등 포함)의 작성 및 지역사무소 파견자를 포함한 전 담당직원 교육
- 전담관리요원의 상주(지역사무소가 미설치 지역도 파견)
- 적어도 단원파견 1개월 전에 전담관리요원 파견(단원 접수준비, 현지훈련 준비, 활동기관 점검 등 사전 조치)
- 단원관리 및 지도의 실질적 권한은 지역사무소로 대폭 이양하여 단원관리의 효율성과 현장성 제고
- 단원 회합, 휴식, 유숙, 정보교환, 자료수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호스텔의 설치와 기능 및 시설 강화

바. 의료지원체계 및 신변안전

1) 현 실태

- 전 활동단원은 '해외근로자 재해 보상보험' 및 긴급지원 서비스(AEA)에 가입
- 그러나 현장에서 당하는 긴급한 사고나 질병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려움.

- 또한 수시로 의료 및 건강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
- 단원과의 통신체계 미흡으로 비상시 연락에 문제가 있음.
- 각 파견국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치안상태, 풍토병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하고, 대처방안도 부재
- 단원 대상의 보건.위생, 교통안전,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부족
- 단원들의 활동중 차량 운행에 대한 지침 부재

2) 개선방안

- 고분의사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과 확대
- 파견단원의 통신망 재구축
- 비상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보건.위생 지침, 교통안전 등 각 부문별 상세 정보자료 제작
- 응급처치 요령 교육 강화
- 국제협력의사 제도를 활용하여 전 파견국에 의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사무소 또는 봉사단 호스텔에 비상약품 보장
- 각 파견국내 계약병원 채택

사. 활동지원

1) 추진방향

- 단원 활동지원 경비의 증액 및 소규모프로젝트 활성화
- 현지지원 위주의 지원제도 개편
- 지원의 원칙과 한계의 엄격한 설정 및 적용(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봉사활동의 왜곡 방지)
- 지원절차 간소화

2) 개선방안

- 단원 활동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을 통한 실질적인 활동지원 강화
- 각 국당 소규모프로젝트 지원예산 배정액 증액 및 지원계획 지침화
 -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범위, 지원사업, 지원절차 등 제반지원관련 사항의 지침화
 - 단원 수에 비례한 지원금의 증대
 - 단원 활동지원이 가급적 프로젝트성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원물품의 현지구입 한도 확대 및 지역사무소장의 재량권 강화(지원의 신속.정확성 제고)
 - 지역사무소장이 재량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현지물품구입 예치금의 증액
- 단원이 활동지원 요청시 공판장 확인조항 삭제(지역사무소장의 확인으로 대체)
 - 지역사무소장은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책임지고 확인토록 함.

아. 신규파견국 결정

1) 현행 문제점

- 파견국 결정의 원칙 미확립
- 파견국 결정에 앞선 사전조사의 미흡
- 장기계획의 부재

2) 개선방안

- 신규파견국 선정원칙 수립 및 엄정한 적용
 - 대상국의 요청, 1인당 국민소득, 봉사활동의 필요성, 주재공관 존재여부, 치안등 사항 고려
- 파견국 결정전 사전조사 철저
 - 적어도 1년 전부터 조사 착수
 - 실제 사전답사 실시로 현장 파악
 - 대상국측의 단원 접수의사 확인 및 준비상황 점검
 - 단원파견협정 사전협의 및 체결(협정 미체결 국가에는 단원파견 보류)
 - 파견분야, 지역, 기관, 인원 등에 대한 사전 조율

○ 파견 대상국(후보국가) 설정

- 수립된 선정원칙과 조사에 의해 파견 대상국의 선정
- 장기적인 파견계획 수립(신규 파견국수, 파견인원 등)
- 가급적 전 파견 대상국과 사전에 파견협정 체결
- 대상국 정부와의 협의 및 정보교환 지속

자. 기 타

○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귀국자 대책의 정비

- 현직 참가제 정착 및 확대
- 단원활동 홍보 강화 및 상시 기업체 연결망 구축
- 귀국 예정단원의 진로상담 강화

○ 단원 OB회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우수자원 확보, 대외홍보, 단원간 유대 강화 등 효과 제고. 끝.

협 력 의 사 파 견

김 광 영 차 장

목 차

1. 사업목적	106
2. 사업현황 및 개요	106
가. 사업의 현황	
나. 사업의 특징	
3. 중장기 사업추진 방향 및 정책	107
가. 기본전략 및 정책	
나. 사업담당 조직 및 인력	
다.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실시	
라. 인력의 선발 및 교육	
마. 활동지원의 강화	
바. 처우개선	
사. 파견대상지역의 다변화	
아. 의료단원의 현지 의료경험 국내보급	
4. 결론	111

1. 사업목적

- 인도적 차원의 의료 전문인력 지원
-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의료, 보건 환경 개선
- 인술 활동을 통한 의료 인력의 국제화
- 세계화에 대비한 각지역의 풍토병 연구의 활성화

2. 사업현황 및 개요

가. 사업의 현황

- '68년 아프리카 지역에 7명을 파견한것이 최초임
- 파견 인원은 '91년말 현재 11국 16명에서 '96년6월20일 현재 18국에서 22명으로 증하는 추세임 ("첨부 2" 참조)

<의료단원 파견 동향>

년 도	'91	'92	'93	'94	'95	'96.6
인 원	16	13	20	17	22	22
국가수	11	12	15	16	19	18

- '96.6월현재 활동중인 파견 인원들의 최초 파견일을 보면 '79년 이전이 6명 '92년이후가 16명으로 '79년 이후에 쇄박하던 사업이 협력단 발족후에 다시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 사업의 특징

- 인도적 원조 목적에 가장 충실하고 수원국의 일반대중이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임.
=>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가능한 사업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파견인력들이 동일 국가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업임.
=> 체계적인 파견준비, 활동지원 및 사후관리를 요함.

3. 중장기 사업추진 방향 및 정책

가. 기본전략 및 정책

- (1) 인력파견 위주의 사업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시킴.
- (2) 기 파견 인력에 대한 활동지원 대폭 강화
- (3) 파견지역에서 천재지변 발생시 민간단체의 구호활동과 연계

나. 사업담당 조직 및 인력

(1) 사업 전담조직 신설

- 의료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전담조직이 필요함.

=> '97년 전담 신설/ '99년 전담부서 결정

(2) 전문인력 양성

- 전담 직원들로 하여금 보건행정, 의료행정 및 병원관리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해야함 =>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WHO등에 파견근무시킴

다.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실시

- (1) '97년부터 중점협력국에 파견된 의사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발굴하여 실시

- 의료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
- 간호원 및 의료보조인력 파견
- 단기 순회 진료단 파견

- (2) 2000년에는 모든 의료단이 아국지원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함.

라. 파견 인력의 선발 및 교육

(1) 의료단(의사) 선발의 기준 설정

- 전문 의료기술 : 전문분야의 의료지식, 기본 치료장비 조작능력, 임상 경험, 자격증 등.

- 지도력 :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의료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을 갖추어야 함.
- 어학 : 일정 수준의 영어 또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함.
- 건강 : 위생 환경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능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체질이어야 함.
- 용기와 열정 : 현지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용기와 일에대한 열정이 있어야함.

(2) 파견 준비 교육

- 어학 교육
 - 파견인력으로 선발된후 파견되기 전까지 국내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 또는 현지어를 수강케함 ==> 경비 전액 협력단 지원
 - 현지 적응훈련을 어학위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실시 (1년이상 장기 파견자의 경우)

마. 활동지원의 강화

(1) 개인별 활동 지원비 증액

- '94년 이래로 파견의사 1명당 연간 의약품지원 \$2,500. 소규모 프로젝트 \$10,000등 \$12,500을 지원하고 있음. ==> 이들 비용을 통합하여 '97년에는 1인당 2만불이내 '98년부터는 1인당 5만불 이내로 지원 상한선을 상향조정

(2) 파견 의료단원에게 파견국내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대사관을 통해서 발굴하는 일반프로젝트와는 별도로 파견의사가 직접 Project Manager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케 함.
- ==> 별도 예산 책정

(3) 국내의 학술회의 참석 지원

- 파견의사가 파견국 내의 질병에 관련 되거나 전문분야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분야의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매년 1회의 한국 또는 제3국의 학술회의 참석 허용(경비전액 협력단 지원)

(4) 단기 순회진료단 활동 지원

- 파견의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견되거나 동 의사의 활동과 직결된 국내 민간 순회진료단 활동을 지원함
(국내 NGO활동과의 연계)

(5) 계약 만료후 귀임시 장비 및 의약품 지원

- 의료단원이 정상적으로 계약 만료후 귀임할 경우 현지인이 동 의사의 진료활동을 인수하여 속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지원함

바. 처우개선

(1) 호봉책정의 문제점 개선

○ 현황

- 현재 호봉책정에 있어서 국내의 임상경력만을 기준으로 하고 의료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해외의 임상경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의료단원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24조)
- 또한, 상여금은 본봉기준으로 년 200%를 지급토록 되어있음 (동25조 ①항)
- 이를 보전키위해 계약 갱신시(매2년)마다 계약 연장수당을 월\$250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문제점

- 국내 임상경험은 호봉책정에 인정하면서 의료단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호봉책정 산정치 않음은 협력단 스스로 협력단 파견 기간중의 활동을 국내임상

활동보다 낮게 평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단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금전적으로도 협력단 의료단원 장기 근무자가 단기 근무자보다 보너스 금액이 더 적은 현상이 발생할수 있음.
- 국제협력 사업을 하면서 파견 의사들의 해외임상 경험을 인정해줄 규정상 근거가 미비됨.

○ 대책

- 제 1 안 : 계약연장 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매년 정기 직원호봉승급시 의료단원도 현지활동 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승급시킴.
아울러 해외 임상경험도 국내 임상경험과 동일하게 취급함
- 제 2 안 : 보너스 지급기준에 계약연장수당도 포함시킴.
아울러 해외 임상경험도 국내 임상경험과 동일하게 취급함

사. 파견 대상지역의 다변화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단 파견 및 관련사업 지원 비율을 50% 이상의 비율로 높임. ==> 인술을 통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
- 한의사 파견은 법적으로 공식 인정 되고 있는 중국에 파견함으로써 양국간 실질적인 한의학 부분 기술교류에 기여함.

아. 의료단원의 진료경험 및 연구결과 국내 전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료단원들의 현지 진료활동 경험과 풍토병 연구결과가 국내에도 보급되도록 의료 단원들의 국내 의료계 학술잡지에 임상관련 논문의 게재를 권장하고 필요경비를 지급함
- 의료단원들이 매 2년마다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전체 또는 지역별 모임을 갖고 현지의 임상 경험을 교류케 하는 "의료단원 진료경험 세미나"를 개최케 함

4. 결 론

- 과거 우리가 수원국일 때에 인력만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의료단원 파견사업을 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국별 장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형 협력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끝-

의 사 파 견 경 비 일 략 표

(' 9 6 년 예 산 안 기 준)

(단위 : US\$)

국 가	성 명	직접경비	활동지원비	공공요금/기타	총 계
미 양 마	이영식	69,820	12,500	1,331	83,651
방글라데시	이용만	69,355	12,500	7,443	89,298
서사모아	최영진	52,254	12,500	1,897	66,651
팔라우	윤성일	65,426	12,500	6,275	84,201
베트남	김시찬	63,845	12,500	1,200	77,545
수 단	최 인	71,480	12,500	7,774	91,754
모리타니아	장기순	77,175	12,500	5,411	95,086
페루	문장호	68,080	12,500	-	80,580
	김일경	68,080	12,500	-	80,580
카자흐스탄	김동선	66,523	12,500	890	79,913
	민병훈	80,844	12,500	890	94,234
우즈베키스탄	하동주	61,712	12,500	890	75,102
코트디부와르	안순구	80,095	12,500	1,336	93,931
니제르	김대수	48,059	12,500	14,157	74,716
	조규자	39,294	12,500	7,206	59,000
카메룬	김시원	84,195	12,500	1,336	98,031
가 나	홍상훈	73,472	12,500	10,228	96,200
이디오피아	유민철	68,500	12,500	1,203	82,203
스와질랜드	안효정	67,626	12,500	1,203	81,329
우간다	유덕중	72,811	12,500	16,203	101,514
탄자니아	박형동	63,753	12,500	536	76,789
	서미라	51,768	12,500	1,203	65,471
합 계 (구성비)	22명 /18개국	1,464,167 (80%)	275,000 (15%)	88,612 (5%)	1,827,779 (100%)
평 균		66,553	12,500	4,028	83,081

- 주) 1. 직접경비 : 보수 및 제수당, 보험료, 자녀학비보조 및 퇴직급여충당금
 2. 활동지원경비 : 소규모프로젝트 사업비 및 의약품 지원비
 3. 공공요금 및 기타 : 파우치발송료, 국내외우편료, 파견경비, 귀국경비 및 휴가비
 4. 2월에 계약만료된 김명호(레소토)와 4월에 계약해지된 이명희(케냐) 제외 . 끝.

'96 년 의 료 단 원 파 견 현 황

96. 6. 20 현재

지 역	국 가	성 명	전문분야	최초파견일	계약만료일	동반가족
아시아	미얀마	이영식	가정의학 (전문의)	'96.02.26	'98.02.25	배우자 자녀 : 2
	방글라데시	이용만	내과 (준전문의)	'93.12.28	'97.12.27	배우자 자녀 : 1
	서사모아	최영진	소아과 (전문의)	'93.02.19	'97.02.18	배우자 자녀 : 1
	팔라우	윤성일		'96.03.02	'98.03.01	
	베트남	김시찬	내과 (전문의)	'95.12.10	'97.12.09	배우자 자녀 : 2
중 동	수 단	최 인	비뇨기과 (전문의)	'94.10.29	'96.10.28	배우자 자녀 : 2
	모리타니아	장기순	산부인과 (일반의)	'77.01.12	'98.07.06	배우자
중남미	페루	문장호	비뇨기과 (전문의)	'93.10.06	'97.10.05	배우자 자녀:2
		김일경	치과 (준전문의)	'95.09.08	'97.09.07	배우자
동 구	카자흐스탄	김동선	한의학	'95.01.26	'97.01.05	배우자 자녀 : 2
		민병훈	외과 (전문의)	'95.7.7	'97.07.06	모 배우자 자녀 : 1
	우즈베키스탄	하동주	한 의사	'95.11.21	'97.11.20	배우자 자녀 : 2
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	안순구	내과 (일반의)	'69.01.16	'97.01.15	배우자
	니제르	김대수	내과 (일반의)	'68.09.02	'96.08.31	배우자
		조규자 (여)	이비인후과 (전문의)	'79.08.01	'96.07.31	*김대수의 처
	카메룬	김시원	외과 (전문의)	'93.10.12	'97.10.21	배우자 자녀 : 3
	가 나	홍상훈	가정의학 (준전문의)	'94.01.21	'97.2.28	배우자 자녀 : 1

계 속 /..

지 역	국 가	성 명	전문분야	최초파견일	계약만료일	동반가족
	이디오피아	유민철	외과 (전문의)	'75.07.04	'97.06.30	배우자 자녀 : 2
	스와질랜드	안효정	산부인과 (전문의)	'77.08.01	'97.07.31	배우자
	우간다	유덕중	내과 (전문의)	'92.06.20	'96.06.19	배우자 자녀 : 3
	탄자니아	박형동	외과 (전문의)	'93.07.01	'97.06.30	배우자 자녀 : 2
		서미라 (여)	정신과 (전문의)	'96.01.01	'97.12.31	* 박형동의 처
합 계		22명				

주) 2월에 계약만료된 김명호(레소토)와 4월에 계약해지된 이명희(케냐) 제외
. 끝.

JICA의 의료협력 사업의 구조

1. 경과

- '58 이디오피아에 의사파견으로 시작됨
- '66 의료협력 전담조직 설치
- '70 의료협력 프로젝트를 전담키 위해 醫療協力部 로 전담기구 확대
 - Health and Medical Programs
 - Population/Family Planning Programs
 - Internation Relief and Disaster Programs : 일본재난구호팀(JDR : Japan Disaster Relief Teams)이 실시

2. 의료협력 사업의 구성

○ 보건, 의료 프로젝트형 협력

-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
- 사회 건강 증진
- 병원관리
- 일본의 의료전문가와 공동으로 의료인력 연수

○ 인구 및 가족계획 프로젝트형 협력

- 인구교육 프로젝트형 사업
- 가족계획 방법 보급사업

○ 국제재난구호

- 개도국의 지진, 홍수 및 태풍피해시 재난구호팀 운영

3. 주요 사업실시 동향

- '52-'87 간의 사업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활동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구 분	전문가	연수생	조사단원
아시아	2,933	3,699	1,264
중남미	845	1,530	401
중 동	299	656	178
아프리카	560	482	306
대양주 및 기타	167	71	50
국제기구	5	-	-
합 계	4,809	6,438	2,199

. 끝 .

국 제 협 력 요 원

이 재 응 과 장

목 차

1.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 현황	118
가. 사업추진 배경 및 경위	
나. 사업의 의의와 내용	
다. 국제협력요원 파견현황	
2.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 평가 (문제점 분석)	120
3. 사업 추진여건 전망	121
가. 정부개발원조(ODA) 규모와 사업예산	
나. 국제협력요원의 수요	
다. 병역자원의 수급	
4. 중·장기 발전방향	122
가. 기본목표와 중점과제	
나. 사업추진 방향	
※ 참고자료	129

1.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 현황

가. 사업추진배경 및 경위

- 의료단 및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일반적인 해외근무 기피현상(특히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도국의 경우 극심)과 일부 분야의 해외봉사단 지원자 부족등, 해외 파견인력 확보가 원활치 못하여 사업의 확대 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병역자원 활용방안이 정부방침으로 추진됨.
- 이를 위해 '93.12.30 병역법을 개정하고 '94.1.7 국제협력 요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병역자원을 국제협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립, '95 제1기 국제협력요원 28명을 13개국에 첫 파견함.

나. 사업의 의의 및 내용

- 병역자원중 일부를 개도국 등 특정협력 대상지역에 국제협력 요원으로 선발, 파견하여 군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봉사활동케 함으로서,
 - 해외봉사 요원의 안정적 확대 파견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며
 - 국가인력 자원의 효율적 배분, 활용을 도모하고
 - 청년들에게 건전한 인생관 및 국가관을 형성케 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며
 - 지역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개도국 의학연구분야 개척과 국내의학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국제협력 요원은, 병역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되어 32개월 복무하되 그중 24개월은 대외적으로 해외봉사단의 일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제협력 봉사요원" 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해 국제협력 의사에 편입되어 36개월 복무하되 그중 28개월을 대외적으로 의료단원의 일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제협력의사"로 구분 함.
- ※ 사업의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다. 국제협력요원 파견 현황

- 사업 첫해인 '95년에 국제협력 봉사요원 20명(5개국 7개직종)과 국제협력의사 8명(8개국 2분야)등 제1기 요원 28명을 선발.파견하였고,
'96년에 국제협력 봉사요원 30명(6개국 4개직종)과 국제협력의사 8명(6개국 2개분야)등 제2기 요원 38명을 각각 선발.파견하여
- '96.6월말 현재 국제협력요원 66명이 17개국 9개직종에서 활동중에 있음.

1) 국제협력 봉사요원 파견 및 활동현황 : 50명 7개국 8개직종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중 국	베트남	필리핀	태 국	인 니	몽 골	카자흐
합 계	50(20)	8(4)	10(4)	4(4)	7(4)	10(4)	5	6
한국어교육	27(9)	7(4)	6(3)					
컴 퓨 터	14(5)	1	2	2(2)	1(1)	5(1)	3	5
전 자	2(2)			1(1)	3(2)	3(1)	2	1
기 계	1(1)			1(1)	1(1)			
축 산	1(1)					1(1)		
작물 재배	1(1)					1(1)		
태 권 도	2(1)		2(1)					
체육 교육	2				2			

※ ()는 전체인원중 '95 파견 제1기 봉사요원임.

2) 국제협력의사 파견 및 활동현황 : 16명 11개국 2개분야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일반 의사	정형 의과	신경 의과	내과	소아과	가정 의학	치과
합 계	16(8)	7(6)	3	1	1	1	1	2(2)
방글라데시	3(1)	1(1)	1	1				
탄자니아	2(1)	2(1)						
몽 골	2(1)				1			1(1)
가 나	2		1				1	
내 팔	1(1)	1(1)						
과테말라	1(1)	1(1)						
케냐	1(1)	1(1)						
카 메룬	1(1)	1(1)						
스리랑카	1(1)							1(1)
우 간	1		1					
페 루	1					1		

※ ()는 전체인원중 '95 파견 제1기 협력의사업.

2.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 평가 (문제점 분석)

사업시행 기간이 짧아 ('95.5월 제1기 요원 파견) 모집, 선발, 파견부터 귀국 및 복무완료까지 일련의 업무순환과정이 아직 一巡도 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까지의 결과와 그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함

- 사업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시 파견규모와 대상국 및 파견분야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요원들의 활동기간은 짧으나 활동 및 복무에 대한 현지 반응은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됨.
- 반면, 활동분야에서 경험이 절대로 부족한 병역자원의 구조적 한계성과, 의사들의 경우 병역에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조건외 열악과 복무후 본인진료 개척에 불리한 국제협력의사 지원율이 극히 저조('95년 및 '95년 각10명 모집에 16명 지원으로 1.6 대 1)하여 전문의사 선발에 애로가 많아 수원국의 파견요청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 또한, 사업이 일순되지 않은 상태라 제도적 완벽성이 미비되어 보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잔존하며, 업무적으로는 요원 파견에 따른 고유업무와 병무업무가 결부되어 행정절차 및 업무가 번잡하여 많은 행정 수요를 유발하고 있음.
- 더불어 처우나 복무조건 및 활동 지원면에서 해외 봉사단원 또는 의료 단원과의 형평 및 조화를 이루어 갈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 병역자원에 부합된 파견분야 선정 및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와 더불어 우수 적격자원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아래 행정 간소화와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개선토록 하며,
 - 철저한 복무관리 체계의 확립과 요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세심한 대책과 함께 요원들 귀국후 국내근무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등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사업추진 여건전망

가. 정부개발원조(ODA) 규모와 사업예산

-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부담 증대 요청과 90년대 하반기 OECD 가입등의 요인으로 현재 GNP 대비 ODA 비율이 DAC 권장 수준 및 DAC 회원국들의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ODA 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국제협력요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나. 국제협력요원의 수요

-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은 초기 사업이라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인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봉사인력의 요청과 협력요원의 활동 성과등을 감안시 파견 여력만 확보되면 수요는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

다. 병역자원의 수급

- 국방부 자료에 의할 경우 2,000년까지 매년 32만여명의 병역자원이 소요되는 반면 병역가용 자원은 '96년 45만여명에서 2,000년에는 약 5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 병역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3> 병역자원 수급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96	'97	'98	'99	2000년
가용자원 (A)	455	469	477	508	556
총소요 (B)	323	324	323	323	323
누적자원 (A-B)	132	145	154	185	233

- 의사의 경우 군의관 소요인력이 '95년 812명, '96년 850명이었던데 비해 의무장교 대상자원은 '95년 1,792명, '96년 1,850명으로서 자원이 소요인력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며, 향후 2,000년까지 군의관 소요인원은 별 변동이 없을 것이나 배출자원은 매년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어 단순 수량적 차원에서 국제협력의사 자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4. 중·장기 발전방향

가. 기본목표 및 중점과제

기 본 목 표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의 안정적 확대추진 및 사업 성과 제고

중 점 과 제

- 파견 규모의 점진적 확대
- 파견지역의 다변화 및 파견분야 특화
- 우수자원 확보 및 교육훈련 강화
-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근무여건 개선 및 활동지원 강화
- 복무관리 철저 및 신변안전 보호체계 확립
- 사후관리 기반조성

나. 사업 추진 방향

1) 파견 규모의 점진적 확대

- 파견규모는 사업의 효과성과 파견 요청의 증가 추세등을 감안하여 확대해 나아가되, 정부의 정책목표와 바람직한 협력사업 예산의 증액규모 및 해외봉사단사업과 의료단사업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표> 국제협력요원 파견계획

(단위 : 명)

구 분		'96	'97	'98	'99	2000년
파견인원	계	66	136	198	280	340
	협력봉사요원	50	100	150	220	270
	협력의사	16	36	48	60	70
소요예산(백만원)		1,058	4,189	6,098	8,624	10,472

2) 파견 지역의 다변화 및 파견분야 특화

가) 지역 다변화

- 인력협력의 지역적 확대라는 측면과 당초 동사업의 시행의의 중 하나인 지역전문가 양성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파견지역의 다변화 추진
- '96년 현재 국제협력요원은 17개국에 파견 활동중에 있으나 그중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아시아지역 7개국에 편중되어 있는바, 연차적으로 파견지역을 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등으로 파견지역 확대

<표> 국제협력요원 파견지역 확대계획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파견영역	협력봉사요원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파견국)	(7개국)	(10개국)	(15개국)	(20개국)	(25개국)
	협력의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파견국)	(11개국)	(15개국)	(20개국)	(25개국)	(30개국)

나) 파견 분야의 특화

- 파견대상이 실무경력이 부족한 병역 자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파견 분야 특화를 통해 해외봉사단 및 의료단원 파견사업과의 보완적 조화와 차별화 추진

※ 봉사사업 부문의 차별화

봉 사 요 원	봉 사 단
○ 청년 남자 - 국내인적자원은 있으나 제반 여건상 지원자의 모집, 확보가 어려운 분야 - 체력과 열정이 요구되는 남성분야중 실무경력이 부족하여도 일정 학력을 소지하면 활동에 문제가 없는 직종	○ 청장년 남녀 - 전문분야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요하는 분야 - 여성 분야

※ 의사 파견사업 부문 차별화

협 력 의 사	의 료 단
○ 프로젝트형 사업 ○ 의학, 병리학등 학문적 분야 ○ 복수파견시 보조적 분야 ○ 순회 의료단(연중) 구성 파견시 활용	○ 장기 복무 요청 분야 ○ 경험과 고도의 의술 요청 분야

- 교포 밀집 지역등을 대상으로 한의사를 파견하여 한의 보급 및 현지인 보건의료 지원

3) 우수자원 확보 및 교육훈련 강화

- 협력요원파견 사업의 성패는 협력주체인 요원의 자질과 이를 파견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지원과 접수국의 수용 능력등에 달려 있으며 그중에 우선되는 요소는 요원의 자질이라 할 것임.
- 따라서 한정된 병역자원중에서 모집, 선발과정을 통해 우수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훈련을 통해 협력활동의 적격 요원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가) 우수자원 확보

- 국제협력요원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및 지지확산을 위한 국민 홍보와 대상자원이 밀집된 대학, 의료기관, 연구소등을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중점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적격자원의 안정적 확보도모
- 더불어 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의 단축 등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 자원이 협력요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특히, 협력의사의 경우 수원국에서 요청하는 전문의사 확보를 위해 단순 인류애적 희생 정신에 호소한 자원 모집에는 한계가 있는바, 점진적으로 현행 의료단 파견사업으로 진출하는 의사와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3년인 복무기간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단축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아울러 모집, 선발의 방법 및 시기등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제도개선 추진

나) 국내외 교육훈련 강화

- 확보된 자원을 국제협력업무 수행과 해외 봉사요원으로서 적합토록 교육 훈련기능 강화
- 국내훈련은 정신력과 경험부족에 따른 기술적 문제 보완교육에 치중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시설 확보
- 국외교육은 현지 적응 및 요원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현지어 교육과 현지사정 교육에 중점을 두며, 교육기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접수국 협력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조 관계 강화

4)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가) 행정의 간소화

- 국제협력요원 파견에 관한 업무는 병무행정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로서 법적 위탁업무인 관계로 타사업과는 달리 관련법규 및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적 수요가 많은 업무임.

※ 관련법규 및 업무절차 별첨 참조

- 따라서 행정연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도모하고 집행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

나) 업무 전산화

- 요원의 모집·선발, 교육훈련, 파견, 요원관리(보수 및 경비지출, 근태, 활동지원, 상벌등), 사후관리 및 행정협조 등 협력요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전산화 추진
- 특히, 활동요원의 관리 및 요원과의 통신 등을 위해 인터넷망 구축 활용

5) 근무여건 개선 및 활동지원 강화

가) 복무기간 단축

- 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 32개월(군사교육 1개월+교육훈련 3개월+국의근무 24개월+국내근무 4개월)을 28~30개월로 단축하여 기존 해외봉사단 복무기간(24개월, 국내훈련기간 별도)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역병(26개월) 및 타공익근무요원(28~30개월)과의 형평을 기하며 국내근무 장기간에 따른 문제점 해소
- 협력의사의 복무기간 3년을 현행 예비역장교 병적이 보충역으로 조정되는 '97년이후에 30개월로 단축 추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협력의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의사 확보에 기여

나) 처우 개선

- 협력의사의 경우 의료시설 및 여건이 열악한 개도국 근무에 따른 문제점과 복무만료후 향후 진로개척에 따른 상대적 불리 등의 보전적 차원에서 협력의사 보수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불만해소 및 우수자원 확보에 기여
 - 기존 의료단원과의 보수격차를 연차적으로 축소

다) 요원 현지활동 지원 확대

- 협력요원에 대한 물품 및 소규모 프로젝트 등 활동지원 수준을 의료단원 해외 봉사단 수준에 맞추어 지원하여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6) 복무관리 강화 및 신변안전 보호체계 확립

가) 관리감독 철저

- 협력요원의 특수신분을 감안 지역사무소(또는 주재원)를 중심으로 복무관리,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여 요원 파견 목적달성을 유도하고 잡음 방지

나) 안전교육 강화

- 국내외 교육훈련 기간중 현지생활 및 활동에 따른 안전 지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 사고예방에 중점

다) 비상 연락망 구축

-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체계 확립 및 비상 통신망 구축

7) 사후관리 기반 조성

가) 효율적 국내근무체제 구축

- 국외근무 만료한후 국내근무 기간 동안 요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 협력봉사요원 : 협력단 업무지원(지역부서, 사업부서에 배속)
 - 협력의사 :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해외임상 경험을 국내의학 발전에 활용토록 여건 조성

나) 지역전문인력 활용기반 조성

- 복무만료 대상 협력요원에 대한 향후 진로 상담 및 지도
- 해외 근무를 통해 육성된 지역 전문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사회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인력 은행제 도입 추진

참 고 자 료

국제협력요원파견 사업내용

요 약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에 이바지하고, 이들 지역들에서의 우리나라 국익증진을 위하여 병역의무자 중에서 국제협력봉사 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선발, 파견하여, 일정기간 봉사활동케 한 후 이들에 대해서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가. 협력요원의 구분

1) 국제협력의사 (이하 "협력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병역의무 대상자중 소정의 모집 선발 절차를 거쳐 국제협력 의사에 편입되어 의료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종사 하는 협력요원 (병역법 제34조)

2) 국제협력 봉사요원 (이하 "봉사요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소정의 모집, 선발절차를 거쳐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협력요원 (병역법 제26조 제2항)

나. 파견지역 및 업무

1) 협력단법 제2조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 (개도국)" (요원법 제1조, 제2조)

2) 협력단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한 업무 (요원법 제2조제3호)

○ 청년봉사단원, 의료단원으로서의 업무

다. 복무기간

1) 협력의사 : 36월 (병역법 제34조)

-국내교육 1월+국외훈련 1월+국외근무 28월+국내근무 6월

*군사교육 11주 별도

2) 봉사요원 : 32월 (병역법 제29조 및 제30조, 병역법 시행령 제56조)

-군사교육 1월+국내교육 1월+국외훈련 2월+국외근무 24월+
국내근무 4월

라. 모집.선발

- 1) 병역의무 대상자중 희망자 공개모집 (요원법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제1항)
- 2) 자격요건 (요원법시행령 제2조제2항)
 -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신념.자질 및 적성을 가진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선발전형방법 (요원법시행령 제2조제3항)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함
 - * 협력의사는 필기시험 생략
- 4) 선발 절차 (병역법 제26조 및 제43조, 요원법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16조)
 - 협력단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외무부를 거쳐 병무청에 추천하면
병무청에서 최종 확정

마. 소집 및 직무교육

- 1) 협력요원 편입자에 대해 종사명령 및 직무교육 소집 (군사교육후)
- 2) 교육기간 : 4월이내 (요원법시행령 제5조제1항)
 - 봉사요원:국내교육1월이내, 국외현지교육 3월이내
 - 협력의사:국내교육2주, 국외현지교육 2주
- 3) 교육내용 및 방법
 - 국내교육 : 정신교육 및 전문기술교육에 중점 (합숙훈련)
 - 국외현지훈련 : 현지어교육 및 현지적응훈련에 중점(전문기관 위탁교육실시)

바. 복무

- 1) 현지근무
 - 현지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그 기관의 관행에 따라 근무
- 2) 지휘.감독
 - 협력단총재가 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
다만, 현지 지도.감독은 재외공관장이 수행 (요원법시행령 제19조)

3) 휴가

- 연가(연15일이내), 청원휴가(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시 7일이내), 병가, 공가등 허가 (요원법시행령 제9조)

4) 일시귀국허가

- 본국치료 및 휴양필요시, 청원휴가, 공가 허가시등 일시귀국 허가(요원법시행령 제10조)

5) 중도귀국 조치

- 국제협력업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시 중도귀국 조치 (요원법 제11조)
- 이 경우 근무지 재지정 또는 타 공익근무요원 지정 요청 가능

6) 본국 소환

- 국위손상 또는 국가이익위배, 8일이상 근무지이탈, 당해 정부 요청, 복무상 의무위반시 본국소환 (요원법 제10조)

사. 의무불이행자 조치

1) 봉사요원에 대한 조치

- 직무교육불응, 본국소환(8일이상 복무이탈자는 제외), 근무명령 불복종시는 현역병 입영조치 (병역법 제33조제1항)
- 8일이상 복무이탈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잔여기간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병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89조의2제1호)

2) 협력의사에 대한 조치

- 협력의사가 면허취소 및 정지, 직무교육 불응, 본국 소환시는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제35조제3항)
- 8일이상 복무이탈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잔여기간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병역법 제35조제4항 및 제89조의2제2호)

아. 보수 등

- 1) 보수 : 현역수준 지급 (요원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협력의사 : 군의관 보수 (월 90만원 수준)
 - 봉사요원 : 현역병 보수 (월 1만원 수준)
- 2) 국외현지생활비 및 활동비 (요원법시행령 제13조제2항)
 - 청년봉사단 수준의 현지생활비 (월 \$290~500) 지급
 - 주거는 의료단원 및 청년봉사단원에 준하여 제공
 - 기타 현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청년봉사단 및 의료단원에 준하여 지원
- 3) 여비, 교육훈련비 및 퇴직금지급 (요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제4항, 제5항)
 - 부임.귀임.전임 및 현지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교육훈련비 지급
- 4) 재해보상 (요원법시행령 제14조)
 -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해외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자. 복무만료

- 복무만료자는 소집이 해제되면서 병역필 조치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관련법령 및 업무절차

가. 관련 법령

법 규 명	관 련 조 항	관 련 내 용
<사업에 관한 법규> ◦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법률제4715호, 94. 1. 7) ◦ 동시행령 (대령제14421호, 94. 12. 1) ◦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 (외무부령)	15개조, 부칙 16개조, 부칙	◦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시행령에서 위임된 협력요원의 보수와 경비 지급기준 규정
<병역에 관한 법규> ◦ 병역법 (법률제4685호, 93. 12. 31) (법률제4840호, 94. 12. 31) ◦ 동시행령 (대령제14397호, 94. 10. 6)	제1장, 제5장, 제6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부칙 제5장, 제6장, 제9장, 제10장, 제13장, 부칙	◦ 협력요원의 편입, 복무기간, 소집해제, 군사교육, 권익, 벌칙등 병역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업무추진절차

업 무 절 차	처 리 내 용 및 방 법	처리기관
국제협력요원 배정	- 차년도 봉사요원 소요인원 배정요청 (협력단→외무부→병무청) - 봉사요원 배정인원 통보 ※ 국제협력의사 인력수급계획은 별도협의	협력단 병무청
사업계획수립	- 협력요원 파견사업계획 작성 제출 - 검토후 승인통보	협력단 외무부
모집 및 선발	- 협력요원 대상자 모집, 선발계획 수립 - 모집, 선발 - 협력요원 대상자 추천(외무부 경유) - 협력요원 최종선정 및 명단 통보	협력단 " " 병무청
군사교육 및 종사명령	- 협력요원 편입자 군사교육 실시 - 군사교육 수료자 종사명령	국방부 외무부
국내교육 및 파견계획수립	- 직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직무교육 평가 및 최종파견자 확정 - 파견준비 계획수립 및 지원 - 명단 및 인적사항 통보→파견국 협정기관	협력단 " " "
파견준비		
국외현지교육	- 현지훈련 계획 수립 - 현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협력단 교육기관
부입 및 복무	- 협력요원의 신상이동, 근무상황등 기록 관리 - 협력요원 근무상황 평가보고 - 근무일지 작성 및 정기활동 보고	재외공관 협력단 협력요원
귀국 및 국내활동	- 귀국준비 및 국내 복무계획 수립 - 귀국신고 및 귀국보고서 제출	협력단 협력요원
종사명령해제 및 명단통보	-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송부, 접수 (협력단→외무부→병무청→외무부→협력단) - 병역증 교부 및 종사명령해제	협력단 "

II. 조 직 분 야

조 직 정 비

김 홍 차 장

목 차

1. 우리나라 ODA 전망과 KOICA조직 정비필요	139
가. 우리나라 ODA의 증대전망	
나. ODA 구조 조정필요	
다. KOICA예산 및 사업의 단계적 확충	
라. KOICA조직 정비필요	
2. 선진국 원조기관의 조직분석	140
가. 일반 특성	
나. 기관별 분석	
1) JICA	
2) CIDA	
3) USAID	
4) AusAID	
5) ODA	
※ 참고 : 우리나라 외무부 직제	
3. 정비방향 및 분장업무	147
가. 정비 방향	
나. 분장 업무	
※ 참고 : PROJECT 실시 부서간 협조체제(예)	
4. 조직표(안)	149

1. 우리나라 ODA전망과 KOICA조직정비 필요

가. 우리나라 ODA의 증대전망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95 GNP 세계 11위, 교역규모 세계 12위) 및 국제적 지위에 비해 우리나라 ODA 규모는 매우 취약 (GNP의 0.04%)
- OECD가입 예정 예정('96): DAC 회원국의 ODA/GNP비율 최저수준(0.2%) 및 후발 OECD가입국의 가입당시 ODA/GNP비율을 고려할 때 ODA 규모의 대폭확대는 필연적임
- * 후발 OECD 가입국의 가입당시 ODA/GNP비율
일본('64) 0.14%, 핀란드('69) 0.14%, 호주('71) 0.56%,
뉴질랜드('73) 0.28%

나. ODA구조 조정 필요

- ODA구조상 우리 나라는 양자간 비중이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향후 양자/다자간 ODA비율을 DAC평균 수준(70:30)으로 개선 필요
- 질적인 면에서도 ODA중 유무상 비율이 선진국과는 반대로 유상원조 중심으로 추진. 향후 2000년까지는 최소한 50:50 정도로 조정필요

다. KOICA 예산 및 사업의 단계적 확충

-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효과가 큰 무상기술협력사업(KOICA 사업)의 대폭적 확충이 필수불가결

※ 외무부(KOICA)의 연도별 ODA확대(안)

구 분	'96 예산	'97	'98	'99	2000
◦ 경상 GNP(억불)	4,849	5,616	6,480	7,427	8,436
- 적용환율 (원)	(750)	(723)	(695)	(675)	(650)
◦ ODA(A+B) (백만불)	481.6	730.1	1,027.2	1,336.9	1,692.0
◦ ODA/GNP (%)	0.1	0.13	0.15	0.18	0.2
A. 양자간(백만불)	330.9	511.1	719.0	935.8	1,184.4
-무상원조(KOICA)	62.1	230.0	337.9	449.2	592.2
(억원)	(466)	(1,662)	(2,348)	(3,032)	3,849
B. 다자간 (백만불)	150.7	219.0	308.2	401.1	507.2

라. KOICA 조직정비 필요

- 여건의 변화 : 예산증가 및 업무확대(양적, 질적)에 따른 조직 필요
- 수원국, 지역 및 사업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겸비한 인력의 양성 및 확보 필요성 대두
- 확대된 예산 및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과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용이한 조직필요

2. 선진국 원조기관의 조직분석

가. 일반 특성

- CIDA, USAID, AusAID, ODA, JICA등 선진국 원조기관의 조직은 대체적으로 기획 및 지원업무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지역업무부서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다만 일본 JICA의 경우만 지역부서를 두고 있지 않음

나. 기관별 분석

1) JICA (일본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가)특성 : 철저한 사업위주 편제
부서명을 보면 수행업무내용 파악가능

나)분석

- 18부(78과) 2실, 부속기관(연수센터) 12개, 국내지부 9개
 - 기획 및 지원업무 : 총무부, 인사부, 경리부, 기획부, 조달부
 - 사업담당 : 연수사업부, 사회개발조사부, 사회개발협력부,
의료협력부, 국제간금원조대 사무국,
농림수산개발협력부, 임업수산개발협력부,
광공업조사부, 광공업개발협력부,
무상자금협력업무부, 무상자금협력조사부,
이주사업부,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
- 해외사무소 : 51국

※ 조직표 (첨부 2 참조)

다)인원 : 1,158명('94. 4 현재)

- 임원 : 12명
- 본부 : 602명
- 부속기관 : 155명
- 국내지부 : 46명
- 해외사무소 : 303명

라)예산('94) : 172,604백만 엔

2) CIDA (캐나다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가) 특성

- 9명의 부총재(수석부총재 별도)가 지역 및 사업 관장

- 지역부서, 사업부서, 기획 및 지원부서로 편제

나) 분석 : 총재, 수석부총재 1, 부총재 9, 국장 2, 부장 11

- 원조 PROGRAM 담당 5국, 서비스담당부서 6국

- 기획 및 지원부서 : 총무부, 고용 및 개발정책부,

- 원조전략발굴부, 감사 및 평가부, 정책조정부,

- 지역협력부, 조달부, 계약부, 법무담당관

- 재정정책운영부, 재정관리부, 정보정책지원부,

- 대외정보전략부, 인사운용부, 조직계획개발부,

- 행정지원부, 기획부, 홍보매체관리부,

- 홍보제작부, 기획조정부

- 지역담당 : 아프리카중동담당국, 아시아담당국, 미주담당국

- 사업담당 : 산업협력부, 기관협력부, NGO부, 국제NGO부,

- 재정기구부, 다자기술 협력부, 식량원조부,

- 국제인도주의원조부, 기획협력부,

- 사회간접 시설부, 천연자원부,

- 사회인력자원개발부, 환경부, 관리자문부

- 해외사무소 : 50여국

※ 조직표(첨부 3 참조)

다) 인원('92. 3) : 1,050명 (해외근무직원 200여명 포함)

라) 예산 : 1,843백만\$('96)

3) USAID(미국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특성

- AID는 조직편제상 독립(independant)되어 있으나, 실제로 국무성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원조지침(Guidance and Direction)을 제시하고, AID는 이런 방침에 따라 원조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Administrator(처장)의 관할하에 업무를 3개 그룹으로 분류

나)분석

- AID의 기구는 3개 그룹과 그 밑에 지역국 및 행정담당국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처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비롯한 6실이 있음
- 기획 및 지원담당 : 행정실(감사실, 법무담당관실, 홍보실, 입법담당국, 기획균등담당관실, 소규모취약기업지원실)
정책담당그룹(정책기획실, 국제공여계획실, 정책분석자원실, 개발정보평가원)
- 지역담당 : 아프리카국, 근동국, 구주국, 아시아국, 라틴아메리카국
- 사업담당 : 연구개발국, 식량 및 인도적 원조국, 민간기업국
- 재무행정담당그룹 : 7개의 실과 3개의 스태프로 구성
- 해외사무소 : 49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형적인 해외사무소는 통산 30여명이상의 직원이 주재

※ 조직표(첨부 4 참조)

다)인원 : 정식직원 3,413(본부 약 1,700, 해외 1,700)

해외현지고용인 1,004명

라)예산 : 6,475백 만불('93)

4) AusAID(호주 :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특성

- 지역부서, 사업부서, 기획 및 지원부서로 편제

나)분석

- 3실 9부 37과, 국내지역사무소 6, 국제훈련원, 유관연구기관 2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개발경제센터)

- 태평양지역 양자간사업 및 국제기구 사업실

PNG부 : PNG과, 태평양경제정책과

남태평양사업 및 유학사업부 : 태평양도서국 1,2과,
유학생초청과

국제기구사업부 : 통계과, UN과, 개발은행과, 홍보과

- 국제훈련원(ACPAC)

- 기획·개발지원실

정책부 : 정책개발과, 국제정책과, 기획·예산과

양자간 프로그램개발·평가부 : 프로그램개발과, 환경과,
개발조정과, 사후평가과, 여성·건강·인구과

총무부 : 경리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전산과, 관리과

- 아시아 아프리카 양자간사업 및 지역사회사업실

동남아시아부 : 인니·말련과, 인도차이나과,
필리핀·ASEAN과, 태국·버마과

지역사회사업부 : NGO과, 난민·재난구조과, 혼합신용과

아시아 아프리카 사업 및 식량원조부 : 극동과, 아프리카과,
동아시아·중동·인도양국과, 식량원조과

- 해외사무소 : 21국

※ 조직표 (첨부 5 참조)

다)인원 : 546명(ACPAC 미포함)

- 본부 400명, 국내지역사무소 100명, 해외사무소 46명,
ACPAC 29명

라)예산 :

4) ODA (영국 : 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

가) 특성

- ODA는 영국 외교 영연방부(FCO)내의 조직 (산하기관이 아님)
- 지역부서, 사업부서, 기획 및 지원부서로 편제
- 인력운용상 특성
 - Geographer(지역담당직원) 및 Professional Advisor가 조직의 핵심
 - Geographer는 각국별 원조전략수립, 사업결정, 사업관리등을 담당
 - Professional Advisor는 사업위탁책임(Contracting-out Responsibility)을 갖고 있음
 - Professional Advisor는 국별 원조전략수립, 분야별 정책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 Manual 작성, Project 계획 및 심사, TOR 작성등에 관한 Geographer의 의사결정에 조언하거나 업무를 직접 실시
 - 행정직원은 지역간 업무 → 다자간 업무 → 중앙정책기능 및 기타 부서로 매 2년마다 순환보직시켜 Generalist로 육성

나) 분석

- ODA담당 Minister는 외교부장관을 보좌하는 4명의 minister중의 1인이며, Permanent Secretary(1명), Deputy Secretary(1명), Undersecretary(9명)의 보좌를 받음
- Undersecretary 이하의 하부조직은 Division, Department, Unit 또는 Section등으로 구성
-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Division은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국 : 중남아프리카부, 동아프리카부, 북아프리카 및 중동부
 - 아시아.태평양국 : 동아시아 및 태평양부, 남아시아1부, 남아시아2부
 - 국제국 : EC 및 식량원조부, 국제경제기구부, UN 및 영연방부
 - 동구국 : 공동지원실, EBRD부

- 해외인력국 : 해외임명 및 계약부, 해외연금부, 라틴아메리카부
- 총무.인사국 : 인사 및 기구부, 정보 및 긴급원조부, 전산실,
경영평가실, 의료 복리후생실, 보안실
- 재정국 : 원조정책부, CDC 및 Crown Agent부, 평가부, 재정부,
회계부, 감사실
- 경제국 : 원조경제부, 다자간경제부
- 농림수산물국 : 농림수산물 및 환경부
- o 해외사무소 : 7국

※ 조직표(첨부 6 참조)

다)인원 : 1,600명

- 본부 1,100명(런던 600, 스코트랜드 500)

해외사무소 100명, 산하기관 400명

라)예산 : 3,571백만\$('95)

※ 참고 : 우리나라 외무부 직제 : 기획 및 지원업무, 지역업무 및 공통업무
(일반조직의 사업에 해당)의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기획부문 : 기획관리실(재외공관담당관), 외교정책기획실, 의전장실
- 지역담당 : 아시아태평양국, 미주국, 구주국, 아중동국
- 공통업무 : 국제연합국, 조약국, 국제경제국, 통상국, 문화협력국,
재외국민영사국
- 재외공관 : 140개(대사관 99, 대표부 4, 총영사관 37)
- 외교안보연구원
-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협회

※ 조직표(첨부 7 참조)

3. 정비방향 및 분장업무

가. 정비방향

1) 예산 및 사업규모확대에 대비

- 예산배분(목표연도 : 2000년)
 - 사업별 예산배분
- 사업발굴체제 강화
 - 사업개발전담과 신설
- 사후평가 강화
 - 심사평가전담과 신설

2) 원조효과 극대화 도모

- 수원국 경제개발계획 고려
-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업무수행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본부와 지역사무소, 본부내 지역부서 및 사업부서간 상호보완

3) 국제협력업무 전문인력양성

- 해외지역사무소를 통한 수원국 사정에 정통한 국가전문가 양성
- 해외지역사무소 근무자로 구성된 지역부서에서 사업추진
- 사업부서 확대 설치로 사업별 전문가양성

나) 분장업무

- 1) 총무부서 : 협력단의 인사, 서무, 경리에 관한 사항 및 직원교육 및 조달업무
- 2) 기획부서 : 협력단의 종합적 정책입안, 기획, 업무조정, 예산안 수립 및 예산관리, 사업평가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경제지원 정책개발, 장기사업계획수립, 규정 및 지침등의 제정등 전체적인 협력단 사업의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 3) 지역부서 : 각국별 원조전략수립, 담당지역 및 국가의 협력단 사업의 업무 총괄, 사업승인 및 담당지역내 사업에 관한 각종 약정체결, 소관 사업예산의 작성제출, 해당지역내 추진사업에 관한 실적파악, 각종약정 및 계약의 검토
- 4) 사업부서 : 지역부서가 추진하는 각 사업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사업별 정책방안제시, 업무 Manual, R/D및 TOR 작성에 대한 조언제공
- 5) 조사홍보부 : 수원국의 경제, 사회개발에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분석 제공 및 국민의 지지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업무
- 6) 지역사무소 : 주재국에 대한 한국의 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등의 추진을 위한 재외아국공관 및 주재국 정부와의 업무조정 및 협조
- 7) 국제협력연수원 : 본부의 계획에 의한 초청연수생과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참고 : PROJECT 실시 부서간 협조 체제 (예)

- 사업명 : 이디오피아 농촌지역 식수개발 사업
 - 지역사무소 : 주재국 정부와 협의하여 사업발굴, 파견전문가와 사전조사 실시, 사업추진실적 파악
 - 지역부서 : 수요조사, 사업결정 및 사업추진 전략수립, 사업실시 계획수립(예산포함), 사업집행(기자재 공여,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 사업부서 : 전문기관 접촉 및 Project 구체화 작업, 전문가 추천, 연수생교육계획수립, 필요기자재 파악

4. 조직표(안)

※ 고려사항

가. 업무량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중 총무이사와 기획이사를 총무기획이사로, 지역담당이사 1,2를 지역담당이사로, 사업담당이사 1, 2, 3을 사업담당이사로 하여 운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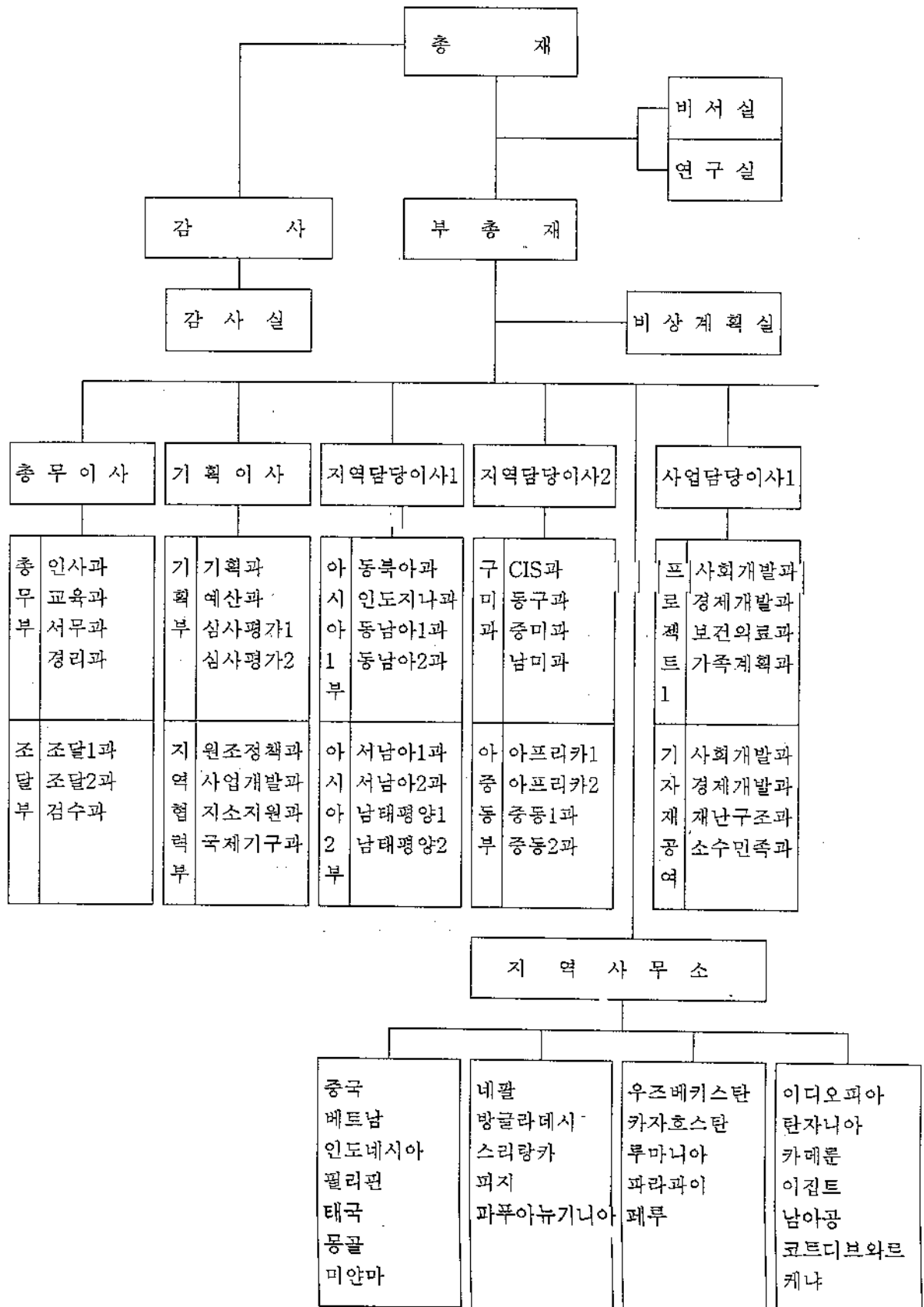
나. 홍보조사이사 및 국제협력연수원장을 현행 국장(1급)급으로 운용가능

다. 지역사무소장을 부장(2급) 또는 차장(3급)으로, 부소장은 과장(4급), 대리(5급)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직 운용가능

(첨부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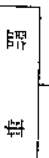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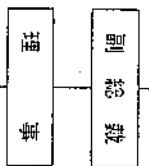
<첨부1>

KOICA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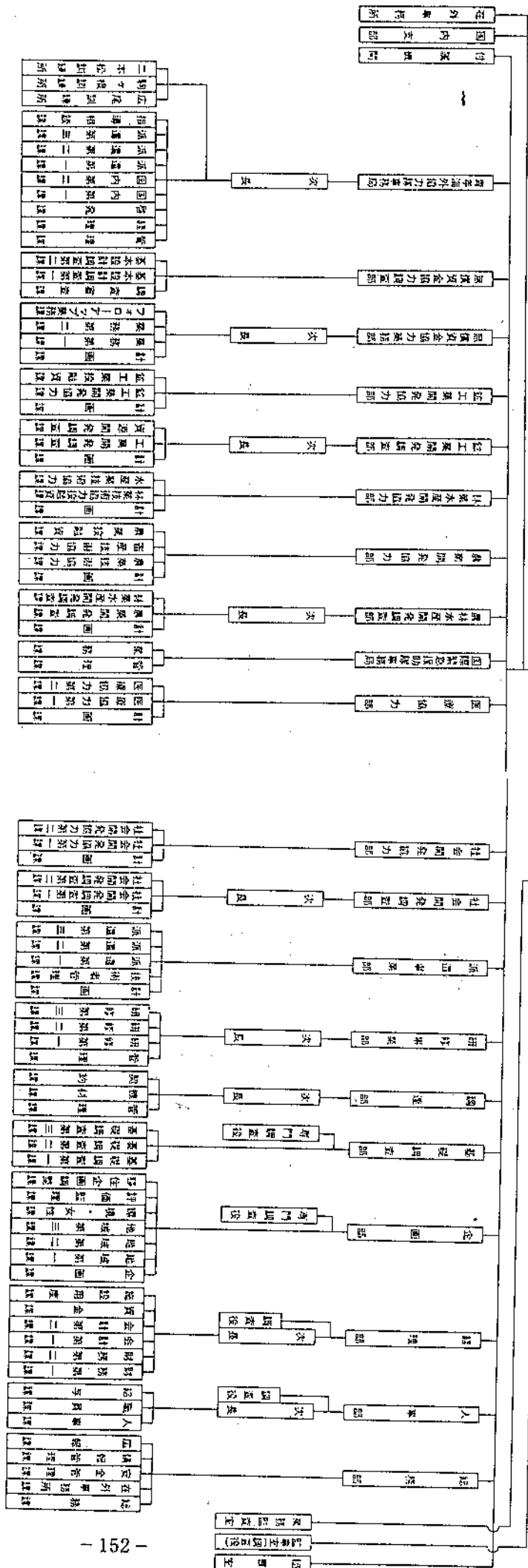


사업담당이사2		사업담당이사3		조사홍보이사		국 제 협 력 연 수 원			
프 로 젝 트 2	산업개발과 농림수산과 교육개발과 민간협력과	초 청 사 업 부	연수기획과 일반연수과 국별연수과 공동연수과	연 구 조 사	연구기획과 조사통계과 전산과	총 무 부	서무과 경리과 숙식관리과 산업시찰과	교 육 부	교육계획과 교육관리과 교육훈련과
개 발 조 사 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과 농림수산과 광공업과	파 견 사 업 부	파견인력과 봉사단과 의료단과 공익요원과	홍 보 부	홍보1과 홍보2과	기 획 부	기획과 예산과 사업평가과 교수과	훈 련 부	훈련계획과 국내훈련과 국외훈련과

付屬機關	155人
國內支部	46人
在外事務所	303人
職員數計	1,158人



本部 654人



在外事務所 303人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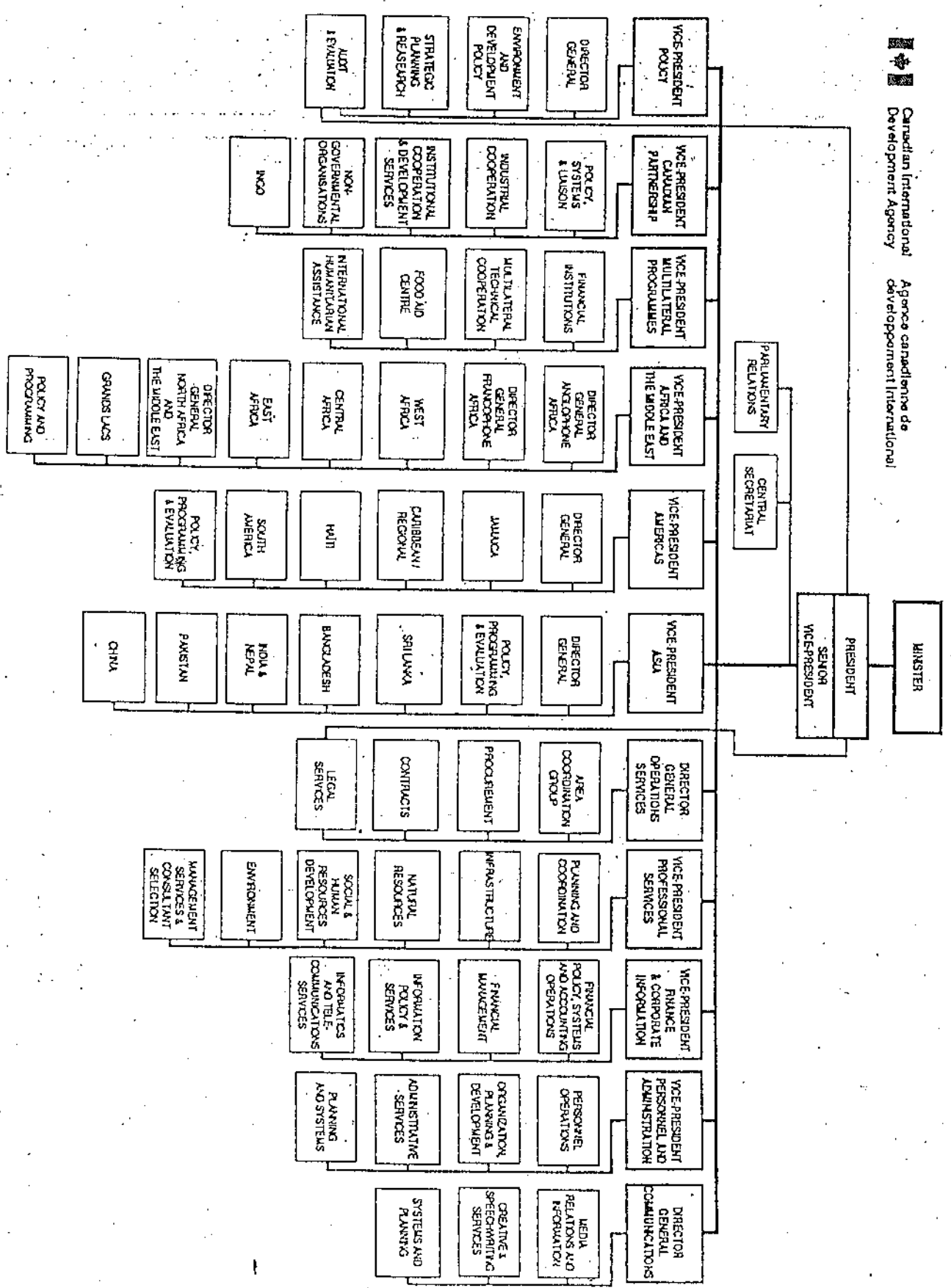
付属機関 155人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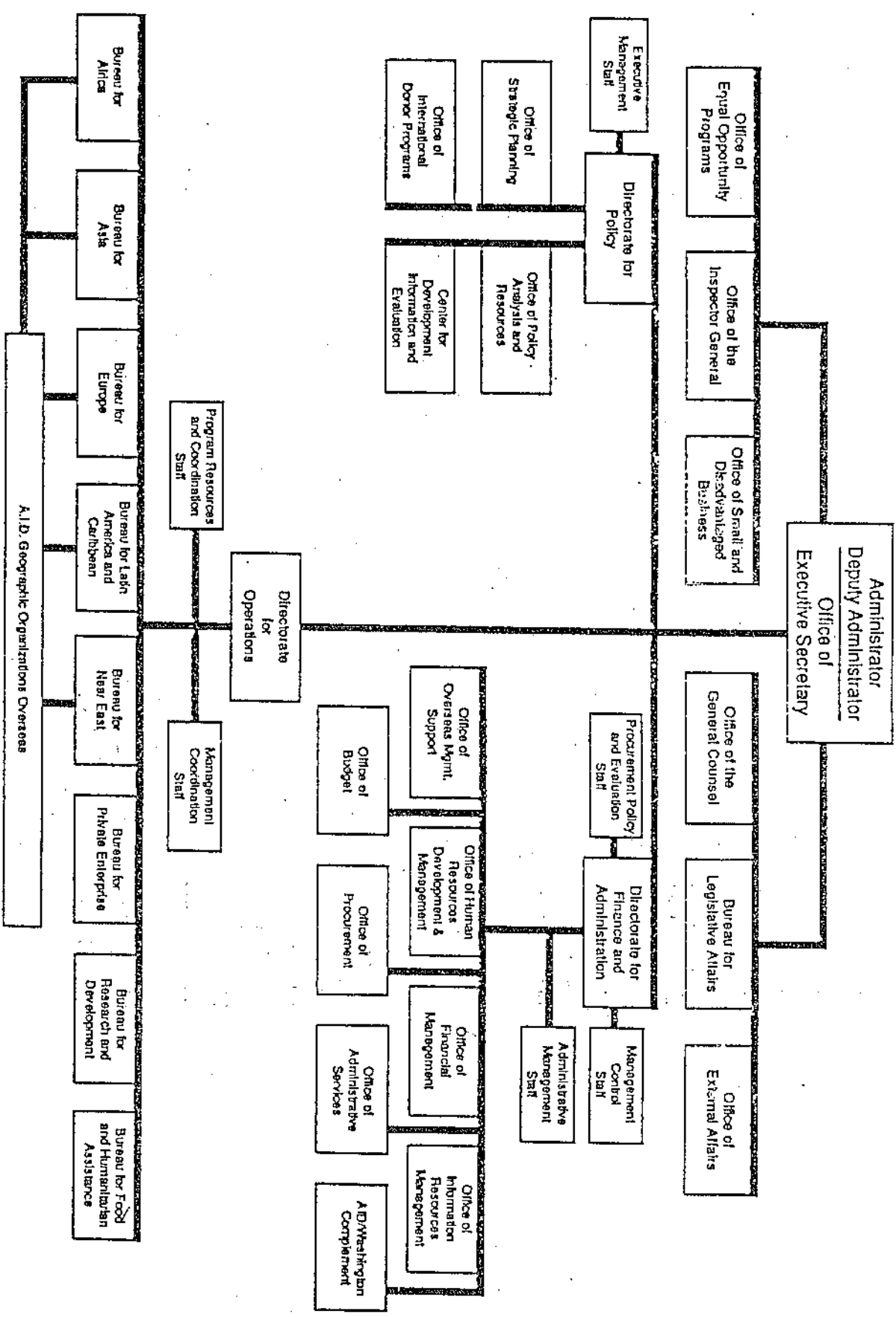
国内支部 45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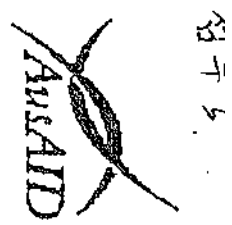
北	海	南	支	部
東	北	支	部	
南	東	支	部	
北	海	支	部	
西	支	部		
中	國	改	部	
西	國	支	部	
四	國	支	部	
九	州	支	部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Agence canadienne de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nvelope 11 March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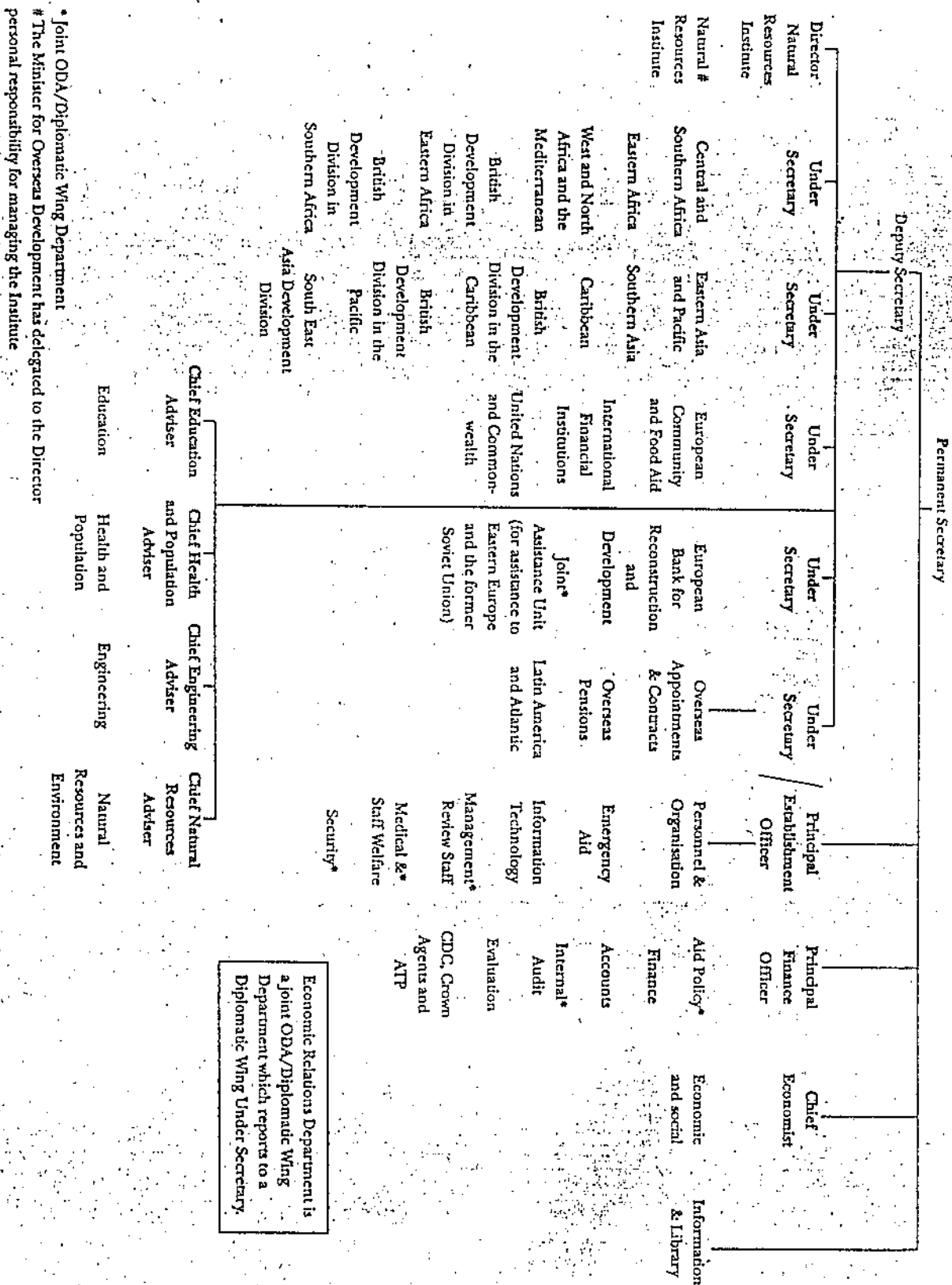
DIRECTOR GENERAL (DG)
Trevor Kinsley (4481)
(Mobile 019 442113)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ODG)
Executive Office (4015)
Executive Assistant (4021)
Executive Assistant (4021)
Executive Assistant (4021)

USAID House Station 228 4000
Tel: 228 4000
Fax: 228 4880
Director's Sec

ASIA, AFRICA & COMMUNITY PROGRAMS DIVISION (A40)			COOPERATIVE DEVELOPMENT & SUPPORT DIVISION (A02)			PACIFIC & INTERNATIONAL PROGRAMS DIVISION (A07)				
Deputy Director General	Peter McCann	(4002)	Deputy Director General	Deborah Stiles	(4004)	Deputy Director General	Bruce Davis	(4004)		
Principal Assistant	Richard Smith (A41)	(4072)	Principal Assistant	Deborah Stiles	(4024)	Principal Assistant	Pete Wade	(4006)		
Program Support Services II (A05)			Lucy MacCollin (A45)	(4007)	Program Support Services I (A05)			Granny McNeill	(4007)	
ECONOMY, CHINA AND BUSINESS BRANCH (A03)			ENVIRONMENT, ISSUES & COOPERATION & POLICY (A03)			PACIFIC NEW GUINEA (A03)				
Assistant Director General	Ken Anderson	(4012)	Assistant Director General	Peter Zoller	(4028)	Assistant Director General	Murray Proctor	(4011)		
China and Central Asia Section (A04)	Peter Johnson (A46)	(4003)	Policy Development Section (A03)	Francine Bockle	(4003)	Economy & New Development	Ken Hill	(4003)		
Business Section (A04)	Gwen Miller	(4004)	International Policy & Information	Jillie Hamilton-House	(4014)	Business (A03)	David (A03)	(4013)		
Business Cooperation Section (A04)	Rose Hill	(4004)	Services Section (A04)	Ludovic Norton	(4012)	Pacific Economic Policy Section (A03)	Richard Moore	(4014)		
EAST ASIA BRANCH (A03)			Editorial Correspondence	Loiselle Bous	(4017)	Social Development Section (A03)	John Caldwell	(4001)		
Assistant Director General	Luigi Engel	(4005)	Editorial & Publications Unit	Loiselle Bous	(4017)	INTERNATIONAL, CROSS AGENCY & SPECIAL AFFAIRS (A03)				
Urban Section (A05)	Robert Oliver	(4011)	Corporate Planning, Budget & Communications	Peter Weng	(4029)	Assistant Director General	Alfreda Richardson	(4012)		
Corporate and Land Section (A05)	Robert Smith-Carter	(4017)	SECTION: POLICY & RESEARCH (A07)			Public Affairs Section (A04)	Doreen Whitaker	(4002)		
Regional, Urban and East Asia	Kai Datta	(4011)	Assistant Director General	Michael Cameron	(4008)	Development Policy Section (A05)	Elmer Bayler	(4013)		
Public and Asia Unit	Wendy Preston	(4015)	Environment, Agriculture and	Paul Phangon	(4009)	Social Analysis and Research	Barbara Ray	(4014)		
SOUTH ASIA, AFRICA AND HUMANITARIAN RELIEF BRANCH (A04)			Physical Infrastructure Section (A04)	Alison Stoddart (A46)	(4009)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Alison March	(4017)		
Assistant Director General	Colin Livingston	(4007)	Human & Population Section (A04)	John Kerr-Swain	(4009)	Programme Section (A07)	SOUTH PACIFIC & TROUBLESHOOT (A07)			
South Asia and Middle East Section (A04)	Rose Bownard	(4072)	Gender Education and	Elizabeth Browne	(4020)	Assistant Director General	John Wain	(4005)		
Africa and Other Regional Programs	Jill Mayne	(4072)	Section (A04)	FINANCIAL & RESOURCE MANAGEMENT (A04)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South Asia Section (A04)	Deborah Smith	(4003)	Assistant Director General	Al O'Brien (A46)	(4019)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Humanitarian Relief Section (A04)	Colin Walker	(4003)	Finance Section (A05)	Wendy Wain	(4003)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ADDITIONAL SERVICES & ROLES - ASIA AND AFRICA (A05)			Refugee and Personnel	Rodney Tisdale	(4004)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David Bown (A07)			Management Section (A05)	Kerry Kennedy	(4004)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Personnel Development Section (A05)	Rob Wain	(4019)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Information Technology Section (A05)	ADDITIONAL SERVICES & ROLES - PACIFIC DEVELOPMENT AND TRAINING (A04)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David Bown (A07)	(4019)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Services Section (A05)			Public Affairs Section (A04)	John Davidson	(4019)		

612 The ODA headquarters is in two locations: in London, and in East Kilbride. There are also five regional offices, known as Development Divisions, located in Kenya, Malawi, Thailand, Fiji and Barbados. In addition, there are 440 staff at the Natural Resources Institute, which is the scientific agency of the ODA.



목 차

1.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의의	161
가. 의의	
나. 기본전제	
2. 협력단 설립후 인력수급 추이	161
가. 인력변동	
나. 조직개편	
다. 조직 및 인력현황	
3. 외국원조기관의 인력,조직현황	164
가.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나. 기타 원조기관	
다. 우리와의 비교	
4.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166
가. 예산 및 사업규모의 확대	
나. 조직의 발전방향	
다.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5. 요약 및 결론	169

1.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의의

가. 의의

-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ODA), 특히 양자간 무상원조의 급속한 확대는 필연적 추세로 보인다.
 -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OECD DAC 가입 등과 맞물려 우리 ODA 예산은 매년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기대된다.
- 이러한 ODA 확대에 대비하여 협력단의 향후 인력수급 운용을 고찰해 보았는 바, 운영정원 설정, 인사관리 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나. 기본전제

- 본 보고서 작성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기본전제로 하였다.
 - 기간에 있어 중기는 향후 3~4년후인 2000년까지, 그리고 장기는 그 이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보고서는 2000~2005년간의 인력소요 예측을 목표로 하였다.
 -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전산화, 정보화 등으로 인한 省力化는 객관적 계산이 어려우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 92.2.1 설치된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사무소 직원(현재 30명)은 본 수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직급과 직위는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과장'은 모두 '4급 과장'임을 전제로 하였다.
- 적정 소요인력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장기간에 걸친 직무분석을 통해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다. 외국과의 1인당 ODA나 행정비의 비교가 손쉽고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직원 1인당 ODA 비교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2. 협력단 설립후 인력수급 추이

가. 인력변동

- 91.4.1 협력단 설립시 구한국해외개발공사 직원 146명, 한국과학재단 직원 3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직원 9명 등 158명과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 정부부처 파견공무원 18명을 합하여 모두 176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 91.7.1 기능직 16명을 채용하였고 91.12.1 연구직, 간부직 및 대졸 신입직원 등 47명을 공개채용하여 91년말 직원수가 246명이 되었다. 92~93년에는 직원 신규채용이 없었고 94.12.1 대졸신입직원(6급) 19명, 95.7.10 역시 6급 12명을 공개채용하였고 95.12.7 다시 12명을 보강하였다.
- 이러한 인력변동 추이를 보면 협력단 설립연도인 91년 대폭적인 충원이 있는 후 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30~250명 선에서 직원수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직원수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협력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예산, 사업물량 및 인원증가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규모의 확대에 비해 직원수 증가율이 미미함을 볼 수 있다.

<표-1> 협력단 예산, 사업규모 및 인원증가 비교

구 분	'91	'92	'93	'94	'95
연간예산 (억원) <증가율>	195	237 <22%>	265 <36%>	318 <63%>	380 <95%>
Project사업(백만원) <증가율>	594	844 <42%>	2,508 <322%>	4,846 <716%>	7,742 <1203%>
개발조사 (백만원) <증가율>	35	990 <2729%>	2,106 <5917%>	2,911 <8217%>	2,420 <6814%>
연수생초청 (명) <증가율>	362	461 <27%>	459 <27%>	716 <98%>	870 <140%>
전문가파견 (명) <증가율>	36	47 <31%>	54 <50%>	69 <92%>	72 <100%>
봉사단파견 (명) <증가율>	37	52 <41%>	56 <51%>	59 <59%>	78 <111%>
의사, 태권사범 (명) <증가율>	32	36 <13%>	41 <28%>	33 <3%>	35 <9%>
직원수 (명) <증가율>	246	236 <△ 4%>	224 <△ 9%>	243 <△ 1%>	251 <2%>

- ※ 1. 증가율은 1991년 대비 증가율을 표시.
 2. 직원수는 매년도말 현재 인원총수이며 사업중 인력소요가 비교적 적은 '기자재공여'는 제외하였음.

나. 조직개편

- 협력단 설립시 조직은 총재, 부총재, 감사, 4명의 이사에 1실, 2국, 8부, 31과로 구성되었고 산하기관으로 지원사업단과 카나다, 알젠티 2개의 해외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협력단 설립후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조직변동이 있었다.

<표-2> 협력단 조직개편 추이

구 분	1 차	2 차	3 차
조직 개편일	'92. 1. 7	'93. 1. 1	'94.11.10
개편 범위	소 폭	소 폭	대 폭
개편 내용	· 지역사무소 정비 · 해외이주신고업무 추가	· 개발조사부 신설 · 취업부 폐지 · 사업지원처 본부 편입	· 기능위주 조직을 지역·기능 복합 편제로 개편
개편후 직제	· 총재, 부총재, 감사 4이사, 1실, 2국, 8부, 31과 · 지역사무소 2개	· 총재, 부총재, 감사 4이사, 1실, 1처, 2국, 11부, 34과 · 지역사무소 5개	· 총재, 부총재, 감사 4이사, 2국, 4실, 9부, 34과 · 지역사무소 6개

- 현직제는 3차 조직개편의 결과이며 이를 협력단 설립당시와 비교해 보면 1부 3과가 늘어난데 그쳐 사업물량 확대에 비해 조직 역시 별로 확장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 조직 및 인력현황

- 협력단의 현 직원수는 파견공무원(설립초기의 18명에서 현재 7명으로 줄었음)을 포함하여 모두 251명이다.
- 협력단 직제규정 제9조(정원)와 동 별표 2에는 협력단 본부, 분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의 직제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동 직제정원에 근거하여 협력단은 부서별, 직종별 운영정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운영정원에 따라 승진, 채용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 매년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 예산에 근거한 예산정원은 220명으로 협력단 설립당시에 비해 변동이 없는 상태인 바, 현 직원수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 상기의 직제정원과 예산정원을 현 인원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직제정원, 예산정원 및 현인원 대비

구 분	직제정원	예산정원	현인원	비 고
총 재	1	1	1	
부 총 재	1	1	1	
감 사	1	1	1	
상근이사	4	1	4 (1)	
국장	2	2	3 (2)	
부장(수석연구원포함)	15	6	16 (13)	
차장(책임연구원 ")	21	9	20	
과장(선임연구원 ")	54	30	62	
대리(연구원 ")	73	48	36	
6급(보조연구원 ")	113	55	56	
7급직원	30	15	31	
기능 1종	25	23	14	
기능 2종	60	28	6	
합 계	400	220	251 (244)	

- ※ 1. 예산정원에 파견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음.
 2. 현인원에서 ()안은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숫자임.
 3. 과장(직)도 과장에 합산.

- 상기 현인원의 직제정원과의 비교에서 대리급 이하의 하위직 숫자가 직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실무의 중추인 대리와 6급직원이 직제정원의 1/2에 불과하여 사업확대의 애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전산화로 인해 단순 기능업무가 줄어들고 중·상위 직급자도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실무직의 비율은 더 높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외국원조기관의 인력·조직현황

가.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 해외기술협력단과 해외이주사업단을 통합, 양기관을 모태로 하여 1974년 발족한 JICA는 처음부터 과다인력을 보유한 상태로 출발하였으며 기존직원의 계속적인 재훈련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다.
- 95년 현재 JICA 조직은 18부, 2실, 2사무국의 본부와 13개소의 부속기관, 8개소의 국내지부 및 53개소의 재외사무소로 구성되고 총직원수는 1,184명으로 설립당시에 비해 19% 증가한데 불과하다. JICA 인력변동 추이는 다음표와 같다.

<표-4> JICA 예산 및 직원수 변동추이

구 분	'74	'80	'85	'90	'92	'93	'94	'95	비 고
예산 (억엔)	272	628	953	1,33	1,52	1,63	1,72	1,79	
정원 (명)	994	981	968	1,03	1,09	1,12	1,15	1,18	
직원 1인당 ODA (천\$)	93	283	413	89	1,09	1,26	1,45	1,49	

- JICA 직원수의 변동은 크지 않았으며 직원 1인당 원조액수가 매년 증대되어 최근 약 \$1.5 MIL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나. 기타 원조기관

OECD DAC 회원국중 별도 원조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원조전담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연간 ODA 규모 \$97억('93)에 90개의 해외사무소를 가진 USAID는 1960년대말에서 70년대초 1만8천명의 정식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직원수가 계속 감축되어 왔다. '94.9.30 현재 9,700명 (본부 2,400 + 해외 7,300) 이며 더 감소추세이다.
- ②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연간예산이 \$953 MIL('92)인 AusAid는 3실, 9부, 37과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6개의 국내지소와 22개의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546명이다.
- ③ 영국 해외개발청(ODA): 산하의 자연자원연구소 직원 445명을 포함, 1천7백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ODA의 93년 예산은 \$2,908 MIL이다.
- ④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총 직원수는 1,050명(이중 해외 200명)이고 연간 ODA 집행액이 \$2,373 MIL이다.
- ⑤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총 직원수 280명(본부 202, 해외 78)에 12개 지사를 보유하고 연간 ODA는 \$1,014 MIL이다.
- ⑥ 핀란드 국제개발청(FINNIDA): 직원수 130명에 ODA 예산이 \$355 MIL이다.
- ⑦ 벨기에 개발협력청(AGCD): 직원수 338명에 ODA 예산이 \$808 MIL이다.
- ⑧ 포르투갈 협력단(IPC): 직원수 300명에 ODA 예산이 \$246 MIL이다.

다. 우리와의 비교

- 앞서 살펴본 각국 원조기관의 직원 1인당 ODA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각국 원조기관 직원 1인당 ODA 비교

원조기관	1인당 ODA	원조기관	1인당 ODA	비 고
일본 JICA	\$ 1.5 MIL	노르웨이 NORAD	\$ 3.6 MIL	
미국 USAID	1.0 "	핀란드 FINNIDA	2.7 "	
호주 AusAid	1.7 "	벨기에 AGCD	2.4 "	
영국 ODA	1.7 "	포르투갈 IPC	0.8 "	
캐나다 CIDA	2.3 "	한국 KOICA	0.2 "	

-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협력단의 1인당 원조액수가 타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직원수가 과다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협력단 역사가 일천하고 예산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 주력사업이 인력소요가 많은 기술협력, 프로젝트사업인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형태, 수행체계 등 여러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 JICA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JICA 설립후 5년째인 '79년 직원1인당 ODA(\$440천)와 비교할 경우 협력단의 현인원이 크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4.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가. 예산 및 사업규모의 확대

- 협력단의 인력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는 역시 예산의 증대와 그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대가 될 것이다. 사업물량 증대에 따라 원조행정 전담인력인 협력단 직원수가 늘어야 하고 해외지소도 증설되어야 한다. OECD 및 DAC 가입 등 내외여건을 반영하여 협력단 예산증가를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표-6> 양자간 무상원조(협력단 예산) 확대전망

구 분	'96 예산	'97	'98	'99	2000
경상 GNP (억불)	4,849	5,616	6,480	7,427	8,436
ODA / GNP (%)	0.1	0.13	0.15	0.18	0.2
ODA (백만불)	481.6	730.1	1,027.	1,336.	1,692.
양자:다자원조	69:31	70:30	70:30	70:30	70:30
양자원조(백만불)	330.9	511.1	719.0	935.8	1,184.4
유상:무상원조	81:19	55:45	53:47	52:48	50:50
무상원조(백만불)	62.1	230.0	337.9	449.2	592.2
'96예산과의 비교	100	370	544	723	954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 GNP (억불)	9,212	10,060	10,986	11,997	13,101
ODA / GNP (%)	0.22	0.24	0.26	0.28	0.3
ODA (백만불)	2,026.6	2,414.4	2,856.4	3,359.2	3,930.3
양자:다자원조 양자원조(백만불)	70:30 1,418.6	70:30 1,690.1	70:30 1,999.5	70:30 2,351.4	70:30 2,751.2
유상:무상원조 무상원조(백만불)	50:50 709.3	45:55 929.6	40:60 1,199.7	35:65 1,528.4	30:70 1,925.8
'96예산과의 비교	1,142	1,497	1,932	2,461	3,101

※ 2000년까지는 외무부의 ODA 확대경로(안)을 참고하였고 2001~2005년은 KDI의 경상 GDP 성장을 연 9.2%를 적용.

- 상기 표와 같이 협력단예산은 매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에는 1996년의 9.5배, 2005년에는 31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조직의 발전방향

- 예산 및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이에 부응하는 조직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의 개편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직급별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 보고자 한다.
- 본부 조직이 현재의 11부서에서 2000년까지는 16부, 2005년까지는 18부 이상으로 확대 요망된다 (93.11월 발간된 '협력단 중장기발전방향' 및 JICA 조직참조). 프로젝트사업, 파견사업 등을 지원·조정하는 부서, 사업평가부서, 해외지소 관리부서 등의 신설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해외봉사단 사무국과 종합연수소가 별도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지소는 96년의 15개(주재원사무소 포함)에서 매년 4개 정도씩 늘려 2005년까지 선진국수준인 50개로 증설이 필요하다 (JICA 지소 52개, USAID 90개)

<표-7> 협력단 직제의 확대전망

구 분	1996	2000	2005
조 직	총재, 부총재, 감사 4이사, 2국, 4실, 11부, 34과	총재, 부총재, 감사 7이사, 2사무국, 실, 16부, 50과	총재, 부총재, 감사, 10이사, 2사무국, 5 실, 18부, 56과
해외지소	15	33	50

다.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 이제 예산·사업규모·조직의 확대에 따른 소요인력을 전망코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직원 1인당 ODA의 비교가 적정인력산출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JICA 설립후 22년이 경과한 1995년도의 직원1인당 ODA는 약 \$1.5 MIL이며 이를 협력단 설립후 9년째가 되는 2000년도 소요인력산출의 기준치로 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000년 이후에는 동 기준치를 매년 15%씩 상향조정 (JICA 직원 1인당 ODA의 연평균 상승율이 15%임), 2005년에는 \$3 MIL을 기준으로 협력단 직원소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표-8> 중장기 인력소요전망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 고
KOICA예산(백만불)	592.2	709.3	929.6	1,199.	1,528.	1,925.	
1인당 ODA (")	1.5	1.7	2.0	2.3	2.6	3.0	
적정 직원수 (명)	395	417	465	522	588	642	

- 협력단 직원총수가 현 251명에서 향후 4년후인 2000년까지는 57% 증가한 395명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약 640명으로 증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JICA 설립당시 인원 994명의 2/3 수준이다)
- 상기의 직원총수 범위내에서 직급별로도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단의 전체 직급은 기능직을 별도로 하고 실무직(대리 및 6,7급 직원), 중간관리자(차장, 과장), 상급관리자(임원, 국장, 부장)의 세그룹으로 대분할 수 있다. 현인원을 위와 같이 분류하면 상급관리자:중간관리자:실무직의 비율이 약 1:3:5가 되는 바, 동 비율은 2000년까지 1:3:9 정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선된 비율에 따라 2000년과 2005년의 직원소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직급별 인원소요전망

구 분	1996	2000	2005	비 고
상급관리자 · 임원 · 국장 · 부장	26 (10%) 7 3 16	28 (7%) 10 2 16	45 (7%) 13 2 30	
중간관리자 · 차장 · 과장	82 (33%) 20 62	83 (21%) 21 62	135 (21%) 54 81	

구 분	1996	2000	2005	비 고
실무자	123 (49%)	249 (63%)	404 (63%)	
· 대리	36	99	160	
· 6급직원	56	100	160	
· 7급직원	31	50	84	
기능직원	20 (8%)	35 (9%)	58 (9%)	
· 기능(1)	14	24	40	
· 기능(2)	6	11	18	
합 계	251 (100%)	395 (100%)	642 (100%)	

5. 요약 및 결론

- 원조기관의 적정직원수 산정에는 1인당 ODA의 비교를 통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사업형태, 조직체계 등 여러면에서 협력단과 유사점이 많은 JICA를 우리 인력산출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협력단 예산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매년 큰 폭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2000년에는 96년의 약 10배, 2005년에는 31배까지 확대가 기대된다.
- 예산이 증대되면 인력소요가 많은 기술협력사업들이 그 이상의 비율로 확대될 것이므로 협력단 직원수의 보강은 필수적이다.
- 일본 JICA의 95년도 1인당 ODA \$1.5 MIL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2000년 협력단 직원수는 약 4백명 소요 예상된다. 2005년에는 \$3 MIL을 기준으로 직원총수가 640명 정도 되어야 할 것이다.
- 상기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로도 적정구성(1:3:9)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포괄, 다음과 같은 중장기 인력수급(안)을 작성하여 보았다.

【협력단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안)】

구 분	현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이사	4	7	8	8	9	9	10
국장	3	2	2	2	2	2	2
부장	16	16	16	19	22	27	30
차장	20	21	25	28	30	45	54
과장	62	62	62	68	74	78	81
대리	36	99	99	108	124	141	160
6급직원	56	100	112	120	136	148	160
7급직원	31	50	50	60	70	80	84
기능(1)	14	24	26	31	34	37	40
기능(2)	6	11	14	18	18	18	18
합 계	248	392	414	462	519	585	639

※ 총재, 부총재, 감사는 불포함. (끝)

III. 기 타 분 야

J I C A 사 업

김 학 서 과 장

목 차

1. 서 론	173
2. 프로젝트 운영관리(PCM)기법의 개요	174
가. 역사 및 배경	
나. 구성과 특징	
다. 운용 및 효과	
3. JICA의 JPCM기법 운용 현황	178
가. PCM기법의 도입 배경	
나. JPCM의 운용 실태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80

1. 서론

개도국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1)가 갈수록 복잡하고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개도국 Needs에 적합한 프로젝트의 수립, 이의 효과적인 실시 및 객관적인 사후 평가는 더욱 중요시 되고있으며 이를위한 프로젝트 목표 및 수단에 대한 명문화와 명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 관리 기법이 원조 공여국(기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2년 JICA에서는 JICA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운영관리 기법(JPCM : JICA Project Cycle Management)을 개발 도입하였으며, 현재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사업(2)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PCM기법의 역사 및 JPCM기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서 KOICA 관련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참고를 위해 작성하였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일본 PCM기법 관련기관 및 JICA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
- (1) 프로젝트(Project): 일정한 예산과 기간내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FASID: 재, 국제개발 고등교육기구, 일본)
 - (2)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기자재공여등 3가지 협력형태를 합하여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기술협력(JICA)

2. 프로젝트 운용관리(PCM)기법의 개요

가. PCM기법의 역사와 배경

PCM(3)에 대한 방법론의 기초는 '60년대 후반 USAID가 개발한 Log Frame이라는 계획기법에서 시작되었다.

이기법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각각의 구성요소인 목적, 성과, 활동 및 투입등이 논리적으로 조합되어 있으며, '7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Log Frame의 개념과 용어가 UNDP, UNICEF등 국제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원조기관에 의해 연구 검토되었다.

'80년 초에는 독일 기술협력공사인 GTZ(4)가 Log Frame에 "참가형"이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목적지향형 프로젝트 일반기법(ZOPP)"(5)을 개발하였으며, 이기법의 개념은 그후 노르웨이 대외원조청(NORAD)(6), 덴마크, 아일랜드 및 스위스등 유럽원조기관이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ZOPP는 '90년초 ODA의 투명성 및 품질관리 향상수단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일본 (재) 국제개발고등교육기구(FASID)(7)가 도입, 주요 원조기관들의 동기법 실태조사 및 JICA로부터의 위탁조사 등을 통해 일본 현실을 고려한 "PCM 기법"으로 개발하였다. FASID는 현재 외무성 및 JICA등의 원조담당자를 대상으로 상기 PCM기법에 대한 연수(5 - 15일)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JPCM을 개발하여 JICA가 운용하고 있다.

(3) PCM : Project Cycle Management

(4) GTZ : 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5) ZOPP : Objectives Oriented Project Planning

(6) NORAD :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7) FASID :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1990년 3월 설립)

나. PCM기법의 구성과 특징

PCM기법은 참가형 계획기법(PP)(8), 심사 기법(AP)(9) 및 모니터링 평가기법(M&E)(10)등 3가지 기법으로 구성되며, 이3가지 기법은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PDM)(11)라는 통상 1매의 양식(표1참조)에 집약되어 양식상의 전제조건 및 외부조건을 기준으로 각항목에 대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작성된다.

<표 1> PDM 양식

프로젝트요약 (Narrative Summary)	지 표 (Verifiable Indicators)	지표 입수수단 (Means of Verification)	외부 조건 (Important Assumptions)
상위목표 (Over Goal)			
프로젝트 목표 (Project Goal)			
성 과(Output)			
활동(Activities)	투 입(Input)		
			전제조건(Pre-Conditions)

즉, 이러한 PCM기법은 프로젝트 전과정(발굴 및 형성, 조사, 심사, 실시 및 모니터링 평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두번째, "논리성"을 들수있다. 현실태와 문제점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통해 명확히 분석해 나감으로서 논리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 (8) PP : Participatory Planning
 (9) AP : Appraisal
 (10) M&E : Monitoring & Evaluation
 (11) PDM : Project Design Matrix

세째로는, "참가형"을 들수있다. 즉, 원조 공여자와 수혜자가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입안단계에서 부터 직접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사회적인 장해요인을 최소화 할수있으며 또한 수혜국(당사자,그룹)의 Needs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므로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와 지속성을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PCM기법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관리 기법중의 하나임을 고려할때 다수의 프로젝트 또는 개발분야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합치 않으며, 또한 원조의 내용이나 형태에 따라서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을수 있다.

다. PCM기법의 운용 및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PCM기법은 3가지 기법에 의해 구성되나, 여기에서는 PDM의 작성등 PCM기법의 핵심이라 할수있는 참가형 계획기법(PP)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참가형 계획기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프로젝트 입안시 현지(피공여측)에서 상대국 관계자와 Workshops(12)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Workshops에서는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양측 관계자들의 협의 내용이 Moderator(13)라는 PCM 기법 운용의 전문가에 의해 참가자 분석(14), 문제 분석(15), 목적분석(16) 및 프로젝트 선택이라고하는 4가지 분석단계를 거쳐 PDM 및 PDM에 의한 향후 활동계획(안)이 작성되게 된다.

-
- (12) Workshops: 양측관계자가 일정한 카드(20X10Cm)을 사용,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Moderator가 이를 정리하는, 당해프로젝트의 PDM 작성을 위한 합동회의
 - (13) Moderator: Workshops의 진행자로서 참가자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자
 - (14) 참가자분석(Participation Analysis): 원조대상지역의 주민,그룹 및 조직등에 대한 현황 및 특성분석
 - (15) 문제분석(Problem Analysis):입수 가능정보를 이용,대상지역과 분야의 현존 문제분석
 - (16) 목적분석(Objectives Analysis):문제해결 수단과 그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상기 분석단계를 통해 프로젝트가 입안됨으로서 이것이 기초가되어 향후 심사 및 모니터링 평가가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PCM기법의 운용은 원조 품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수있다.

결국 이러한 PCM기법이 활용될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프로젝트 싸이클 각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가능.
목표와 성과등이 명확히 설정됨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용 기반 확보
- 프로젝트 전체 개요 및 양측의 책임한계등이 논리적으로 명시됨으로 양측간 교섭시 상호 이해도 증진.
- 프로젝트 전과정이 명확해짐으로 ODA의 투명성 확보에 유효.
-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 축적됨으로 향후 이의 활용이 용이.
- 당해프로젝트에 대한 양측간의 공통적인 양식, 언어 및 개념이 도입됨으로 상호 의사전달 및 조정작업이 용이.

3. JICA의 PCM기법 운용현황

가. PCM기법의 도입배경

도입배경의 하나로 원조공여국(기관)의 원조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볼수 있다. 즉 원조 목적에 대한 전환으로서, 단순 경제 발전지원에서 개도국의 사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의 전환이며, 또한 단순한 기술, 지식 및 기능의 이전에서 기구 제도의정비, 정책검토 및 개발방법등 개도국의 능력 개발 위주 지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원조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의 인식이 라고 할수있다. 당해프로젝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개인,그룹 및 조직 등에 대한 실태 및 의향을 우선 파악하며, 목표달성도에 대한 측정방법 및 수단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전술한바와 같이 PCM기법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볼수 있다.

나. JPCM의 운용 실태

JICA는 동 PCM기법을 전사업에 적용코자 하며, 적용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우선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사업을 대상으로 1993년 현재 약 30건에 대해 이를 적용한바 있으며 이에따른 JICA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93.현재: 초급 235명, 고급 2명), 관련 규정 및 지침등을 개정중에 있다.

그러나, 동 기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해결되어야할 부분도 적지않다.

JICA는 이에대해 아래와 같은 부분이 계속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PCM기법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도 증진 필요성이다.

PCM기법은 공여측과 피공여측간에 합의에 의해서만 활용이 가능함을 고려할때, 피공여측의 동기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조사단의 현지출장 시 또는 당해 지역사무소가 사안별 설명(브리핑)을 통해 PCM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피공여측의 이해와 수용태세가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JICA의 연간사업규모(예;프로젝트 200건, 개발조사 300건)로 볼때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PCM기법에 대한 연수과정의 개설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숙련된 Moderator의 확보다.

Moderator는 당해안전에 대한 경위, 내용 및 타당성등의 이해가 있어야 하며 제시되는 사안들에 대해 논리적인 해석과 정리를 할수있는 Workshops 진행 전문가로 볼수있다. 현재는 주로 PCM기법 초급연수(3-5일)을 마친 당해 프로젝트 담당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Workshops이 당해안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보다 전문적인 Moderator 양성교육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KOICA의 사업 및 실시방법등이 JICA와 유사하다는 현실과, PCM기법 자체가 하나의 개선된 프로젝트 운영관리기법으로서 선진원조공여국(기관)에 의해 통용되고 있다는 실정에 비추어, JICA의 PCM기법 도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KOICA는 그역사 및 사업규모에 있어 여타 원조기관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 (JICA: '74년설립, 인원 약1,150명, 예산 '95:18억불-KOICA의 약30배)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작단계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한 환경이 될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JPCM은 물론 선진 원조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PCM기법(17)에 대한 연구검토가 병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KOICA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기법의 개발도 가능 할것으로 보며, 이를위한 기초작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단계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현행 KOICA 사업(특히 프로젝트형 사업)방식과 JPCM을 비교분석, 상호간의 장단점 도출 및 실행가능부분 발췌
- 둘째. PCM기법 활용 기관에 직원 연수(PCM기법 터득 및 운용실태 파악)
- 셋째. KOICA내에 PCM기법 검토팀 구성, 연구방향 설정. 끝

(17) 미국 USAID: Logical Framwork 명칭의 양식 사용
영국 ODA: Project Framework 명칭의 양식 사용
호주 AIDAB: Logframe 명칭의 양식사용
독일 GTZ: ZOPP기법
일본 JICA: JPCM기법